



# 일본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5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일본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5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본 안내서는 일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일본세법 등을 2015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참고자료일 뿐,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일본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조문 등을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세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머리말

국세청은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최근 동향 및 세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일본, 스페인에 대한 세무안내서와 이전가격 과세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인도,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대한 세무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무안내서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서에 수록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좀 더 유익한 세무안내서 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서진욱





- I. 국가개황 ..... 1
  - 1. 개요 ..... 2
  - 2. 정치·경제 현황 ..... 2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3
  - 4. 일본세제 연구의 현황 및 필요성 ..... 4
- II. 일본의 투자 환경 ..... 5
  - 1. 투자여건 ..... 6
  - 2. 투자 인센티브 제도 ..... 8
  - 3. 투자진출 유망분야 ..... 10
  - 4. 투자진출시 제한사항 ..... 11
- III. 투자진출형태 ..... 13
  - 1. 투자진출형태 ..... 14
  - 2. 투자진출형태별 세금부담 ..... 19
  - 3. 투자진출기업의 세무애로사항 ..... 20
- IV. 일본진출기업에 대한 법인세 ..... 21
  - 1. 일본진출 현지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 22
  - 2. 일본내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 23
  - 3. 고정사업장(항구적시설) ..... 24
  - 4. 일본의 국내원천소득 ..... 25
  - 5.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 30
- V. 이전가격세제 ..... 31
  - 1. 개요 ..... 32
  - 2. 정상가격 산정방법 ..... 37
  - 3. 이전가격세제의 사례 ..... 42
  - 4. 이전가격문서화 제도 ..... 66





5. 이전가격조사 .....	71
6. 사전승인제도 .....	73
<b>VI. 기타 국제조세 분야 .....</b>	<b>83</b>
1. 외국세액공제제도 .....	84
2. 과소자본세제 .....	85
3. 외국자회사 합산세제 .....	86
4. 과대지불이자 세제 .....	88
5. 상호합의 .....	90
6. 2014년 국제조세분야 개정내용 .....	97
7. 2015년 국제조세분야 개정내용 .....	102
<b>VII. 조세제도의 대강 및 권리구제 절차 .....</b>	<b>105</b>
1. 일반현황 .....	106
2.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	111
3.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	117
4. 소비세(부가가치세) .....	120
5. 상속세 .....	121
6. 증여세 .....	122
7. 기타 주요 세금(지방세) .....	123
8. 세무조사 .....	124
9. 권리구제 절차 .....	127
10. 2015년 세법개정 주요 내용 .....	129
<b>VIII. 투자시 참고할 기타 정보 .....</b>	<b>131</b>
1. 일본의 노무관리제도 .....	132
2.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	134
<b>IX. 참고자료 .....</b>	<b>137</b>
1. 참고문헌 .....	138
2. 기관 웹사이트 .....	138

# I

## 국가개황

1. 개요 .....	2
2. 정치·경제 현황 .....	2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3
4. 일본세계 연구의 현황 및 필요성 .....	4



# 1 개요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식국명 : 일본국(日本國, Japan)</li> <li>· 위 치 : 동북아시아</li> <li>· 국토면적 : 378천km2(한반도의 1.7배)</li> <li>· 수 도 : 도쿄(Tokyo)</li> <li>· 기 후 : 해양성 온대기후</li> <li>· 인 구 : 1억 2,710만명('14. 7월 기준)</li> <li>· 민 족 : 일본인(98.5%)</li> <li>· 언 어 : 일본어</li> <li>· 종 교 : 신도, 불교, 기독교 등</li> <li>· 자연재해 : 화산, 쓰나미, 태풍</li> </ul>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형태 : 입헌군주제</li> <li>·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li> <li>· 국가원수 : 아키히토 (천황)</li> <li>· 수 상 : 아베신조 ('12. 12월 취임)</li> <li>· 의 회 : 양원제(참의원 242석, 중의원 480석)</li> </ul>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DP : 4조 6,016억 달러('14년 기준, WEOD<sup>1)</sup> 2015.4월, IMF)</li> <li>· 1인당 GDP : 36,331 달러('14년 명목기준, WEOD 2015.4월, IMF)</li> <li>· 화폐단위 : Japanese Yen(JPY)</li> <li>· 환 율 : 1달러=105.8엔('14년)</li> <li>· 부존자원 : 수산자원</li> </ul>

<자료 : KOTRA>

# 2 정치·경제 현황

## □ 정치동향

- '14.12.14. 총선 결과, 아베총리는 경기부진을 이유로 '15.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 → 10%)을 '17.4월로 연기하며 국민의 재신임을 묻는 명분으로 중의원 해산

1) WEOD :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 최대 쟁점은 아베노믹스의 성과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은 적었음
- 연립여당(자민당·공명당)이 전체 475석 중 3분의 2이상인 326석을 차지하며 압승, 재집권에 성공

□ 경제동향

- '13.1월부터 아베총리는 장기 경기침체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디플레이션 및 엔고현상을 타개하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아베노믹스 3단계 전략(금융완화, 재정확대, 성장전략) 추진

<아베노믹스 추진내용>

3단계 전략	금융완화	- 2년내 인플레이션 목표 (물가수준 2%) 설정 - 통화공급량 확대 (138조엔 → 270조엔) - 자산매입 프로그램 확대 : 장기국채 매입(잔액기준 연간 +50조엔) 등
	재정확대	- '13.1월, 12월 각 10.2조엔 및 5.5조엔의 긴급경제대책 예산 편성 - 공공투자확대 정책 전개
	성장전략	- 일본산업 부흥플랜 (제조업 부흥 및 서비스산업 창출) - 전략시장 창조플랜 (4대 전략시장 육성) - 국제진출전략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대내 직접투자 확대)
성 과	- 금융 및 재정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 - 아베노믹스 초기에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로 완만히 흘러가고 있으나, '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5%→8%)후 한계 봉착 - 엔화기준 수출은 늘었지만, 수출물량 개선은 나타나지 않음 - 수출 증가폭보다 수입 증가폭이 커 무역적자 확대 - 엔저도산 증가 등 아베노믹스 부작용도 발생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출입 교역 현황 ('14.12월 현재)

- 일본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한국의 3위 교역국이며, 한국도 일본의 3위 교역국임(중국, 미국, 한국 順)

(억불)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한·일	교역규모	925	1,080	1,032	946	860
	수출(韓→日)	282	397	388	346	322
	수입(韓←日)	643	683	644	600	538
	무역수지	△361	△286	△256	△254	△216
전체교역규모(우리나라)		8,916	10,796	10,675	10,751	10,982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통계포털>

### □ 우리기업의 일본 진출 현황('14.12월 현재)

○ 우리기업이 진출한 국가 중 일본이 4번째로 많이 진출

(건)

구 분	전 체	중 국	미 국	베 트 남	일 본	기 타
진출기업	62,946	24,848	12,524	3,515	2,758	19,301
구 성 비	100.0%	39.5%	19.9%	5.6%	4.4%	30.7%

※ 진출기업 : 현지법인, 지점, 지사를 합한 누계 수치임(청산법인 포함)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자료 기준>

## 4 일본세제 연구의 현황 및 필요성

- '15.6월 현재 발간된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서 중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세무안내서가 없음
- 최근 일본에서 강화하고 있는 이전가격 조사 리스크 등 한일 국제거래와 관련한 주요 세제를 중점 연구하여 세정 지원할 필요

# II

## 일본의 투자 환경

1. 투자여건 .....	6
2. 투자 인센티브 제도 .....	8
3. 투자진출 유망분야 .....	10
4. 투자진출시 제한사항 .....	11



# 1 투자여건



## □ 일반 투자환경

### ○ 투자국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 경제대국인 중국·한국·대만 및 경제발전 중인 동남아시아와 근접
-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항만을 통한 접근성이 용이

### ○ 사업여건

- 세계은행그룹의 IFC(국제금융공사)조사의 ‘Doing Business 2014’에 따르면 일본은 사업 용이성 중 27위 (한국 7위)

\* 파산해결(1위), 투자가 보호(16위), 무역(23위)항목 다소 높게 평가

### ○ 투자 매력도

#### - Innovation Hub

- 글로벌 탑 기업과 독창적 기술 보유 중소기업이 집적화되어 있음
- 높은 기술과 연구개발력으로 다양한 부가가치와 지적재산 창출
- 국제출원 상위 랭킹(특히, 환경관련 특허 공개건수 1위)

#### - Business Platform

- 아시아 성장의 가교로서 세계와 아시아 연결에 중요한 역할
-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적 인프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여건

#### - Trendsetter

- 세계 탑 클래스의 경제규모
- 아시아 시장진출을 위한 테스트 마케팅 시장
- 건강·관광시장 등 큰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 존재



○ 세무·세관·노동관청의 행정투명도

- 전반적으로 행정의 투명도와 편리성이 높으나
- 일본 정부가 ‘수직적 행정’이라는 지적과 같이 부처별 자체 안전은 진지하게 대응하지만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부처 간 떠넘기기 현상이 존재

○ 국가의 투자위험

-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급격한 정변이나 디폴트 등 신흥국에서 볼 수 있는 컨트리 리스크는 없음
- 다만, 국가채무 잔고가 약 1,053조엔(일본 재무성 발표, '15.3월말 추계)으로서 세계 최대 부채국이기 때문에 재정부실 우려는 있음

□ 정부의 투자정책과 외국인 우대정책

○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해외진출을 유도하는 투자정책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

- '03. 5월 「대일투자회의(의장 고이즈미 수상)」를 설치, 각종 투자유치 시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기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외자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 일본 정부는 '11.12월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세계 주요기업 아시아본부의 일본 설치를 촉진하는 「아시아 거점화, 대일 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발표, 2020년까지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추진 목표 설정

- ① 고부가가치 거점의 증가
  - 일본 국내의 고부가가치 거점화(아시아지역 총괄거점 및 연구개발 거점)를 위해 2009년말 기준 약 500거점에서 향후 연간 30건씩 증가토록 유치 촉진
- ② 외국기업에 의한 고용 증가(75만명 → 200만명)
- ③ 대일 직접투자 증대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03년 초부터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강화
  - 도쿄 중심지 아카사카에 「외국인 투자유치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설치, 분야별 전문상담역을 두고 외국인 투자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 2 투자 인센티브 제도

### □ 아시아거점 추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 (대상) 일본 내에 연구개발거점·지역총괄거점을 신규로 설립하는 글로벌기업
- (내용)
  - 법인세 : 5년간, 20%의 소득공제
  - 소득세 : 모회사(외국기업)의 스톡옵션과세를 일본기업과 동등화
- (시행시기) '12. 11. 1.
- (담당부처)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진흥과

### □ 아시아거점 입지추진 사업비 보조금

- (대상) 일본 내에 연구개발거점·지역총괄거점을 신규로 설립하는 글로벌기업
- (내용) 거점설비 관련비용 일부 보조
- (대상경비) 조사설계비, 시설공사비, 설비비, 시설임대료
- (보조비율) 중소기업 1/2, 중소기업외 1/3, 재해지역내 입지 2/3
- (시행시기) '12. 11. 1.
- (채택실적) 2013년까지는 연간 1회 공모하여 4~5개 업체 채택,  
2014년부터 6월과 9월 2회에 걸쳐 공모하여 7개 업체 채택
- (담당부처)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진흥과



□ 고도인재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

- (대상) 대학 등의 연구자, 전문기술자, 기업경영자 등
- (내용) 외국인 고도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포인트합계가 일정기준 이상자를 「고도인재외국인」으로 인증, 출입국상 우대
- (우대조치)
  - 영주권신청자격 요건 단축(10년 체류 → 5년 체류)
  - 입국·재류 수속 우선적 처리
  - 배우자의 취업 용인 등
  - 일정 조건 하에서의 부모, 가사사용인 대동 허용
- (시행시기) '12.5월 부터
- (담당부처) 법무성 입국관리국

□ 국제전략 종합특구 인센티브 부여

- (내용) 지정특구 내 규제특례조치, 재정·금융·세제상 지원
- (지정특구)

지정 번호	지방자치단체	국제전략 종합특구
1	홋카이도 (삿포로, 하코다테, 오비히로 등)	홋카이도 푸드 콤플렉스
2	이바라키현 (츠크바)	츠크바 (츠크바의 과학기술집적을 활용한 라이프/ 그린이노베이션 추진)
3	도 교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
4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가와사키)	케이힌 임해부 라이프 이노베이션
5	기후현, 아이치현	아시아No.1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형성특구
6	교토, 오사카	간사이 이노베이션
7	후쿠오카 (키타큐슈, 후쿠오카)	그린 아시아

□ 지방정부별 자율적 인센티브 제공

- (내용) 사업소세·자산세·취득세 감면 등 세금우대, 투자유치촉진관련 보조금 지급, 저이자 용자, 대부제도 운영 등
- (해당도시) 치바, 후쿠오카, 히로시마, 카와사키, 기타큐슈, 코베, 교토, 나고야, 오사카, 사이타마, 삿포로, 센다이, 요코하마

\* 지방정부별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JETRO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http://www.jetro.go.jp/en/invest/region/>)

□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융자제도

- (내용) 대일엑세스촉진사업을 영위하는 외자기업에게 정책금리를 적용하여 지원(융자비율 50% 이상)

\* 대일엑세스촉진사업 : 외자 1/3 이상인 기업이 대일투자 기술노하우를 통해 일본산업의 고도화, 산업창출, 고용증가에 공헌하는 사업

**3 투자진출 유망분야**

분야	투자진출 유망 세부 분야
주택건설	새로운 건축자재, 인테리어 소재 및 시스템 디자인을 도입한 주택건설
의료복지	고도의료기기, 실버서비스, 원격의료시스템, 생명공학의료복지시설 및 기기
환경	폐기물처리, 자원재활용, 환경조화형 제품
에너지	절전형 전기제품, 폐기물 이용 발전
정보통신	정보제공 서비스, Information Network 관련 소프트웨어, 통신교육 서비스
유통	대규모 쇼핑센터,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생활	스포츠, 레저활동 관련제품, 원예, Car Navigation System, 건강관련제품, 예술·문화·애완용품
직업알선	인재파견, 직업소개
경영지원	아웃소싱, 법률 및 경영자문, 업무대행
식품	건강식품, 유기식품, 바이오관련식품
IT 통신	온라인 게임분야 등

<출처 : 일본 통상백서, 경제백서, JETRO 백서>



## 4 투자진출시 제한사항

- (원칙)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의 진출이 가능하며 사후신고 원칙
  - \* 정부가 별도로 정한 업종은 사전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
 

(사전신고업종) 국가안전 및 OECD 자본자유화규약에 따라 개방이 유보된 업종  
 \* 핵연료제조업, 항공기제조업, 무기제조업, 농림수산업, 석유업, 피혁제품제조업 등

(사전허가업종) 각각의 사업법에 의한 사전절차 완료 후 사업개시 가능  
 \* 은행업, 보험업, 가스 및 전기업, 증권업 등
  
- (사전신고 절차) 사전신고서는 투자 개시 3개월 전까지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재무성 및 소관 장관에게 제출
  - (결과통보) 국가안보 및 외국환관리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고 접수 후 2주일 이내에 투자가능 통지
  
- (사후신고 절차) 투자 후 15일 이내에 소정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재무성 및 소관 장관에게 제출

<참고자료> 투자 관련 문의처

□ 유관기관

기관명	업무	문의처	전화번호	홈페이지
일본정책투자은행	외국기업 및 외국계기업이 일본에서 사업을 전개할 경우 토지, 건물 및 기계설비의 구입자금, 연구개발자금 등 용자	일본정책투자은행 국제부	03-3244-1770 03-3245-1938	www.dbj.jp
내각부	대일 직접투자에 대한 행정수속의 명확, 간결, 신속 처리를 도모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대일투자 촉진하기 위한 창구	내각부 대일직접투자 촉진실	03-3581-8950 03-3581-4771	www.invest-japan.go.jp
OTO (시장개발문제고충처리제)	일본시장진출시 문제점 개선을 목적으로 내외기업으로부터 수입 및 대일투자장벽 등의 정부규제 등에 대한 고충수집, 처리	내각부 규제개혁 추진실	03-3581-1415 03-3581-1399	www8.cao.go.jp/kisei-kaikaku/oto/index.html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대일투자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JETRO 대일투자과	03-3582-5571 03-3505-1990	www.jetro.go.jp/invest/ibsc
	거점설립 시 도움 제공	JETRO 대일비즈니스과	03-3582-5234 03-3505-1990	www.jetro.go.jp
법무성 입국관리국	외국인과 그 관계자에게 상담 및 안내(외국어 상담 가능)		03-5796-7112	

□ 투자관련 법규 제공처

- 일본 법령데이터 제공시스템(일본법령 검색사이트)  
http://law.e-gov.go.jp/
- JETRO 대일투자정보(관련내용정리)  
http://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

# III

## 투자진출형태

1. 투자진출형태 .....	14
2. 투자진출형태별 세금부담 .....	19
3. 투자진출기업의 세무애로사항 .....	20



# 1 투자진출형태

## □ 진출형태별 비교

구 분	주재원사무소	지 점	주식회사	유한책임사업조합
사업 활동	준비·보조활동	○	○	○
등 기	×	○	○	○
자 본 금	×	×	최저 자본금 제한 없음	
대 표 이 사	×	×	1인 이상	법정임원 없음
이 사	×	×	1인 이상	
감 사	×	×	1인 이상	
법 인 세 과 세 범 위	×	국내원천소득	전세계 소득	
회 계 처 리	×	본국 소득과 합산처리	일본법인의 회계처리로 완결	
본 국 송 금 과 세	×	법인세 납세후 송금 가능	배당,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	
소 송	×	본국 법인에 영향을 미침	(원칙) 본국 법인에 영향 없음	
설 립 소 요 기 간	×	약3주~1개월	약1개월~1.5개월	약2주~3주

## □ 주재원사무소 (연락사무소)

- (정의) 일본에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거점
- (활동영역) 직접적인 영업활동, 은행계좌 개설, 부동산 임차는 불가능하나 시장조사, 정보수집, 물품의 구입, 광고·선전 등은 가능
- (외환송금) 주재원사무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관리비 관련 자금의 외환송금에 대한 외환관리상 제약 없음
- (법적규제) 상법상의 등록절차, 일본은행 및 재무성 신고절차 없음
- (조세문제) 정상적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제외



- (애로사항)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여 현지인 채용이 곤란한 경우 발생
- (개설절차)

순서	절 차
1	사무소 개설
2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인증증명서 취득
3	재류자격인증증명서를 본국의 일본공관에 제시하고 사증 발급을 받은 후 일본으로 입국
4	입국 후 거주지를 정하고 외국인 등록
5	은행계좌 개설(개인용 계좌만 개설 가능)
6	피고용인을 위해 노동기준감독서, 공공직업안정소, 사회보험사무소, 세무서(급여지불관련)에 신고.

□ 지점 (지사)

- (활동영역) 외국기업이 일본 내 영업활동 거점을 설립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대표자를 정한 후 등기하면 영업활동 가능
- (법적규제) 대내 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외환법에 따라 재무장관 및 관할 부처장관에게 사후보고 또는 업종에 따라 사전신고 필요
  -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업종에 따른 각 사업법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이 별도로 필요
  - 세법, 회사법, 고용, 노동관계 제반 법률적 절차도 함께 이행
  - 법률상 지점 고유의 법인격이 없어 지사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책임은 외국기업에 직접 귀속

○ (설치절차)

순서	절 차
1	일본은행에 지점설치 사전신고 (업종에 따라 생략 가능)
2	지점 등기사항 정리
3	법무국에 유사 상호 조사
4	지점 설치(지점 설치일은 임의로 선택 가능)



순서	절 차
5	지점 설치에 관한 선서공술서(宣誓供述書 <sup>2)</sup> ) 작성
6	주일 대사관 영사에 의한 선서공술서의 인증
7	법무국에 지점 설치 등기신청 및 회사 인감의 신고
8	등기사항증명서 및 회사인감등록증명서의 취득
9	은행에서 지점 명의의 계좌 개설

□ 자회사 (일본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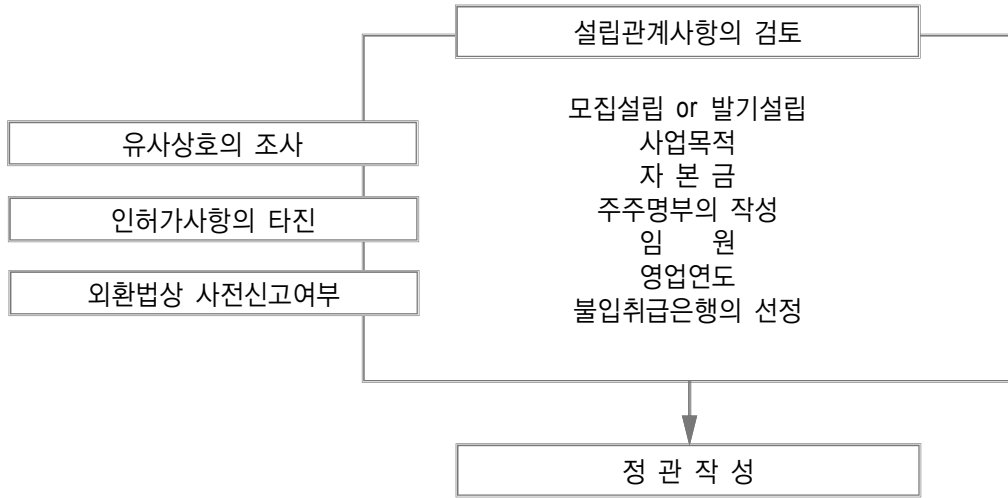
- (설립)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의 법인 형태 중 소정 절차를 거친 후 등기하는 것으로 설립
  - \* 일본기업 등과의 합작회사 설립이나 일본기업의 지분참가 등의 형태로도 설립 가능
- (종류)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동회사, 주식회사 4가지가 있으며 일본 진출에 있어서는 주식회사가 대부분을 차지
- (회사의 종류별 비교)

구 분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동회사	주식회사
자 본 금	제한 없음			
회사 대표와 출자자 관계	출자자(사원)가 회사를 대표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	출자자(사원)가 회사를 대표	회사 대표자가 출자자일 필요 없음
출자자 책임	출자자(사원)가 연대하여 무한 책임	무한책임사원은 연대하여 무한책임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한도내 책임	출자액 한도내 유한책임	
출자권 양도	다른 사원의 승낙을 필요로 함			정관에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자유 양도 가능

2) 선서를 하는 이가 자발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적어서 대사관이나 공증인 면전에서 기재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선서하고 서명하는 것. 외국회사는 본국법으로 회사가 설립되므로 일본 회사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제작된 의사록등의 서류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것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실무상 간소화된 선서공술서를 작성하여 등기신청함



- (법적책임) 자회사는 외국모회사와는 별개 법인이므로 자회사 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책임을 짐
- (설립관계사항 검토)



-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순서	절 차
1	주식회사의 설립개요 결정
2	법무국에서 유사 상호 유무 조사
3	주식회사의 정관 작성
4	모회사의 등기증명서 취득, 모회사의 개요에 관한 선서공술서, 모회사 대표자의 서명에 관한 선서공술서 준비
5	주식회사 정관에 대한 일본 공증인에 의한 인증
6	은행에 자본금 보관 및 보관증명서 발행의 신청
7	은행에 특별계좌에 주식회사의 자본금 송금
8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의 임원 선임
9	이사 및 감사에 의한 설립 수속의 적법성 조사
10	법무국에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 회사 인감의 신고
11	등기사항증명서 및 회사인감등록증명서의 취득
12	회사명의 계좌개설 및 일본은행에 주식 취득의 신고

□ 유한책임사업조합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 (정의) 「유한책임사업조합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체
  - \* 민법상 조합의 특례로서 창설
- (구성) 조합원의 출자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현물출자도 가능하며 2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
- (특징)
  - 모든 출자자는 출자금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
  - 사업목적이 영리로 한정되어 있음
  - 법인과 달리 이사회 등의 특별기관 설치의무가 없음
  - 구성원 과세(출자자 개인 소득에 과세됨)
- (설립절차)

순서	절 차
1	유한책임사업조합 설립 개요의 결정
2	법무국에 유사상호의 조사
3	조합원에 관한 증명서의 취득(본국 & 일본) - 법인등기증명, 선서공술서, 인감증명서 등
4	유한책임사업조합 계약의 체결
5	조합원에 의한 계약으로 정해진 출자금의 납입
6	법무국에 유한책임사업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및 조합 인감 신고
7	등기사항증명서 및 조합인감등록증명서 취득
8	조합명의로 은행계좌 개설



## 2 투자진출형태별 세금부담

### □ 주재원사무소의 과세소득

- (법인세) 주재원사무소는 본점을 위한 광고, 선전, 정보제공, 시장 조사, 기초연구, 기타보조활동을 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 (주재원사무소 종업원의 소득세)
  - (외국본사 직접 채용시) 외국본사에서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주재원 및 종업원의 급여를 외국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본 과세당국에 확정신고
  - (재일주재원이 현지 채용시) 재일주재원이 고용주로서 세무서에 「급여 지불사무소」 신고를 하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

### □ 외국법인 지점의 과세소득

- (법인세)
  - 세법개정 이전 : 일본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2014년 세법개정 이후
    - (PE귀속소득)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에 얻어지는 소득
    - (내부거래) 독립기업간가격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의제하여 내부거래 손익 인식
    - (소득범위) 지점의 국내·외 소득에 대해 과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 발생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적용시기 : '16.4.10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 2014년 국제조세분야 개정내용 참조(p.88)

□ 자회사(일본법인)의 과세소득

- (법인세) 일본 내 국내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을 합한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외국세액공제 적용 가능

**3 투자진출기업의 세무애로사항**

□ 일본 조세제도에 대한 정보 미흡

- 일본내 외국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조세제도와 세무조사, 불복청구 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일본 진출 검토시 애로
- 최근 일본 과세당국의 이전가격조사 강화로 인한 세무조사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 및 자료가 부족하여 세무조사대응이 미흡

<참고자료> 대일 비즈니스 저해요인 앙케이트 조사결과

순위	비즈니스 저해요인	비율(%)
1	인재 확보의 어려움	66.2
2	높은 비즈니스 코스트	60.2
3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수준이 높음	59.6
4	일본시장의 폐쇄성, 특수성	50.6
5	인·허가 / 규제	21.2
6	복잡한 행정수속절차	20.9
7	불충분한 우대제도	14.5
8	정보·서비스 부족	14.2
9	외국인 거주환경	10.9
10	인프라	9.4
11	자금조달	8.7

<출처 : JETRO 제13회 대일직접투자자에 관한 외자계 기업의식조사(2008년, 2013년 12월기준 최신판)>

# IV

## 일본진출기업에 대한 법인세

1. 일본진출 현지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22
2. 일본내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23
3. 고정사업장(항구적시설)	24
4. 일본의 국내원천소득	25
5.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30



# 1 일본진출 현지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 □ 일본내 현지법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 설립 시

일본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의 형태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에는 일본 세법상 일본의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국내외원천소득을 합한 전세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됨

## □ 지점(지사)설립 등으로 진출 시

지점은 일본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항국적시설)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외국법인으로서 일본 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됨

또한, 지점 진출 외에도 공장 또는 창고, 1년을 초과하는 건설작업을 하는 법인 등의 경우 고정사업장을 갖는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정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됨

##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구 분	분 류 기 준	과세대상
내국법인	국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 2 일본내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 (원칙) 일본에 진출한 외국법인의 경우 일본 내에 조세조약상의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했는지, 그 국내원천소득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과세방법이 달라짐
- (단계별 판단기준)

### (1단계) 고정사업장 유무

외국법인이 일본에서 사업활동을 하더라도 소득이 귀속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본 과세당국에서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세법 또는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2단계)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외국법인은 일본의 법인세법 제138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일본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함

### (3단계) 조세조약 유무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등 세법규정을 적용하여 부과되지만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일본 세법보다 양국간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조약 유무를 파악해야 함

### (4단계) 면세소득 해당여부

일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더라도 일본의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의 적용상 법인세가 면세되는 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5단계) 국내원천소득의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

국내원천소득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의 과세방법이 크게 달라짐. 즉,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있고 그 국내원천소득이 그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종합과세’되거나 ‘원천징수·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함



### 3 고정사업장(항구적시설)



- (정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함(한일조세조약 제5조)
- 고정사업장에 포함되는 것
  -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 광산, 유전, 가스정,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 건축장소, 건설, 설치공사 및 이와 관련한 감독활동으로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
-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
  -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 위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이어야 함



## 4 일본의 국내원천소득

### □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일본 법인세법 §138)

구 분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138조	1호 사업소득
	1호 자산의 운용 또는 보유에 따른 소득
	1호 자산의 양도 소득
	1호 기타 국내원천소득
	2호 인적역무 제공사업의 대가
	3호 부동산의 임대료 등
	4호 이자 등
	5호 배당 등
	6호 대부금이자
	7호 사용료 등
	8호 사업의 광고선전을 위한 상금
	9호 생명보험계약에 근거한 연금 등
	10호 정기적금 급부보전금 등
11호 익명조합계약 등에 근거한 이익의 배분	

### □ 국내원천소득의 내용

#### ① 사업소득

1	(재고자산의 구입·판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 등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소득
---	--

2	<p><b>(재고자산의 제조·판매)</b> ①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p> <p>②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p>
3	<p><b>(건설업)</b>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p>
4	<p><b>(국제운수)</b></p> <p>① 선박운송용역 : 국내에 승선하거나 선적한 여객 또는 화물에 관한 수입 금액 기준으로 판정한 그 외국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 원천소득의 범위로 결정</p> <p>② 항공운송용역 : 다음 기준으로 판정한 그 외국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로 결정</p> <p>a. 그 국내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p> <p>b. 그 국내업무의 요건에 제공하는 고정자산의 가격</p> <p>c. 그 국내업무가 그 운송사업에 관련된 소득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추측할 만한 요인</p>
5	<p><b>(보험업)</b>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p>
6	<p><b>(출판·방송사업의 광고수입)</b>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 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따라서, 출판·방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외에 걸쳐 부수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해당하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봄</p>
7	<p><b>(기타사업)</b> 위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업을 국내외에 걸쳐 영위할 경우에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함</p> <p>*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 독립 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 사업자에게 통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p>



## ② 자산의 운용 또는 보유에 관한 소득

1	일본의 국채·지방채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등
2	거주자 대출에 관한 채권으로 해당 거주자 업무와 관련된 것 이외의 것
3	일본 내 영업소·대리점을 통해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등의 보험금 지불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받을 권리

## ③ 국내에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1	국내에 토지(토지 및 토지지상권리, 건물 및 건물의 부속시설, 구축물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7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 등 포함)등을 양도함으로써 인한 소득
---	---

## ④ 기타 국내 원천소득

1	국내업무나 국내자산에 관해 받은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에 관련된 소득
2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긴 소득
3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 또는 국내에서 습득된 유실물 관련 소득
4	국내에서 실시하는 현상모집에 근거하여 보상받은 금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5	상기 외 국내실시업무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한 공여를 받은 경제적 이익관련 소득

## ⑤ 인적역무 제공사업의 대가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역무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에 열거하는 자의 역무제공의 대가

1	영화나 연극의 배우, 음악가 그 다른 연예인 또는 직업운동가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그 외 자유직업가
3	과학기술, 경영관리등 기타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갖춘 자

⑥ 부동산 임대료 등의 소득

1	국내소재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
2	채석권의 대여, 조광권의 설정의 대가
3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에 대한 대가

⑦ 이자 등

1	일본의 국채, 지방채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2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중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이자
3	국내 영업소에 예치된 예·적금의 이자
4	국내 영업소에 신탁된 합동운용신탁, 공사채 투자신탁 등의 수익분배

⑧ 배당 등

1	내국법인에서 받는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잉여금 배당이익의 배당잉여금 분배 또는 기금 이자
2	국내 영업소에 신탁된 투자신탁(공사채 투자신탁과 공모 공사 채권 등 투자신탁을 제외함)의 수익분배, 특정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수익분배

⑨ 대부금 이자

1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이자
---	--

⑩ 사용료 등

1	공업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사용료 또는 그 양도에 의한 대가
2	저작권의 사용료 또는 그 양도에 의한 대가
3	기계, 장비 및 차량 등의 사용료



11 사업의 광고 선전을 위한 상금

1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광고 선전을 위한 상금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
---	--

12 생명보험계약에 근거한 연금 등

1	일본 국내영업소 등을 통하여 체결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공적연금을 제외함)
---	--

13 정기적금 급부보전금 등

국내에 있는 영업소 등이 얻는 보전금, 이자, 이익 또는 차익으로 아래에 열거하는 것

1	정기적금계약에 근거한 급부보전금
2	은행법 제2조 제4항의 계약에 근거한 급부보전금
3	저당증권의 이자
4	귀금속(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의 환매조건부매매의 이익(금투자구조의 차익 등)
5	외국통화 표시예저금으로 그 원본과 이자를 사전약정한 율에 따라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로 환산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의 차익(외화투자구조의 차익 등)
6	일시불양료보험, 일시불손해보험 등의 차익(보험기간 등이 5년 이하의 보험 및 보험기간 등이 5년을 초과하는 보험으로 보험기간 등의 초일부터 5년 이내에 해약된 보험에 근거한 차익)

14 익명조합계약<sup>3)</sup>에 근거하여 받는 이익의 분배

1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출자 중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출자를 통해 받는 이익의 분배
---	--

3) 익명조합계약의 투자방식

- ① 복수의 사업참가자가 영업자인 부동산 특정 공동사업자에게 금전을 출자하고, 각각의 사업참가자가 부동산 특정 공동사업자와 익명의 계약을 맺음
- ② 부동산 특정 공동사업자는 사업참가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자산을 구입
- ③ 부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 특정 공동사업자에게 귀속해登記되어 해당 부동산업자가 임대등에 의해 운용
- ④ 부동산특정공동사업자는 임대료수입을 투자자에게 분배
- ⑤ 부동산 공동사업자는 일정기간 경과후 부동산매각, 매각 수입으로부터 매각비용 및 영업자 보수를 공제한 처분이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분배

## 5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음영부분이 법인세의 과세범위)

일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일본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진 법인		일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원천 징수
		지점 기타 사업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를 갖는 법인	1년을 초과하는 건설작업 등을 하거나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 등을 가진 법인		
사업소득				(비과세)	무 <sup>4)</sup>
자산의 운용 또는 보유에 따른 소득					무 <sup>5)</sup>
자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 및 법령에 언급한 소득	무 <sup>6)</sup>
기타 국내원천소득					무
인적역무 제공사업의 대가					20%
부동산의 임대료 등					20%
이자 등		(국내사업에 귀속되는 것)	(원천분리과세)		15%
배당 등				20%	
대부금 이자				20%	
사용료 등				20%	
사업의 광고선전을 위한 상급				20%	
생명보험계약에 근거한 연금 등				20%	
정기적금 급부 보전금 등				15%	
익명조합계약 등에 근거한 이익의 배분				20%	

- 4) 사업소득 중 조합계약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짐
- 5) 할인채권(특정단기공사채 등 일정한 것은 제외함)의 상환차익에 대해서는 18%(일부의 것은 16%)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짐
- 6) 자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 중 국내에 있는 토지 혹은 토지상에 존재하는 권리 또는 건물 및 그 부속설비 혹은 구축물의 양도에 의한 대가에 대해서는 소득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짐

# V

## 이전가격세제

1. 개요 .....	32
2. 정상가격 산정방법 .....	37
3. 이전가격세제의 사례 .....	42
4. 이전가격문서화 제도 .....	66
5. 이전가격조사 .....	71
6. 사전승인제도 .....	73





## 1 개요



### □ 의의

- (이전가격) 국내기업이 국외에 있는 모회사 또는 자회사 등 특수관계 기업과 거래할 때 설정하는 가격
- (이전가격세제) 이전가격을 제3자와의 통상적인 독립기업간 거래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설정함으로써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이전가격을 독립 기업간가격으로 수정하여 법인세 과세소득을 재계산하는 제도

### □ 도입배경

- (계기) 1980년대 미국 국세청에서 일본 자동차회사의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
- (배경) 국외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이전가격과세 리스크를 줄이는 등 일본 기업을 보호하고 일본 내 기업(외자계 자회사 포함)이 해외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 일본 이전가격세제의 동향

- 일본 과세당국은 ‘아도비(Adobe)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소송 패소, 2010년에 이전가격 문서화제도를 도입
- 2011년에는 정상가격산정방법의 적용 우선순위를 폐지하고 사안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 이진가격세제 연혁

연 도	주 요 내 용
1986	· 이진가격세제(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4 제정)
1987	· 사전승인제도 도입
2001	· 이진가격사무운영요령 제정 · 상호합의에 관한 사무운영지침 제정
2002	· 이진가격사무운영요령의 일부 개정(용역제공의 취급 추가)
2003	· 별표17의 3 도입(신고서 별표에 이진가격산정방법의 기재 의무화)
2004	· 거래순이익율법(TNMM)이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제정
2010	· 일본판 이진가격 문서화 제도의 도입 <sup>7)</sup> · 「이진가격사무운영요령」 일부 개정(추정규정 또는 질문검사규정의 적용에 관한 유의사항 등 추가)
2011	·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 4 제2항 개정 - 정상가격 산정방법 적용순위 재검토, 정상가격범위 취급의 명확화 <sup>8)</sup> · 조세특별조치법관련통달 일부 개정 - 가장 적절한 산정방법의 선정에 있어서 유의해야할 사항 등 · 이진가격사무운영요령 일부 개정 - 정상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정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 등
2013	· 국세통칙법 개정 - 일반 법인세 조사와 이진가격조사를 원칙적으로 하나의 조사로서 취급 ·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 거래순이익율법에 berry ratio 개념 도입

7) 2010년도 세제개정시 일본판 이진가격문서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미국 또는 한국의 문서화 제도는 조사시 부과되는 패널티를 면제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일본의 문서화 제도는 추정과세와 관련된 규정임. 즉,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4 제6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로서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것’을 준비하지 않은 기업은 일본과세당국의 추정과세 대상이 됨

- 8) ① 정상가격 산정방법 적용순위의 재검토
- 현행 정상가격 산정방법의 적용상 우선순위를 폐지하고,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사안에 따라 선택하는 구조로 개정
  - 상기 개정에 따라 그 원활한 집행을 위해 운용을 명확화함과 동시에 정상가격 산정방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현행 이익분할방법의 하위 부류로서 동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하는 산정방법(비교이익분할방법, 기여도이익분할방법 및 잔여이익분할방법)을 명확히 함.
- ② 정상가격범위 취급의 명확화
- 국외특수관계거래의 가격 등이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는 이진가격 과세를 하지 않고, 범위 외에 있을 경우에는 비교대상거래의 평균값에 더하여, 그 분포 상황 등에 맞는 합리적인 값을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 일본 이전가격세제의 근거규정

- 일본의 이전가격세제는 OECD 가이드라인에 준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4를 기본적 근거 규정으로 하고 있음
- 이전가격세제 항목별 관계도

이전가격세제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4 ①~②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의2 ①~⑫	조세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2조의10	조세특별조치법 관계통달 제11장 (제1관~제10관)
총 칙	①, ④			제8관~제10관
대상거래	①, ⑤	⑤, ⑨, ⑩		제3관
이전가격산정방법	②	⑥ ~ ⑧		제2관, 제4관~제7관
기 부 금	③			
이전가격조사	⑥ ~ ⑭	⑪, ⑫, ⑬		
신고서 첨부자료	⑮		①, ②	
경정·결정 등, 기간제한	⑯, ⑰, ⑳			
국세의 징수권	⑱, ⑲			
연체세, 환급가산세	㉑	⑭, ⑮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	㉒	① ~ ④, ⑯		제1관
납세유예	제66조의 4의2	제39조의 12의2	제22조의 10의2	

③ Secret comparable(유사한 거래를 수행하는 제3자로부터 국세청에서 질문검사 등에 의해 입수한 비교대상거래 관련 정보)운용의 명확화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Secret comparable이 적용될 경우의 구체적인 예를 한층 명확히 함과 동시에, Secret comparable을 사용할 때 비밀보호의무의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 철저히 운용함  
 ④ 상기 ①부터 ③외에도, 동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토대로 운용상 필요한 재검토를 수행함과 동시에 조세조약에서 중재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바탕으로 중재신청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적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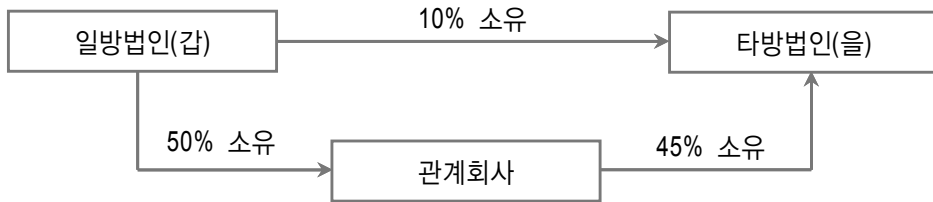
- 적용대상거래 : 자산의 판매 및 구입, 역무의 제공, 기타 거래
- 적용대상자 : 법인과 그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
- 특수관계의 범위
  - 모회사 또는 자회사 간 관계 :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
  - 형제회사 관계 : 두 개의 법인이 동일한 자(개인을 포함)에 의해서 각각 발행주식 등의 5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보유되는 관계
  - 실질 지배 관계

구 분	내 용
임원의 겸임	(실제직무에 관한 경우) 타방법인의 임원 1/2 이상 또는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는 임원이 당해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을 겸임하는 자 또는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었던 자인 관계  (직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결정되는 경우) 일방법인의 임원 1/2 이상 또는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는 임원이 타방법인에 의해 근본적으로 결정되는 관계(조세특별조치법 관계통달 66의4 (1)-3)
거래의 의존	타방법인이 그 영업활동의 상당 부분을 일방법인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관계
자금의 의존	타방법인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일방법인으로부터 차입(채무보증의 경우 포함)하는 종속된 관계
무형자산의 의존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에서 제공되는 사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저작권, 산업재산권, 노하우 등에 의존하는 관계(조세특별조치법 관계통달 66의4 (1)-3)

○ 주식 소유비율 계산방법

- 국외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50/10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 여부는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을 합한 비율에 의해 판정함

- 사례1) 갑과 을은 직간접 55% 소유비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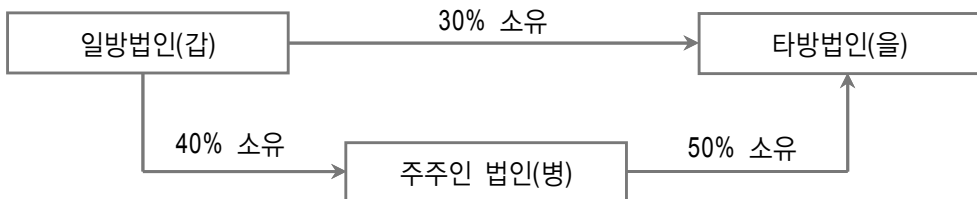
- 직접소유비율 : 10%
- 간접소유비율 : 45%

- 사례2) 갑과 을은 간접 50% 소유비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



- 간접소유비율 : 10% + 40% = 50% 의 연쇄관계

- 사례3) 갑과 을은 직간접 30% 소유비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 직접소유비율 : 30%
- 간접소유비율 : 0% (50% 미만이므로 간접 소유비율 해당 없음)
- \* 우리나라의 경우 : 40% \* 50%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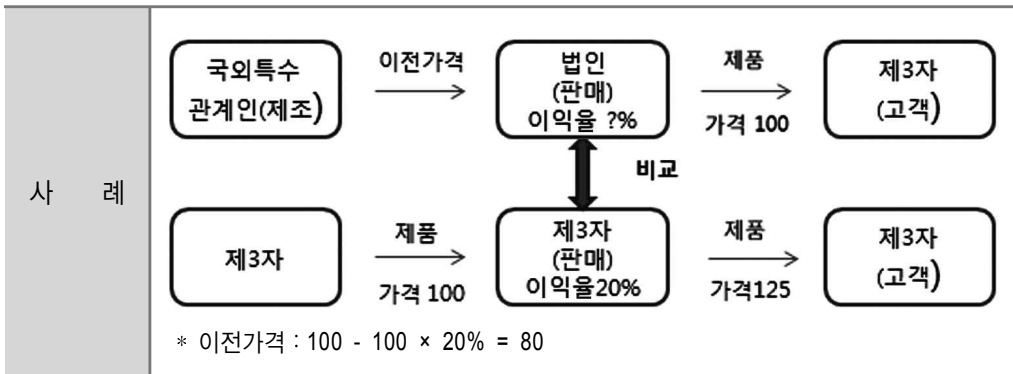
## 2 정상가격 산정방법

### □ 독립가격비준법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4 ②-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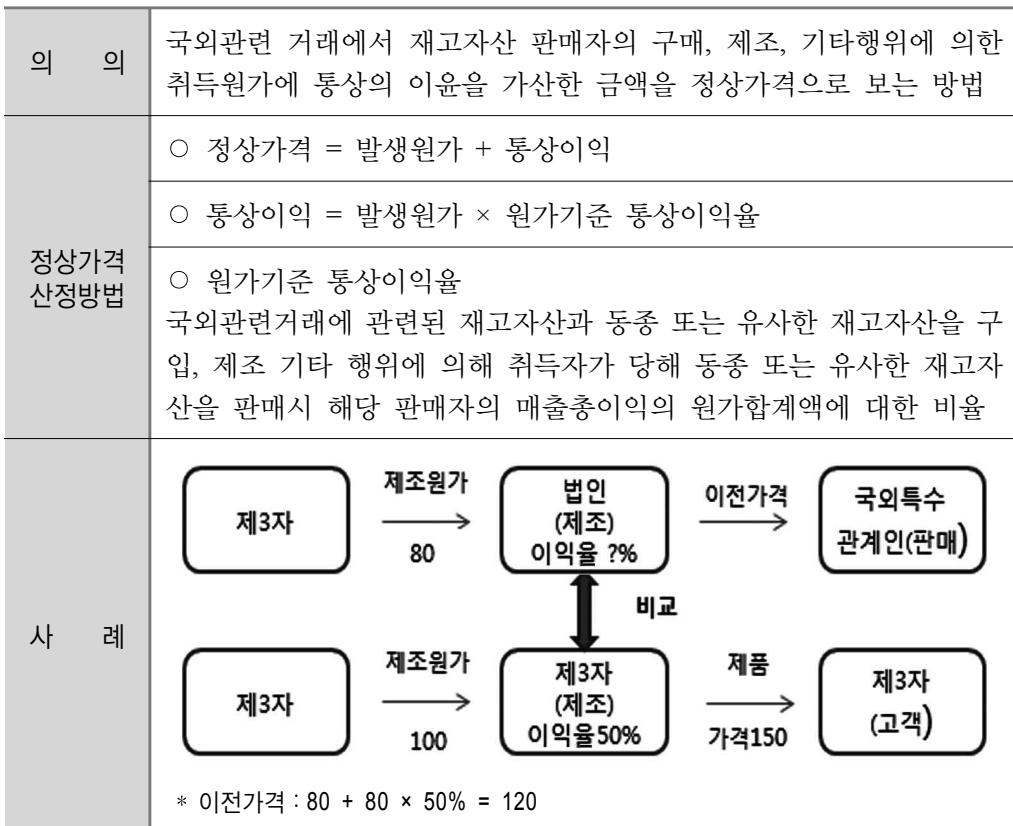
의 의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의 재고자산에 대한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적 용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의 동일성(품목, 규격, 사양, 수량)</li> <li>○ 거래시기의 동일성 (계절적 영향에 따른 가격차이 고려)</li> <li>○ 거래시장의 동일성(시장수준, 지리적 동일성)</li> <li>○ 기타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li> </ul>
사 례	<p>○ 비교대상거래 가격인 100 이 정상가격에 해당</p>

### □ 재판매가격기준법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4 ②-2)

의 의	국외관련 거래에 따른 재고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한 대가의 금액에서 통상의 이윤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정상가격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가격 = 재판매가격 - 통상이익</li> <li>○ 통상이익 = 재판매가격 × 판매기준 통상이익율</li> <li>○ 판매기준 통상이익율 국외관련거래에 관련된 재고자산과 동종 또는 유사한 재고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구입한 자가 해당 동종 또는 유사한 재고자산을 재판매시 해당 판매자의 매출총이익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비율</li> </ul>



□ 원가기준법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4 ②-3)





□ 이익분할법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39의12 ⑧)

<p>의 의</p>	<p>법인 또는 국외관련자에 의한 재고자산의 구입, 제조, 판매 그 외의 행위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의해 측정,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p>
<p>유 형</p>	<p>(비교이익분할방법)(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39의12 ⑧-1)                  국외관련거래와 유사한 상황하에 행해진 경우 비관련자간의 거래에 관련되는 비관련자 사이의 분할될 이익 등에 해당하는 이익배분비율을 이용하여 당해 국외관련거래에 관한 분할할 이익 등을 법인 및 국외관련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독립기업간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p> <p>(기여도이익분할방법)(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39의12 ⑧-2)                  국외관련거래에 관한 분할할 이익 등이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를 짐작하기에 충분한 국외관련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요인에 따라 배분하여 독립기업간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p> <p>(잔여이익분할방법)(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39의12 ⑧-3)                  법인 또는 국외관련자가 중요한 무형고정자산을 가지는 경우에 유용한 방법임. 국외관련거래의 당사자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여 당해 국외관련거래를 함에 있어 자신의 가치부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이익 중 기본이익을 국외관련거래 당사자 각각에 배분하고 분할 후의 잔여소득 등(고유한 공헌도로 인해 발생한 부분)을 잔여소득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를 짐작하기에 충분한 요소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독립기업간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p>
<p>배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산 및 부담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li> <li>○ 영업자산, 유·무형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li> <li>○ 연구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분야에 지출·투자된 비용</li> <li>○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배부기준</li> </ul>



사 례	<p>국외관련거래와 관련되는 재고자산의 판매 등에 의해 법인과국외관련에게 생긴 영업이익 합계 파악</p> <p>↓</p> <p>그 판매등의 행위를 위해 법인과 국외관련자가 각각 지출한비용의 액수, 사용한 고정자산의 금액 외의 요인 파악</p> <p>↓</p> <p>상기 파악한 금액을 참고하여 이익을 분할</p>
	<pre> graph LR     C3[제3자] -- 원재료 --&gt; A[법인(A) &lt;제조&gt;]     A -- 제품 --&gt; B[국외특수관계인(B) &lt;판매&gt;]     B -- 제품 --&gt; C3     </pre> <p>법인(A) &lt;제조&gt;: 제조비용(50), 거래순이익(100), 영업자산(200)</p> <p>국외특수관계인(B) &lt;판매&gt;: 영업비용(10), 거래순이익(100), 영업자산(100)</p>
	<p>○ 비용·자산기준(동일가중치) 이익분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비율 → A : B = 50 : 10</li> <li>- 자산비율 → A : B = 200 : 100</li> <li>- 결합비율 → A : B = (10+10) : (2+5) = 20 : 7</li> <li>- A의 정상 영업이익 → <math>200 \times \frac{20}{27} = 148</math></li> <li>- B의 정상 영업이익 → <math>200 \times \frac{7}{27} = 52</math></li> </ul>

□ 거래단위영업이익법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39의12 ⑧ -2,3,4,5)

의 의	<p>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해당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율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p>
정상가격 산정방법	<p>매출액 영업이익율법 : 국외관련자에게서 구입한 재고자산을 비관련 회사에 판매한 가액에서 그 거래와 비교대상가능한 재고자산의 영업 이익율을 곱해서 계산한 원가 및 판매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지고 독립기업간가격으로 보는 방법</p> <p>* 정상가격 : ① - 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인이 국외관련자에게서 구입한 재고자산을 비관련자에게 판매한 재판매가격</li> <li>② 비교대상거래의 영업이익율(영업이익 / 매출액)</li> <li>③ ① × ② : 법인의 영업이익</li> <li>④ ③ + 당해 법인의 판매관리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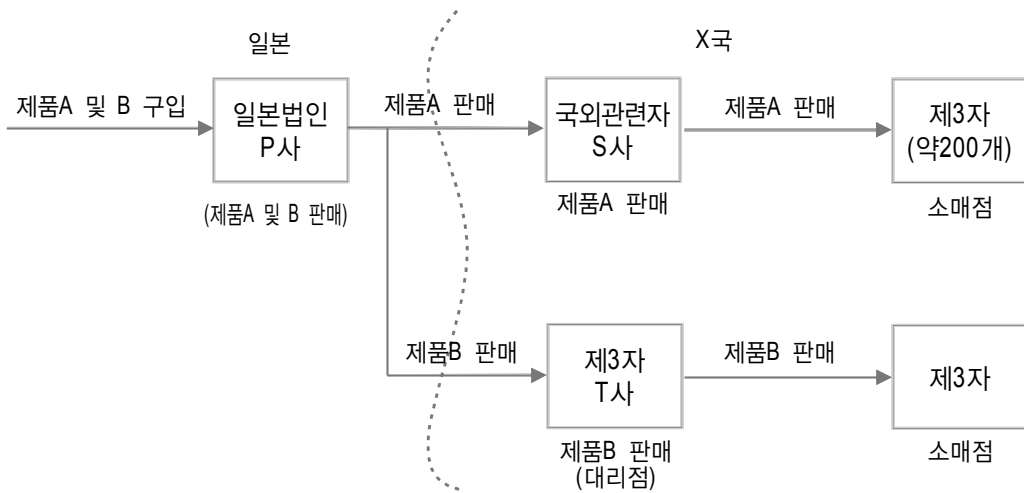
<p>사 례</p>	<p>* 이진가격 : <math>100 - (100 \times 4\% + 15) = 81</math></p>
<p>정상가격 산정방법</p>	<p>총비용영업이익율법 : 법인이 국외관련자에게 판매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법인의 총비용에 총비용영업이익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지고 독립기업간가격으로 보는 방법</p> <p>* 정상가격 : ① + ②</p> <p>① 법인이 국외관련자에게 판매한 재고자산을 비관련자로부터 구입, 또는 제조 그 외의 행위에 의해 취득했을 경우의 그 취득원가</p> <p>② 법인의 총비용에 총비용영업이익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 : (가) × (나)/(다)</p> <p>(가) ㉠ + ㉡의 합계액</p> <p>㉠ 법인이 비관련자로부터 구입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p> <p>㉡ 법인이 국외관련자에 대한 판매관리비</p> <p>(나) 비교대상거래의 영업이익</p> <p>(다) (비교대상거래의 영업이익)에 대한 (비교대상거래의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을 공제한 금액)</p>
<p>사 례</p>	<p>* 이진가격 : <math>80 + (80 + 20) \times 10\% = 90</math></p>

### 3 이전가격세제의 사례

(출처 :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있어서의 참고 사례집 - 일본 국세청)

#### □ 독립가격비준법을 사용하는 경우

[거래관계도]



[전제조건]

#### (법인 및 국외관련자의 사업개황 등)

일본법인 P사는 제품 A 및 제품 B의 판매회사로서 10년 전에 제품 A의 판매자회사인 X국 법인 S사를 설립하였다.

#### (국외관련거래의 개요 등)

P사는 S사에 대하여 제품A를 판매하고 S사는 이를 X국내의 제3자인 소매점 약200개사에 판매하고 있다. P사는 S사의 설립과 동일한 시기부터 X국의 제3자인 대리점 T사에게 제품 B를 판매하고 있으며 T사는 이를 X국내의 소매점에 판매하고 있다. 제품B는 제품A와 P사내에 있어서 제품구분(형번(型番))은 다르지만 성상, 구조, 기능 등의 면에서 동일한 제품이다.



### (법인 및 국외관련자의 기능·활동 등)

P사가 행하는 S사에의 제품A 판매거래와 T사에의 제품 B 판매거래(이하 「양거래」라고 한다.)에 있어서 P사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제품A 및 제품B를 구입하여 이를 S사 및 T사에게 판매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독자성이 있는 활동은 보이지 않으며 기능에 차이가 없다. 또, 어느 하나에 있어서도 상표 등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 (제품A와 제품B의 판매거래와 관련한 계약조건 등)

양거래에 대하여는 거래단계는 같으며 거래규모도 대개 같다. 또, 양거래의 계약 조건(인도조건, 결제조건, 제품보증, 반품조건 등)은 거래가격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 [이진가격제세상 취급]

#### (비교가능성 분석에 근거한 검토)

독립기업간가격의 산정에 있어서는 조치법 제6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안에 따라 선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치법통달66의 4(2)-1, 동66의4(3)-1, 동66의4(3)-3, 사무운영지침3-1 등에 근거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P사와 S사 모두 판매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정도에 큰 차이는 인정되지 않으며 검증대상의 당사자로서 양자 중 어느 쪽을 채용해도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 공개정보로부터는 외부비교대상거래의 후보를 발견할 수 없다.
- 제품A와 제품B는 P사내의 제품구분이 다를 뿐, 성상, 구조, 기능 등 면에서 동종의 제품으로 인정된다.
- 양거래에 있어서 P사가 수행하는 기능 등에 차이는 인정되지 않으며 무형자산도 사용되고 있지 않다.
- 양거래에 있어서 계약조건은 동일하며 계약조건의 차이는 없다고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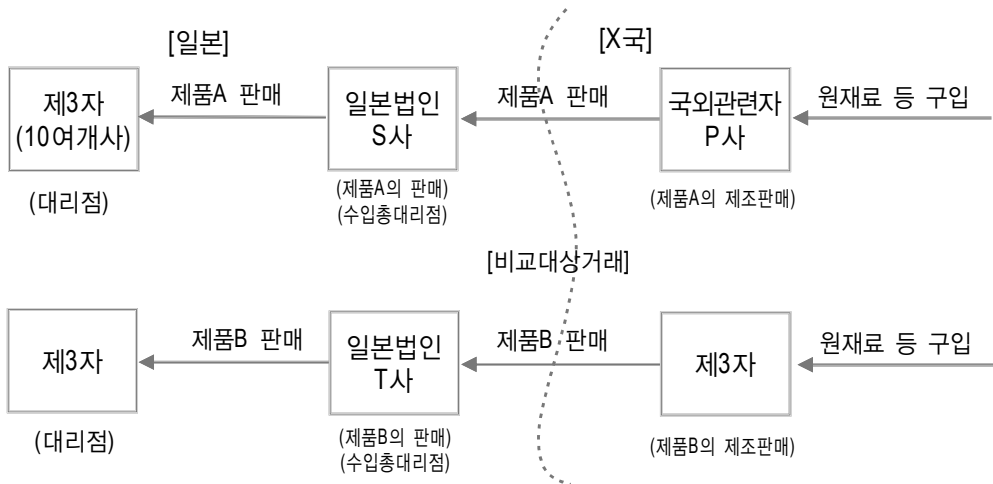
- S사 및 T사는 어느 쪽도 X국의 소매점에 대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이며 양거래에 거래단계는 동일하다고 인정된다. 또 양거래의 거래규모는 거의 동일하며 제품A 및 제품B와 관련한 가격규제 등은 없다.
- P사에 있어서 제품A 및 제품B에 따른 사업전략의 상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독립기업간가격의 산정방법 선정)**

상기의 검토결과로부터 P사가 T사에 제품B를 판매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독립가격비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비교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이렇기 때문에 본 사례에서는 P사로부터 S사로의 제품A 재고자산 판매 거래에 대하여, P사에서 T사로의 제품B의 판매와 관련한 대가 금액을 사용하는 독립가격비준법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독립기업간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 재판매가격기준법을 이용한 경우**

[거래관계도]





### [전제조건]

#### (법인 및 국외관련자의 사업개황 등)

일본법인 S사는 제품A를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는 법인이다. S사의 모회사인 X국법인 P사는 X국에 있어서 제품A의 제조판매를 하고 있다.

#### (국외관련거래의 개요 등)

S사는 P사의 수입총대리점으로서 제품A를 수입하고 이를 일본 국내 제3자의 대리점 10여개사에 판매하고 있다.

#### (법인 및 국외관련자의 기능·활동 등)

S사는 독자성 있는 광고선전·판매촉진활동은 하고 있지 않으며 판매에 있어서 자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것도 없다.

#### (일본 시장의 상황 등)

일본 시장에는 제품A와 경합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외국메이커 10여개사가 진입하고 있지만 이들 외국메이커의 일본 수입총대리점 중 5개사에 대하여는 유가증권보고서의 열람이 가능하고 각사의 홈페이지나 시장조사회사의 분석자료 등 기타 자료도 입수가 가능하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T사는 제3자인 외국메이커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일본 국내의 제3자 대리점에 판매하는 재판매업자이고 그 이외의 사업은 하지 않다. T사의 취급제품 B는 제품A와 성상, 구조 및 기능에 있어서 동종의 제품은 아니지만 유사성이 높고, T사는 매출규모나 거래단계, 판매기능(광고선전, 판매촉진, 애프터서비스, 포장, 배달 등)의 면에서도 S사와 대부분 같다고 인정된다.

또, T사는 판매에 있어서 자사 상표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이전기격세세상 취급]

#### (비교가능성분석에 근거한 검토)

독립기업간 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조치법 제6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안에 맞게 선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치법통달66의4(2)-1, 동66의4(3)-1, 동66의4(3)-3, 사무운영 지침3-1 등에 근거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조판매를 사업으로 하는 P사보다도 제품의 판매만을 하는 S사 쪽이 보다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S사를 검증대상의 당사자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 S사는 수입한 제품A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S사를 검증대상의 당사자로 하는 재판매가격기준법 및 거래단위영업이익법의 적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 S사 및 P사가 하는 거래로부터는 내부비교대상거래 후보를 찾을 수가 없다.
- T사에 관한 공개정보로부터 S사를 검증대상의 당사자로 하는 재판매가격기준법 및 거래단위영업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부비교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을 수가 없다. 또한 독립가격비준법 및 독립가격비준법에 준하는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교대상거래의 후보는 공개정보로부터 찾을 수가 없다.
- T사가 제3자로부터 수입하여 일본 국내의 대리점에게 판매하는 제품B에 대하여는 제품A와 동종은 아니지만 유사성은 높고 T사의 재판매업자로서의 기능 등, 시장상황 등에 대해서도 S사와 대부분 동일하다고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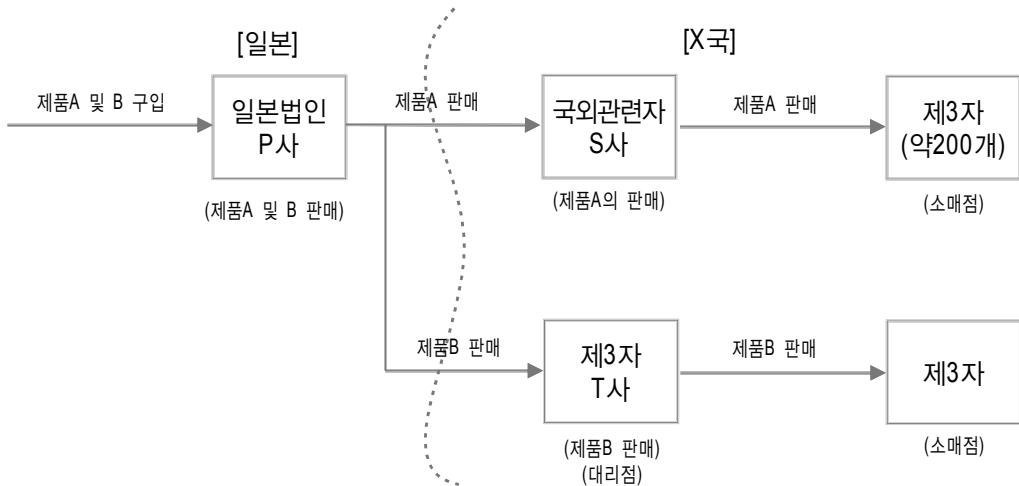
#### (독립기업간 가격 산정방법의 선정)

상기의 검토결과 S사가 P사로부터 제품A를 수입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S사를 검증대상의 당사자로 하는 재판매가격기준법 및 거래단위영업이익법의 선정을 생각할 수 있는데, T사가 국외의 제3자로부터 제품B를 수입하는 거래와 재판매가격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비교대상거래로 할 경우에 있어서 비교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이렇기 때문에 본 사례에서는 S사가 P사로부터 제품A를 수입하는 거래에 대해 T사가 국외의 제3자로부터 유사한 제품B를 수입하는 거래를 비교대상 거래로서 국외관련거래와 관련한 재고자산의 매입처인 S사를 검증대상의 당사자로 하는 재판매가격기준법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서 선정하여 독립기업간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 □ 원가기준법을 사용한 경우

### [거래관계도]



### [전제조건]

#### (법인 및 국외관련자의 사업개황 등)

일본법인 P사는 제품A 및 제품B의 판매회사로서 10년 전에 제품A의 판매자 회사인 X국 법인 S사를 설립하였다.

#### (국외관련거래의 개요 등)

P사는 제품A를 S사에 판매하고 S사는 이를 X국내의 제3자인 소매점 약 200개사에 판매하고 있다. 또, P사는 S사의 설립과 함께 X국의 제3자인 대리점 T사에 제품B의 판매를 하고 있으며 T사는 이를 X국내의 소매점에 판매하고 있다. 제품B는 제품A와 동종의 제품은 아니지만 성상, 구조, 기능 등의 면에서 유사하다.

P사로부터 S사에 대한 제품A의 판매수량과 P사로부터 T사에 대한 제품B의 판매수량은 대개 동등하다.



**(법인 및 국외관련자의 기능·활동 등)**

P사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제품A 및 제품B를 매입하고 이를 S사 및 T사에 판매하고 있는데 독자성 있는 활동은 보이지 않고 상표 등도 사용되고 있지 않다.

또한, S사에의 판매거래와 T사에의 판매거래에 있어서 P사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는 차이가 없다.

**(제품A와 제품B의 판매거래와 관련한 계약조건)**

P사로부터 S사에의 제품A 판매거래와 P사로부터 T사에의 제품B 판매거래의 계약조건(인도조건, 결제조건, 제품보증, 반품조건 등)은 거래가격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이전가격세제상의 취급]**

**(비교가능성분석에 근거한 검토)**

독립기업간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조치법 제6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안에 맞게 선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치법통달66의 4(2)-1, 동66의4(3)-1, 동66의4(3)-3, 사무운영 지침3-1 등에 근거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P사 및 S사는 함께 판매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정도에 큰 차이는 인정되지 않으며 검증대상의 당사자로서 양 중 어느 쪽을 채용해도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 독립가격비준법 및 독립가격비준법에 준하는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내부비교대상 거래의 후보를 찾을 수는 없지만 P사가 T사에게 제품B를 판매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원가기준법 및 거래단위영업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내부비교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을 수가 있다. 또한 당해 거래와 관련한 T사의 손익데이터를 입수할 수 없으며 재판매가격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내부비교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을 수가 없다.



- 공개정보로부터는 외부비교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을 수가 없다.
- 제품A와 제품B는 성상, 구조, 기능 등의 면에서 유사하고 유사한 재고 자산으로 인정된다.
- P사로부터 S사에의 판매거래와 T사에의 판매거래(이하 「양거래」 라고 한다.)에 있어서 P사가 수행하는 기능 등에 차이는 인정되지 않으며 무형자산도 사용되고 있지 않다.
- 양거래에 있어서 계약조건은 동일하며 계약조건의 차이는 없다고 인정된다.
- S사 및 T사는 어느 쪽도 X국의 소매점에 대해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이고 양거래의 거래단계는 동일하다고 인정된다. 또 양 거래의 거래 규모는 대개 동일하며 제품A 및 제품B와 관련한 가격규제 등은 없다.
- P사에 있어서 제품A 및 제품B에 따른 사업전략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 (독립기업간가격 산정방법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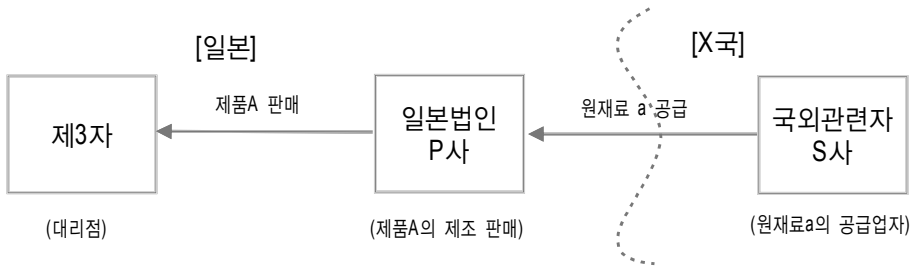
상기 검토 결과 P사로부터 S사에의 제품A 재고자산의 판매거래에 대하여 P사를 검증대상의 당사자로 하는 원가기준법 및 거래단위영업이익법의 선정을 생각할 수 있지만, P사로부터 T사에의 제품B 판매거래를 원가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 비교대상거래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교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이렇기 때문에 본 사례에서는 P사로부터 S사에의 제품A 재고자산 판매 거래에 대해 P사로부터 T사에의 제품B 판매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하고 국외관련거래와 관련한 재고자산의 매출처인 P사를 검증대상의 당사자로 하는 원가기준법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서 선정하여 독립기업간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 독립가격비준법에 준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1) 재고자산 매매거래의 경우

[거래관계도]



[전제조건]

(법인 및 국외관련자의 사업개황 등)

일본법인 P사는 제품A의 제조판매회사로서 10년 전에 제품A의 원재료a를 공급하는 자회사인 X국법인 S사를 설립하였다.

(국외관련거래의 개요 등)

S사는 원재료a를 모두 P사에 판매하고 P사는 이를 기초로 제품A를 제조하여 일본 국내의 제3자인 대리점에 판매하고 있다.

(법인 및 국외관련자의 기능·활동 등)

P사는 S사 이외로부터는 원재료a를 공급받고 있지 않다.

(시장상황 기타)

제품A의 원재료a는 상품거래소에서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소의 시세가격 (시장가격)이 존재한다.

[이전가격세제상의 취급]

(비교가능성분석에 근거한 검토)

독립기업간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조치법 제6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안에 맞게 선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치법통달



66의4(2)-1, 동66의4(3)-1, 동66의4(3)-3, 사무운영 지침3-1 등에 근거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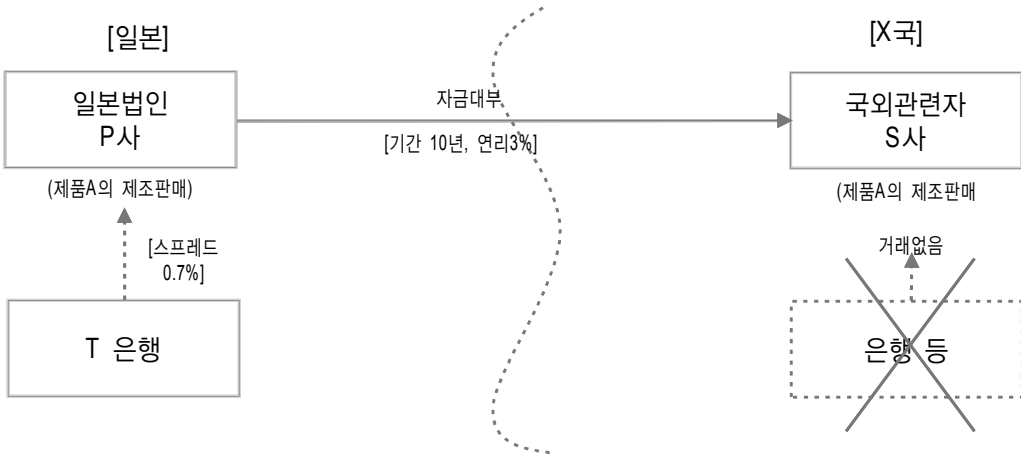
- 제조판매를 사업으로 하는 P사보다도 원재료의 공급만을 하는 S사 쪽이 보다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S사를 검증대상의 당사자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 P사는 S사 이외로부터 공급을 받은 원재료a를 기초로 제품a를 제조하는 제조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P사를 검증대상의 당사자로 하는 재판매 가격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
- P사는 S사 이외로부터 원재료a의 공급을 받지 않으며 또, S사도 원재료a를 모두 P사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가격비준법 및 독립가격비준법에 준하는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내부비교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을 수가 없다. 또 공개정보로부터는 독립가격비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외부 비교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아낼 수 없다.
- 공개정보로부터는 S사를 검증대상의 당사자로 하는 원가기준법 및 거래 단위영업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외부비교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아낼 수 없다.
- 원재료a는 세계적으로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고 시장가격이 존재 하지만 이를 기초로 개별의 거래조건과 관련한 차이(수송코스트 등의 차이)의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가격비준법에 준하는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비교대상거래를 찾아낼 수 없다.

#### (독립기업간가격 산정방법의 선정)

상기 검토결과에서 P사가 S사로부터 원재료a를 수입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원재료a의 시장가격을 비교대상거래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독립가격비준법에 준하는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비교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본 사례에서는 원재료a의 시장가격을 사용한 독립가격비준법에 준하는 방법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서 선정하여 독립기업간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거래관계도]



[전제조건]

(법인 및 국외관련자의 사업개황 등)

일본법인 P사는 제품 A의 제조판매회사이다. X국법인 S사는 제품A의 제조 판매를 하는 P사의 자회사이다. P사 및 S사의 업무내용은 어느 쪽도 제품A의 제조판매이며, 금전대부 등을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S사의 업적은 호조이며 P사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국외관련거래의 개요 등)

P사는 7년 전에 S사의 제조라인증설에 필요한 설비투자자금에 대해 P사의 보유자금을 원자(原資)로 하여 기간10년, 연리3%의 조건으로 X국 통화환율에 의해 S사에게 대여하였다.

(법인 및 국외관련자의 자금조달실적 등)

P사 및 S사 모두 금융기관이외의 비관련자와의 사이에서 금전대차거래를 한 적은 없다. 또, S사는 지금까지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이 없으며 S사에 관한 스프레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망은 없다.

한편, P사는 과거에 주거래은행인 T은행으로부터 장기차입을 한 적이 있으며 P사가 S사에 대여했던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T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의



스프레드<sup>9)</sup>에 대해서는 0.7%라는 회답을 동 은행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또 금융정보제공회사의 정보에 의하면 대여일에 있어서 기간 10년의 X국  
 통화에 대한 금리 스왑의 스왑 레이트<sup>10)</sup>는 5%로 되어 있다.

### [이전자격세제의 취급]

#### (비교가능성분석에 근거한 검토)

독립기업간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조치법 제6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안에 맞게 선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치법통달 66의4(2)-1, 동66의4(3)-1, 동66의4(3)-3, 사무운영 지침3-1 등에 근거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외관련거래의 내용은 P사와 S사와의 사이에서 금전의 대차거래가 있기 때문에 검증대상의 당사자로서 양자 중 어느 쪽을 채용해도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 수집할 수 있는 범위의 정보로부터는 독립가격비준법과 동등한 방법 및 P사를 검증대상의 당사자로 하는 원가기준법과 동등한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비교대상거래 후보를 찾을 수 없다.
- S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하였을 경우에 부여되었을 이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무운영지침2-7(1)에 제기하는 이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
- P사에서는 은행차입의 실적이 있으며 P사의 거래은행으로부터 P사에 관한 스프레드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사무운영지침2-7(2)에 제기하는 이율을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독립기업간가격 산정방법의 선정)

상기 검토결과에서 본 사례에서는 사무운영지침 2-7(2)에 제기하는 이율을 독립기업간의 이율로서 사용하는 독립가격비준법에 준하는 방법과 동등한

9) 금융기관이 얻어야 할 이익에 상당하는 금리이며 금융기관 등의 사무경비에 상당하는 부분이나 차입자의 신용리스크에 상당하는 부분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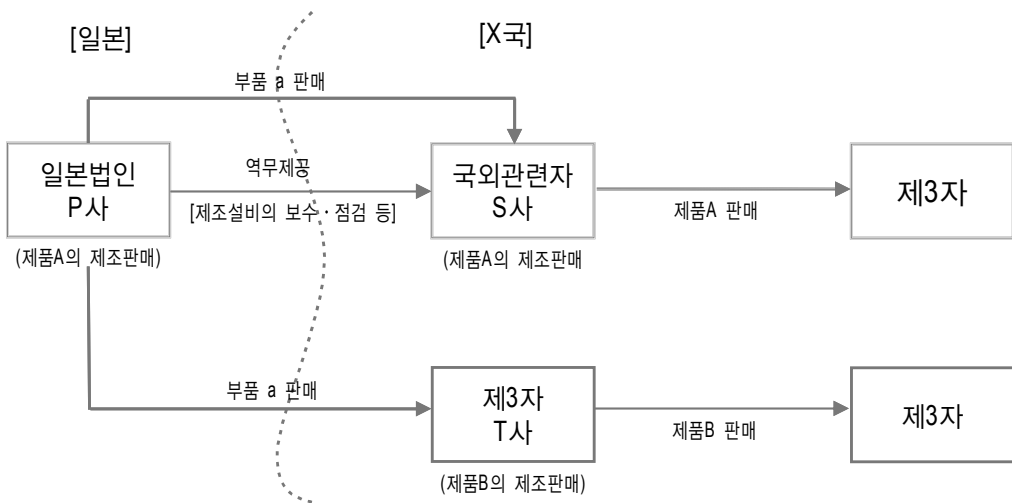
10) 국제금융시장에서 공시된 단기금리와 교환 가능한 장기금리의 수준을 나타냄

방법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독립기업간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P사와 S사와의 금전대차거래와 관련한 독립기업간 이율은 5.7%가 된다(스왑레이트 5% + 스프레드 0.7%).

□ 원가기준법에 준하는 방법과 동등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거래관계도]



[전제조건]

(법인 및 국외관련자의 사업개황 등)

일본법인 P사는 제품 A의 제조판매회사로서 10년 전에 제품A의 제조판매 자회사인 X국 법인 S사를 설립했다. S사는 P사가 제조한 부품a를 구입하고 여기에 다른 부품을 더해 제품A의 제조를 하고 X국내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또, P사는 S사에게 제품A의 제조설비와 관련한 역무제공을 하고 있다. P사는 X국의 제3자인 T사에서도 부품a를 판매하고 있다. T사는 P사로부터 부품a를 구입하여 T사는 여기에 다른 부품을 더해 제품B의 제조를 하여 X국내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P사의 업무내용은 제품A의 제조판매 및 부품a의 판매이며 역무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국외관련거래의 개요 등)

#### (1) 부품 a의 판매거래

P사는 S사와 T사에 동일한 부품a를 동일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거래와 관련한 거래단계, 거래규모 등의 거래조건도 동일하다.

#### (2) 역무제공거래

P사는 S사의 제품A 제조설비와 관련한 보수·점검이나 오퍼레이터의 교육훈련 등을 위해 자사 제조부문의 기술사원 3명을 연 2개월 정도 S사에 출장시키고 있다. P사의 3명 기술사원이 하는 보수·점검 등의 역무는 독자성 있는 것은 아니며 P사의 제조노하우 등도 사용되고 있지 않다. 당해 역무제공에 관해서는 S사로부터 P사에 대가 지불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P사, S사 어느 쪽도 비관련자와의 사이에서 동일한 역무제공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 또, 비관련자간에 있어서 동일한 역무제공거래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

### [이진가격체제상 취급]

#### (비교가능성 분석에 근거한 검토)

#### (1) 부품a 판매거래

독립기업간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조치법 제6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안에 맞게 선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치법 통달66의4(2)-1, 동66의4(3)-1, 동66의4(3)-3, 사무운영 지침3-1 등에 근거한 검토를 한 바, P사와 S사와의 부품a의 판매거래에 대해서는 P사와 T사와의 부품a의 판매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하는 독립가격비준법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그 결과 이진가격체제상의 문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 (2) 역무제공거래

독립기업간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조치법 제6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안에 맞게 선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치법



통달66의4(2)-1, 동66의4(2)-3-1, 동66의4(3)-3, 사무운영 지침3-1 등에 근거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외관련거래의 내용은 P사가 S사에 대해 본래의 업무(본 사례에 있어서는 부품a의 판매)에 부수하여 하는 역무제공이기 때문에 P사를 검토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단, 거래내용으로 보면 P사를 검증대상의 당사자로 하는 재판매가격 기준법과 동등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 수집할 수 있는 범위의 정보에서는 독립가격비준법과 동등한 방법, 독립가격비준법에 준하는 방법과 동등한 방법 및 P사를 검증대상의 당사자로 하는 원가기준법과 동등한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비교 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아낼 수 없다.
- P사가 S사에 대해 하는 역무제공은 본래의 업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역무제공에 필요했던 비용은 역무제공을 한 사업연도의 P사 원가 금액의 상당금액을 점한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당해 역무제공에는 무형자산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해 역무제공 총원가금액에 마크업을 하지 않고 독립기업간가격으로 하는 방법의 선정을 생각할 수 있다(사무운영지침2-10(1)).

#### (독립기업간가격 산정방법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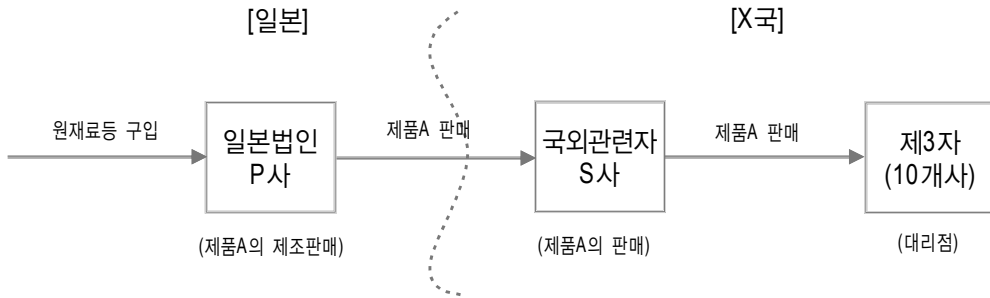
상기의 검토결과에서 본 사례에서는 P사가 S사에 대해 하는 역무제공의 총원가 금액을 독립기업간가격으로 하는 원가기준법에 준하는 방법과 동등한 방법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서 선정하여 독립기업간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또한 이 경우의 총원가금액은 출장과 관련한 여비·교통비, 체재비, 출장자의 출장기간에 대응하는 급여·상여·퇴직급부비용, 기타 출장에 필요했던 비용 등의 직접비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부된 간접비(담당부문 및 보조부문의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 □ 거래단위영업이익올법을 사용할 경우

### (1) 재고자산의 매매거래

#### [거래관계도]



#### [전제조건]

##### (법인 및 국외관련자의 사업개황 등)

일본법인 P사는 제품A의 제조판매회사로서 10년 전에 제품 A의 판매자 회사인 X국법인 S사를 설립했다.

제품 A는 P사의 연구개발활동의 성과인 독자기술이 사용되어 제조된 제품이다.

##### (국외관련거래의 개요 등)

P사는 S사에 대해 제품A를 판매하고 S사는 구입한 제품A를 X국의 제3자인 대리점 10개사에게 판매하고 있다.

##### (법인 및 국외관련자의 기능·활동 등)

S사는 독자성 있는 광고선전·판매촉진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 (기타)

X국의 기업재무정보개시제도에서는 원가항목의 기재가 필요로 되어 있지 않다(단, 일본에 있어서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항목은 표시된다.).

[이전가격세제상 취급]

(비교가능성분석에 근거한 검토)

독립기업간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조치법 제6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안에 맞게 선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치법통달 66의4(2)-1, 동66의4(3)-1, 동66의4(3)-3, 사무운영 지침3-1 등에 근거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조판매를 사업으로 하고 연구개발을 하는 P사보다도 제품의 판매만을 하는 S사 쪽이 보다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S사를 검증 대상의 당사자로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 P사 및 S사가 하는 거래에서는 내부비교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아낼 수 없다.
- P사가 S사에게 판매하는 제품 A는 P사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창출된 독자기술을 사용한 제품이며 공개정보로부터는 독립가격비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외부비교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아낼 수 없다.

또 독립가격비준법에 준하는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외부비교대상 거래의 후보도 찾아낼 수 없다.

- S사는 독자성 있는 광고선전·판매촉진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S사에 의한 독자의 가치있는 기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독자의 가치있는 기여를 하는 무형자산과 소득의 원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례10-15] 참조). X국에서의 공개정보로부터는 매출총이익 및 매출원가 금액을 파악할 수 없고 또 매출총이익율에 영향을 주는 차이의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S사를 검증대상의 당사자로 하는 재판매가 격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외부비교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아낼 수 없다. 또 재판매가격기준법에 준하는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외부비교 대상거래의 후보도 찾아낼 수 없다.
- S사를 검증대상의 당사자로 하는 거래단위영업이익법에 대해서는 공개 정보로부터 외부비교대상 거래의 후보를 찾아낼 수 있으며 또 당해 외부 비교대상거래의 후보에 대해 조치법시행령 제39조의12 제8항 제2호에 규정하는 비율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차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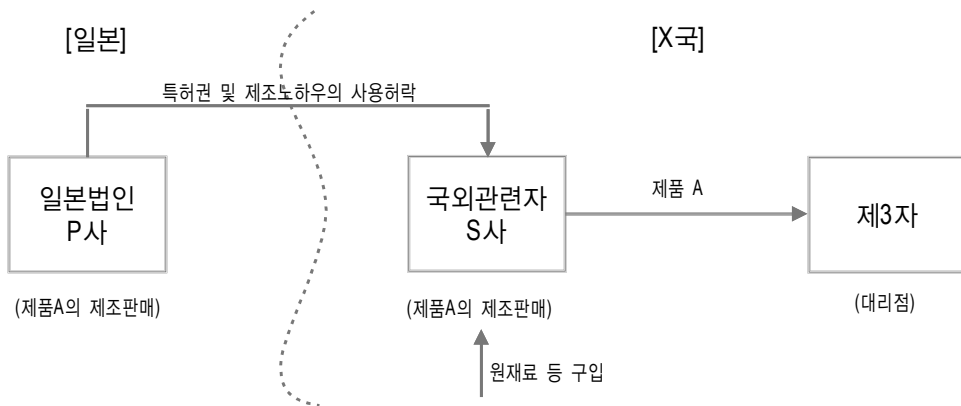
- 비교이익분할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외부비교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아 낼 수 없다. 또 상기 국외관련거래와 관련한 사업은 글로벌트레이딩이나 공동사업체에 있어서의 활동과 같이 고도로 통합된 것은 아니며 국외관련 거래의 당사자 어느 일방을 검증대상으로 하는 산정 방법보다도 이익 분할법 쪽이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래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기업간가격 산정방법의 선정)**

상기의 검토결과, 본 사례에서는 P사가 S사에 제품A를 판매하는 거래에 대해 S사를 검증대상의 당사자로 하는 거래단위영업이익법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독립기업간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2) 무형자산의 사용허락거래**

**[거래관계도]**



**[전제조건]**

**(법인 및 국외관련자의 사업개황 등)**

일본법인 P사는 제품 A의 제조판매회사로서 10년 전에 제품 A의 제조판매자 회사인 X국법인 S사를 설립했다.

제품A는 P사의 연구개발활동의 성과인 독자기술이 사용되어 제조된 제품이다.

**(국외관련거래의 개요 등)**

P사는 S사에 대해 제품A의 제조와 관련한 특허권 및 제조 노하우(P사의 연구개발활동에 의해 창출된 독자기술)의 사용허락을 하고 있다.

S사는 X국에서 원재료 등을 구입하여 제품A의 제조를 하고 X국의 제3자인 대리점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P사와 S사와의 사이에서는 재고자산의 매매거래는 없다.

**(국외관련자의 기능·활동 등)**

S사에서는 연구개발부문은 없고 S사가 하는 제품A의 제조는 P사로부터 공여받은 P사의 독자기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상황은 전제조건1과 같다.

**(기타)**

앞 재고자산 매매거래의 전제조건과 같다.

**[이전가격세제상 취급]**

**(비교가능성분석에 근거한 검토)**

독립기업간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조치법 제6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안에 맞게 선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치법통달 66의4(2)-1, 동66의4(3)-1, 동66의4(3)-3, 사무운영 지침3-1 등에 근거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조판매를 사업으로 하고 연구개발을 하는 P사보다도 제품의 제조판매만을 하는 S사 쪽이 보다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S사를 검증 대상의 당사자로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단, 거래내용에서 S사를 검증대상의 당사자로 하는 재판매가격기준법과 동등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 P사가 S사에 대해서 사용허락한 특허권 등은 P사의 연구개발활동에 의해 창출된 독자기술이며 수집할 수 있는 범위의 정보로부터는 독립가격비준법과 동등한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비교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아낼 수가 없다. 또 독립가격비준법에 준하는 방법과 동등한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외부비교대상거래의 후보도 찾아낼 수가 없다.
- 공개정보로부터 S사가 하는 제조판매거래와 비교가능한 비관련간자거래의 영업이익율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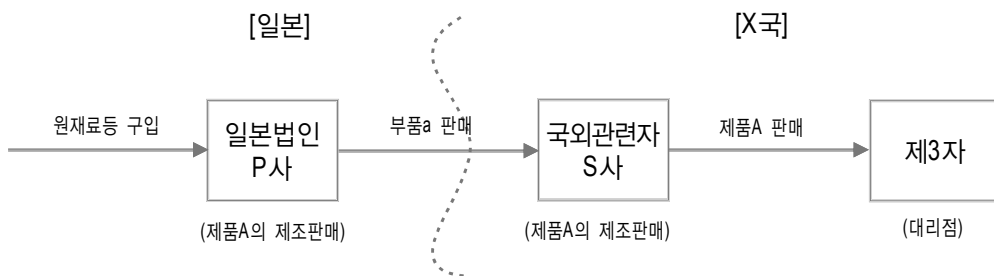
- 비교이익분할법에 준하는 방법과 동등한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비교 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아낼 수 없다. 또 상기 국외관련거래외 관련한 사업은 글로벌트레이딩이나 공동사업체에 있어서의 활동과 같이 고도로 통합된 것은 아니고 국외관련거래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을 검증대상으로 하는 산정방법 보다도 이익분할법 쪽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거래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독립기업간가격 산정방법의 선정)**

상기 검토결과, 본 사례에서는 P사와 S사외의 사이의 무형자산의 사용허락 거래와 관련한 대가를 직접 산정하는 것에 대신하여 비교가능거래의 영업 이익을 보다 S사의 기능에 맞는 통상의 이익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S사의 잔여이익을 특허권 및 제조노하우의 사용허락과 관련한 대가의 금액으로서 간접적으로 독립기업간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S사를 검증대상의 당사자로 하는 거래단위영업이익법에 준하는 방법과 동등한 방법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 기여도이익분할법을 사용할 경우**

[거래관계도]



[전제조건]

**(법인 및 국외관련자의 사업개황 등)**

일본법인 P사는 제품 A의 제조판매회사로서 10년 전에 제품 A의 판매자 회산인 X국법인 S사를 설립했다.

**(국외관련거래의 개요 등)**

P사는 S사에 대해 제품A용의 부품a를 판매하고 S사는 부품 a에 다른 부품을 더해 제품A의 제조를 하고 X국의 제3자인 대리점에게 판매하고 있다.

**(법인 및 국외관련자의 기능·활동 등)**

S사에서는 연구개발활동부문은 없다. 또 S사는 독자성 있는 광고선전·판매 촉진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판매에 있어서 자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기타)**

S사는 X국의 제3자에게 제품A를 판매하고 있지만, X국의 법인 2개사(X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을 모회사로 하는 제조자회사. 이하 「당해 2개사」라고 한다.)도 제품A의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X국 시장에서는 S사를 포함한 3사의 과점이 이어지고 있다.

제품A는 당해 2개사의 유사제품과 마켓쉐어를 균등하게 나누어 갖고 있으며 제품성능이나 가격면도 당해 2개사의 유사제품과 거의 동등하다.

일본국내에서도 P사의 제품A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은 1개사 밖에 없으며 그 거래는 모두 관련자간 거래이다.

**[이전가격세제상 취급]**

**(비교가능성분석에 근거한 검토)**

독립기업간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조치법 제6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안에 맞게 선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치법통달 66의4(2)-1, 동66의4(3)-1, 동66의4(3)-3, 사무운영 지침3-1 등에 근거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P사 및 S사는 모두 제품A와 관련한 제조판매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정도에 큰 차이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검증대상의 당사자로서 양자 중 어느 쪽을 채용해도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 P사 및 S사가 하는 거래에서는 내부비교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아낼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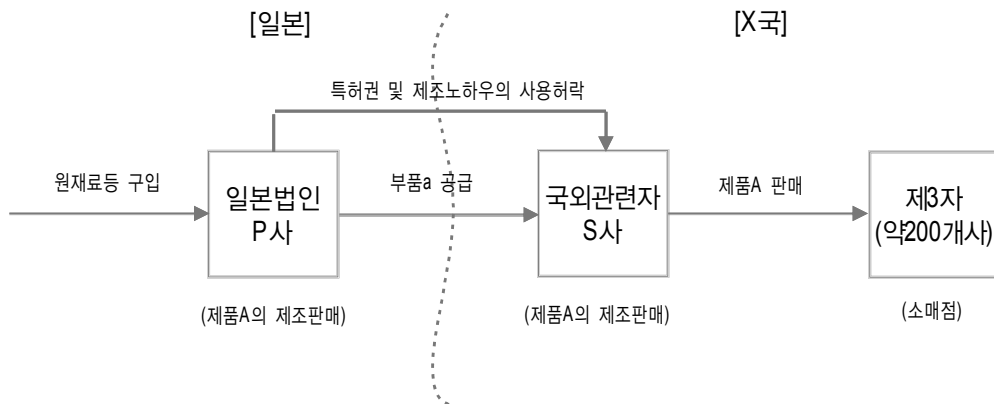
- P사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 제품A의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1개사 밖에 없고 그 거래는 모두 관련자간거래이며 공개정보로부터는 독립가격비준법 및 P사를 검증대상의 당사자로 하는 원가기준법 및 거래단위영업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외부비교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아낼 수 없다. 또 이들 방법에 준하는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외부 비교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아낼 수 없다.
- S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품을 취급하는 당해 2개사의 거래가 관련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S사를 검증대상의 당사자로 하는 재판매가격기준법 및 거래단위영업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외부비교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아낼 수 없다. 또 이들 방법에 준하는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외부 비교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아낼 수 없다.
- 본 사례의 국외관련거래에 있어서 P사 및 S사에 의한 독자의 가치있는 기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비교이익분할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비교 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아낼 수 없다.

**(독립기업간가격 산정방법의 선정)**

상기 검토 결과, 본 사례에서는 기여도이익분할법을 가장 적절한 산정방법 으로서 선정하고 독립기업간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 잔여이익분할법을 이용하는 경우**

[거래관계도]





[전제조건]

(법인 및 국외관련자의 사업개황 등)

일본법인 P사는 제품 A의 제조판매회사로서 10년 전에 제품 A의 판매자 회사인 X국법인 S사를 설립했다.

제품 A는 P사의 연구개발활동의 성과인 독자기술이 사용되어 제조된 제품이다.

(국외관련거래의 개요 등)

P사는 S사에 대해 제품A용의 부품a(P사의 독자기술이 집약된 주요 부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제품 A의 제조에 관한 특허권 및 제조노하우(P사의 연구개발활동에 의해 창출된 독자기술)의 사용허락을 하고 있다.

S사는 부품a에 다른 부품을 더해 제품A를 제조하여 X국의 제3자인 소매점 약 200개사에 대해 판매하고 있다.

(법인 및 국외관련자의 기능·활동 등)

S사에는 연구개발활동부문은 없고 S사가 하는 제품A의 제조는 P사로부터 공여된 독자기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S사는 다수의 영업담당자를 배치하여 소매점이나 최종소비자 상대로 독자적인 광고선전·판매촉진활동을 하고 있다.

제품A는 제품 자체의 독자적인 기술성능 외에 광고선전·판매촉진활동을 통한 높은 제품인지도나 충실한 소매점 점포망 등에 의해 X국에 있어서 일정한 마켓쉐어를 확보함과 동시에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전가격세제상 취급]

(비교가능성분석에 근거한 검토)

독립기업간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조치법 제6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안에 맞게 선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치법통달 66의4(2)-1, 동66의4(3)-1, 동66의4(3)-3, 사무운영 지침3-1 등에 근거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P사가 S사에 대해 사용허락한 특허권 등은 P사의 연구개발활동에 의해 창출된 독자기술이고 또 판매하는 부품a도 이 독자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부품이기 때문에 국외관련거래에 있어서 P사에 의한 독자적인 가치있는 기여가 인정된다.

수집할 수 있는 범위의 정보로부터는 독립가격비준법(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 및 P사를 검증대상의 당사자로 하는 원가기준법 및 거래단위영업이익법((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비교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아낼 수 없다. 또한 이들 방법에 준하는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비교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아낼 수 없다.

- S사는 광고선전·판매촉진활동에 의해 형성된 「기본적 활동만을 하는 법인」(주)보다도 높은 제품인지도나 충실한 소매점 점포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국외관련거래에 있어서 S사에 의한 독자의 가치있는 기여가 인정된다.

수집할 수 있는 범위의 정보로부터는 이러한 S사의 거래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관련자간거래를 파악할 수 없고 S사의 판매거래와 관련한 재판매가격기준법 및 거래단위영업이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비교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아낼 수 없다. 또한 이들 방법에 준하는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비교대상거래의 후보를 찾아낼 수 없다.

- 부품a의 판매거래와 특허권 및 제조노하우의 사용허락거래는 일체로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된다. 또 S사의 국외관련거래와 관련한 손익에 대해서는 부품a의 판매거래와 특허권 및 제조노하우의 사용허락거래별로 구분하여 분리할 수 없다.

(주)본 사례집에 있어서는 국외관련거래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며 시장, 사업규모 등이 유사한 법인 중 기본적인 제조·판매 등의 활동만으로는 창출할 수 없는 이익 발생에 공헌하는 독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법인을 「기본적 활동만을 하는 법인」으로 한다.

또한 본 사례 이하의 사례에 있어서 「높은」 제품인지도, 「충실한」 소매점 점포, 「독자」의 기술, 「낮은」 제조원가, 등의 표현은 모두 기본적 활동만을 하는 법인과 비교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다.

**(독립기업간가격 산정방법의 선정)**

상기 검토 결과, P사의 연구개발활동 및 S사의 광고선전·판매촉진활동에 의해 형성된 무형자산이 기본적 활동 만을 행하는 법인과의 비교에 있어서 P사 및 S사의 국외관련거래와 관련한 소득의 원천이 되고 있고 국외관련 거래에 있어서 P사 및 S사에 의한 독자의 가치있는 기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본 사례에 있어서는 잔여이익분할법에 준하는 방법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독립기업간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4 이전가격문서화 제도**

**□ 의의**

이전가격조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로서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시 또는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이전가격문서화라고 함

**□ 특징**

해당 서류 제출을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 규정은 없으나, Secret Comparable에 의한 과세(추정과세) 또는 독립 제3자의 국외특수관계자간거래에 관한 사업과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 및 검사에 의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 □ 이진가격 문서화 절차

사실분석	분석대상 관련 회사 소개, 생산관계, 그룹소개, 조직구조, 각 회사의 손익현황 및 관련업계 정보 등 기본 사실을 분석
관련자간 거래현황 등 파악	계열사간 거래형태 및 거래흐름, 거래금액, 가격정책, 가격협상과정 등의 상황을 파악
기능분석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실행하고 있는 계열사의 기능 및 위험을 분석
분 석	분석대상거래의 적절한 이진가격산정방법의 결정, 비교대상기업의 사업선정 및 수익률 범위 산정 등을 분석
이진가격문서 작성	분석결과를 이진가격 문서화(일본어)하고, 이진가격조사에 대비

## □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조세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2조의10)

### ① 국외특수관계거래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거래와 관련된 자산의 명세·용역의 내용
- 거래에서 쌍방이 수행하는 기능·부담하는 리스크와 관련된 사항
- 거래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내용
-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약의 내용
- 거래대가금액의 설정방법, 설정과 관련된 교섭 내용
- 거래와 관련된 손익의 명세
- 시장과 관련된 분석, 기타 시장과 관련된 사항
- 특수관계자 쌍방의 사업방침
- 거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거래의 유무 및 그 내용

② 국외특수관계거래에 대해 법인이 선정한 정상가격 관련 서류

- 선정된 이전가격산정방법, 선정이유, 다른 독립기업간 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작성된 서류
- 채택된 비교대상거래 등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비교대상거래 등의 명세
- 이익분할방법 선정시 특수관계자 쌍방에 대한 귀속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서류
- 복수의 국외특수관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정상가격을 산출했을 경우 그 이유와 각 거래내용을 기재한 서류
- 비교대상거래 등에 대해 차이조정을 했을 경우 그 이유 및 방법을 설명하는 서류

□ 국외관련자와의 거래 시 확정신고서의 첨부서류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4 제15항)

별표17의4 「국외관련자에 대한 명세서」

(국외관련자 대상여부 및 독립기업간 가격 선정한 산정방법 등을 기재)



□ 서식 (국외관련자에 대한 명세서)

国外関連者に関する明細書		事業年度 又は連結 事業年度	・	・	法人名	( )	
国外 関連者 の 名称 等	名 称						
	本店又は主たる 本事務所の所在地						
	主たる事業 従業員の数						
	資本金の額又は出資金の額						
	特殊の関係の区分	第 該当	第 該当	第 該当			
	株式等の保有割合	保 有	(内 %) %	(内 %) %	(内 %) %		
		被 保 有	(内 %) %	(内 %) %	(内 %) %		
		同一の者による 国外関連者の 株式等の保有	(内 %) %	(内 %) %	(内 %) %		
	直近事業 年度の 営業収益等	事 業 年 度	平 平	・ ・	・ ・	平 平	・ ・
	営業収益又は売上高		( 百万円)	( 百万円)	( 百万円)		
営業費用	原 価	( 百万円)	( 百万円)	( 百万円)			
	販売費及び 一般管理費	( 百万円)	( 百万円)	( 百万円)			
営 業 利 益	( 百万円)	( 百万円)	( 百万円)				
税 引 前 当 期 利 益	( 百万円)	( 百万円)	( 百万円)				
利 益 剩 余 金	( 百万円)	( 百万円)	( 百万円)				
国外 関連者 と 取引 状 況 等	棚卸資産の売買の対価	受 取	百万円	百万円	百万円		
		支 払					
		算定方法					
	役務提供の対価	受 取	百万円	百万円	百万円		
		支 払					
		算定方法					
	有形固定資産の使用料	受 取	百万円	百万円	百万円		
		支 払					
		算定方法					
	無形固定資産の使用料	受 取	百万円	百万円	百万円		
		支 払					
		算定方法					
貸付金の利息 又は借入金の利息	受 取	百万円	百万円	百万円			
	支 払						
	算定方法						
	受 取	百万円	百万円	百万円			
	支 払						
	算定方法						
	受 取	百万円	百万円	百万円			
	支 払						
	算定方法						
事前確認の有無		有 ・ 無	有 ・ 無	有 ・ 無			

別表十七(四) 平二十六・四・一以後終了事業年度又は連結事業年度分

## 別表十七（四）の記載の仕方

1 この明細書は、法人又は連結法人が国外関連者（措置法第66条の4第5項又は第68条の88第5項《国外関連取引とみなされる取引》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おけるこれらの規定に規定する非関連者を含みます。以下同じ。）との間で取引を行った場合において、法人が同法第66条の4第15項《国外関連者に関する明細書の添付》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とき又は連結法人が同法第68条の88第15項若しくは第16項《連結法人に係る国外関連者に関する明細書の添付》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ときに記載します。

なお、連結法人については、適用を受ける各連結法人ごとにこの明細書を作成し、その連結法人の法人名を「法人名」の括弧の中に記載してください。

2 「従業員の数」には、国外関連者における従業員の数を記載します。

3 「資本金の額又は出資金の額」は、国外関連者の所在地国の通貨により記載することとし、円換算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4 「特殊の関係の区分」には、法人と国外関連者との関係が措置法令第39条の12第1項各号又は第39条の112第1項各号《特殊の関係の意義》のいずれに該当するかを記載します。

また、措置法第66条の4第5項又は第68条の88第5項の規定の適用がある場合には、これらの規定を記載します。

5 「株式等の保有割合」の「保有」には、法人が直接又は間接に保有する国外関連者の株式等の保有割合（措置法令第39条の12第2項又は第39条の112第2項《直接又は間接保有の株式等の保有割合の計算》に規定する合計した割合をいいます。以下同じ。）を記載し、「被保有」には、国外関連者により直接若しくは間接に保有されている株式等の保有割合又は同一の者（その法人及び国外関連者が同一の者によってそれぞれ発行済株式等を直接若しくは間接に保有されている場合におけるその同一の者をいいます。以下同じ。）により直接若しくは間接に保有されているその法人の株式等の保有割合を記載し、「同一の者による国外関連者の株式等の保有」には、同一の者により直接若しくは間接に保有されているその国外関連者の株式等の保有割合を記載します。

なお、「保有」の内書には法人が直接に保有する国外関連者の株式等の保有割合を、「被保有」の内書には国外関連者等が直接に保有する当該法人の株式等の保有割合をそれぞれ記載し、「同一の者による国外関連者の株式等の保有」の内書には同一の者が直接に保有する国外関連者の株式等の保有割合を記載します。

6 「直近事業年度の営業収益等」の各欄には、当期の終了の日以前の同日に最も近い日に終了する国外関連者の事業年度の営業収益、営業費用、営業利益、税引前当期利益及び利益剰余金の額を国外関連者がその会計帳簿の作成に当たり使用する外国通貨によりそれぞれ記載するとともに、円換算した金額を括弧内に記載します。

なお、円換算により記載すべき金額の単位は百万円とし、百万円未満の端数は四捨五入します。

7 「国外関連者との取引状況等」の各欄は、次により記載します。

(1) 「受取」又は「支払」の各欄には、当期において、国外関連者から支払を受ける対価の額の取引の種類別の総額又は国外関連者に支払う対価の額の取引の種類別の総額をそれぞれ記載します。この場合、当期の確定申告書の提出の時までに取引金額の実額を計算することが困難な事情にあるときは、合理的な方法により算定した推計値を記載することとして差し支えありません。

なお、記載すべき金額の単位は百万円とし、百万円未満の端数は四捨五入します。

(2) 「算定方法」の各欄には、措置法第66条の4第2項又は第68条の88第2項《独立企業間価格の算定》に規定する算定の方法のうち、国外関連者から支払を受ける対価の額又は国外関連者へ支払う対価の額に係る同法第66条の4第1項又は第68条の88第1項《国外関連者との取引に係る課税の特例》に規定する独立企業間価格につき法人が選定した算定の方法（一の取引の種類につきその選定した算定の方法が二以上ある場合には、そのうち主たる算定の方法）をそれぞれ記載します。

なお、生産拠点の海外移転、取引形態・流通形態の変更、買収・合併等による事業再編など、独立企業間価格の算定に影響を与える特別な事情が生じた場合には、その具体的な内容を別紙に記載して添付してくださ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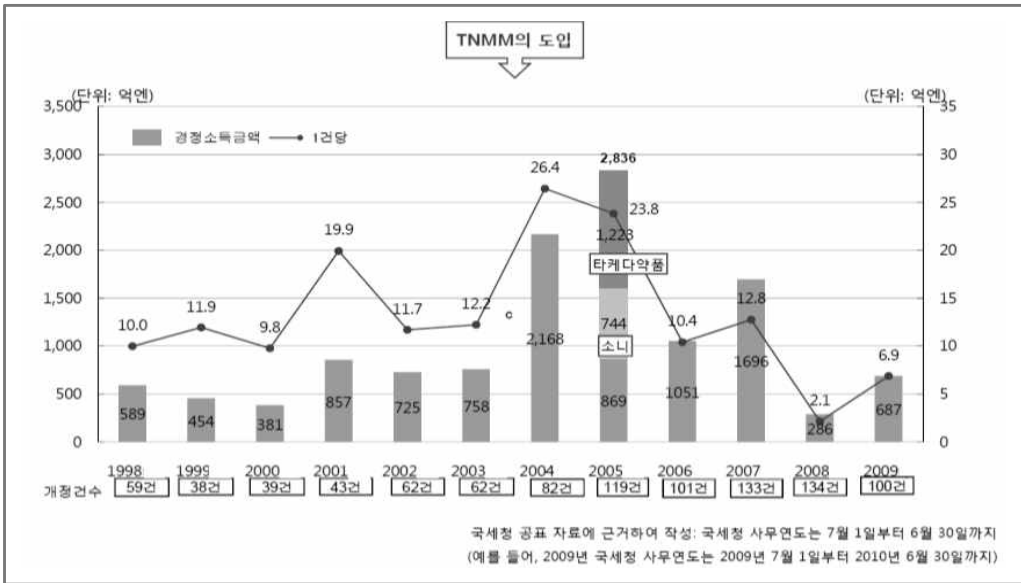
8 「事前確認の有無」には、「国外関連者との取引状況等」に記載した取引に係る独立企業間価格の算定の方法についての法人の納税地を所轄する国税局長若しくは税務署長又は当該法人に係る国外関連者の本店若しくは主たる事務所の所在する国の権限ある当局による確認の有無を記載します。

## 5 이전가격조사

### □ 이전가격조사 특징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이전가격과세에 따른 추징세액 및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금액적인 부담은 물론이며 이전가격조사에의 대응 및 과세 후의 상호 합의절차·이의신청절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 노력이 요구되며, 일반 법인세 조사의 시효가 5년임에 반해 이전가격조사의 시효는 6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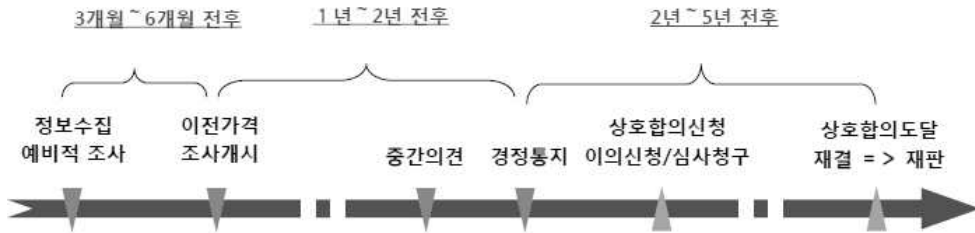
### □ 이전가격조사 현황



- (2005~2008) 도쿄, 나고야, 오사카 지역의 자동차와 전기기기 등의 분야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거래로는 로열티 및 역무제공에 대해 과세됨
- (2009 이후) 대기업의 무형자산거래에서 중소기업의 재고자산거래에 대한 과세로 점차 이동하는 경향임



## □ 이전가격조사의 과정



- 준비조사(서면조사) : 소득이전의 개연성 결정단계로 법인세 신고시 첨부되는 「국외관련자에 관한 명세서」 및 유가증권보고서 등 기타공개정보를 기반으로 준비조사를 수행, 비교대상거래에서 파생되는 수익률 등의 범위와 여러 연도를 감안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이전가격 조작의 혐의를 도출
- 본조사(현장조사) : 독립기업간가격 산정 단계로 이전가격 산정 방법의 결정 및 소득이전금액 산정을 위한 경제분석을 수행, 여러 연도의 연간 및 범위 개념은 사용되지 않으며 단지 해당 연도의 평균 수익률 등에 의해 소득이전금액을 산정
- 조사시 검사하는 서류 (이전가격사무운영요령 2-3, 2-4)

1	별표17(4) 「국외관련자에 관한 명세서」
2	법인 및 국외관련자별 자본관계 및 사업내용을 기재한 서류 · 법인 및 관련회사간의 자본 및 거래관계를 기재한 서류 · 법인 및 국외관련자의 연혁 및 주요 주주의 변천을 기재한 서류 · 법인에 있어서는 유가증권보고서 또는 계산서류 기타 사업내용을 기재한 서류, 국외관련자에 있어서는 그에 상당하는 서류 · 법인 및 국외관련자의 주된 취급품목 및 그 거래금액과 판매시장 및 그 규모를 기재한 서류 · 법인 및 국외관련자의 사업별 업적, 사업의 특색, 각 사업연도의 특이사항 등 그 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국외관련거래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조특법 시행규칙 제22조의10 제1항 제1호)



4	독립기업간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서류 (조특법 시행규칙 제22조의10 제1항 제2호)
5	기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및 국외관련자의 경리처리기준을 상세하게 기재한 서류</li> <li>· 외국세무당국에 의해 국외관련자에 대한 이천가격조사 또는 사전승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li> <li>· 이천가격세제에 상당하는 외국의 제도에 있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적정한 자료작성을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국외관련자가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서류</li> <li>·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li> </ul>

□ 추정과세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 4 제6항)

세무당국이 납세자(법인)에게 각 사업연도의 국외관련거래와 관련한 독립기업간가격을 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납세자가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세무당국은 조사대상 법인의 사업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규모와 기타 사업내용이 유사한 법인의 매출총이익율 또는 그에 준하는 비율을 사용하여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하여 이천가격과세를 할 수 있음

**6** 사전승인제도

□ 개요

- (의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천가격산정방법을 세무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는 제도
- (효과) 사전승인을 받은 법인이 사전승인 대상기간 동안 승인된 이천가격산정방법을 적용하고 사전승인의 중요한 전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받아 이천가격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음

일본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신청기한) 사전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연도 중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 (신청대상) 국외관련자의 소재지국별로 법인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
- (확인신청서 제출부수)
  - 조사과 소관법인 : 2부(상호협의를 요구시 1부 추가)
  - 조사과 소관법인 이외의 법인 : 3부(상호협의를 요구시 1부 추가)
- (확인대상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에서 5개 사업연도로 함
- (사전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독립기업간가격의 산정방법 등의 확인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신청서에 대상기간, 국외관련자, 확인대상 거래, 독립기업간가격의 산정방법 등 기재

1	사전승인대상거래 및 당해 사전승인대상거래를 하는 조직 등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2	사전승인을 요구하려고 하는 독립기업간가격의 산정방법 등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을 기재한 서류
3	사전승인대상거래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업상 또는 경제상의 제조조건에 관한 자료
4	사전승인대상거래의 거래 및 자금 흐름, 사전승인대상거래에 사용된 통화의 종류 등 사전승인대상거래의 상세내용을 기재한 자료
5	사전승인대상거래와 관련한 국외관련자와 사전승인신청법인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자본관계 또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관한 자료
6	사전승인대상거래에 있어서 사전승인신청법인 및 당해 국외관련자가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자료
7	사전승인신청법인 및 당해 국외관련자의 과거 3개 사업연도분의 영업 및 경리상황 기타사업내용을 명확히 한 자료
8	당해 국외관련자에 대해 그 소재지국에서 이전가격과 관련한 조사, 불복신청, 소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요 및 과거의 과세상황을 기재한 자료
9	사전승인신청과 관련한 독립기업간가격의 산정방법 등을 사전승인대상 사업연도 전 3개 사업연도에 적용한 경우의 결과 등 사전승인신청법인이 신청한 독립기업간가격의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10	기타 사전승인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 일본어로 번역된 서류를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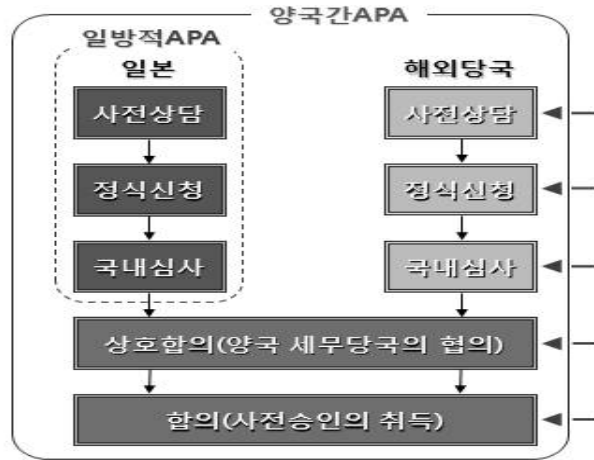


□ 사전승인절차

사전상담	⇨ 국 담당과로 요청/청 담당과 참가 (상호합의 수반 상담은 청 상호협의실도 참가)  (법인이 제시 또는 제출한 자료내에서 상담) - 사전승인신청서 첨부자료의 작성요령 - 사전승인신청서 등 제출기한 - 사전승인절차에 필요한 사항 - 상담대상법인의 국외관련거래내용 파악 여부
정식신청	⇨ 「독립기업간가격의 산정방법 등의 확인에 관한 신청서」를 세무서 법인과세부문에 접수하여 담당과로 서류 이송 - 국세청 과세부 법인과세과 - 국세청 조사사찰부 조사과 - 청 상호협의실
사전승인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 담당과 심사 / 청 담당과 참가</li> <li>· 추가자료제출요구 가능</li> <li>· 독립기업간가격의 산정방법 등이 비합리적인 경우 신청의 수정 요구 (국내심사 대응)</li> </ul>
상호합의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합의신청서 제출(양국 세무당국 상호합의)</li> </ul>
협 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담당과 또는 청담당과, 청상호협의실과 연락 및 협의 (상호합의 대응)</li> </ul>
사전승인심사결과 통 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 세무서장 통지</li> <li>· 「독립기업간가격의 산정방법 등의 확인통지서」</li> <li>· 「독립기업간가격의 산정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의 통지서」</li> </ul>
보고서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승인사업연도의 확정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제출(사전승인에 대한 사후관리)</li> </ul>
사전승인 취소	⇨ (사전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독립기업간가격의 산정방법 등을 확인취소통지서」

□ 사전승인의 유형

- 일방적 APA
- 양국간 APA



□ 사전승인의 효과

사전승인을 받은 국외관련거래는 독립기업간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하며, 사전승인시에 이미 경과한 사전승인대상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전승인대상사업연도와 관련한 신고를 사전승인 내용과 적합하게 하기 위해 사전승인법인이 제출한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사전상담 및 사전승인담당 부서 (일본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 사전승인 및 사전상담 FAQ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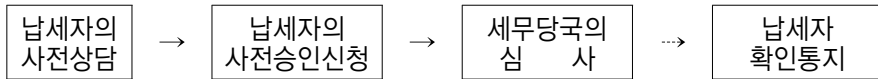
사전승인(APA)

(Q) 사전승인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A) 일반 APA 와 쌍방 APA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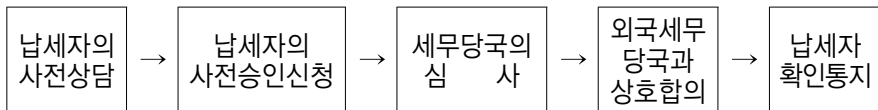
(1) 일반 APA

일본 세무당국이 상대국 세무당국과의 상호합의 없이 독립기업간가격 산정방법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처리기간은 쌍방 APA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국외관련자에 대한 상대국 세무당국의 이전가격과세 위험까지 방지되지 않는다.



(2) 쌍방 APA

일본의 세무당국과 상대국 세무당국 간에 상호합의를 통해 독립기업간 가격 산정방법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상대국 세무당국에 의한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쌍방 APA에 대한 신청이 많습니다.



(Q) 국외관련 거래규모가 작고, 이전가격과세위험이 작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사전승인을 받는 것은 이전가격과세 위험의 제거 및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만, 다른 서류작성 등을 위한 사무 및 비용 등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이전가격과세 위험이 작다고 생각된다면 사전승인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사전승인신청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A) 사전승인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년도 중 첫 번째 사업년도 개시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사전승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문서를 준비함에 있어 세무사 등에 의존해야 합니까?

(A) 사전승인신고서 및 제출문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독립기업간가격 산정 방법 등을 기재한 자료 작성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전상담 시 국세청 담당자가 설명하겠지만, 준비·작성의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 등 전문적인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전승인(APA)

(Q) 사전승인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사전승인심사는 국세청의 심사담당자가 실제로 회사나 사업소에 방문하여 독립기업간가격 산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경청합니다. 이때 미리 사전승인신고서 첨부문서(「사전승인신청시 제출서류」 참조) 및 이외의 다양한 데이터 및 분석자료의 제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이해 및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Q) 사전승인심사에서 포인트는 어떤 항목입니까?

(A) 사전승인심사는 개별 신청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독립기업간가격 산정방법 및 검증 대상 법인
- 사전승인대상거래의 범위 및 거래단위
- 비교대상기업의 선정 및 차이 조정
- 이익분할요인 결정 및 측정
- 수익률 등의 범위와 보상조정
- 중요한 전제 조건

(Q) 사전승인심사를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전승인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일본만의 사전승인인지 또는 국가간 상호 협의를 통한 사전승인인지, 신규 또는 갱신 신청인지, 내용의 복잡성과 납세자의 자료 제출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외국세무당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따르면 1인당 처리 기간은 평균 2년 정도입니다. 납세자분들의 이해를 구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자료의 조기 제출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Q) 사전승인 후 따로 보고하는게 있나요?

(A) 사전승인통지를 받은 후에는 확인을 받은 각 사업연도의 확정신고서의 제출 기한 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미리 정한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전승인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신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
- 사전승인거래와 관련한 사전승인법인 및 당해 국외관련자의 손익
- 중요한 전제조건의 변동 여부에 대한 설명
- 사전승인거래의 결과가 사전승인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가격조정에 대한 설명
- 사전승인 사업연도와 관련한 사전승인법인 및 당해 국외관련자의 재무상황
- 기타 사전승인법인이 사전승인의 내용에 적합하게 신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참고가 될 사항

### 사전승인(APA)

- (Q) 확정신고 내용이 사전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A) 사전승인대상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내용이 해당 사전승인내용과 부합하지 않고 사전승인대상거래에 관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관서의 지적 이전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수정신고에 관하여는 국세통칙법 제65조(과소신고가산세) 제5항에 규정하는 「경정이 있을 것을 예지하고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전승인대상거래에 대한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부담세액은 납부가 필요하며, 사전승인대상거래 이외의 거래에 대한 수정신고는 가산세 등 추가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Q) 사전상담은 개인도 할 수 있습니까?
- (A) 이진가격세제는 「법인」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전상담을 할 수 있는 것도 「법인」입니다.
- (Q) 사전상담은 어떤 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A) 국외관련거래를 하면서 그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 (Q) 사전상담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A) 사전상담에 대한 기한 등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승인 신청시 독립기업간 가격의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시간을 고려할 때 가능한 빨리 사전상담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 또한 사전상담은 원칙적으로 예약제로 하고 있으므로,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관할 국세청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Q) 사전상담시 준비해야 할 문서는 무엇입니까?
- (A) 사전상담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예를 들면 사전승인대상거래 및 사전승인대상법인의 개요, 국외관련자와의 자본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두십시오. 또한 문서 중 외국어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전상담은 제공해주신 문서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내용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 「사전승인신청서 제출서류」를 참조하여 준비



사전승인(APA)

- (Q) 사전상담 내용은 공개됩니까?
- (A) 사전상담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또한 상담·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통한 익명의 사전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익명상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사전상담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확인대상거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Q) 사전상담을 한 경우 반드시 사전승인신청을 해야 합니까?
- (A) 사전승인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어디까지나 납세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전상담을 하였다고 반드시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Q) 사전상담을 한 경우, 세무조사는 실시되지 않습니까?
- (A) 세무당국과 사전상담을 하였다고 해도, 이전가격에 관한 세무조사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전상담 시 제출된 자료(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외)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조사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 (Q) 사전상담이나 사전승인심사는 어느 부서가 담당합니까?
- (A) 사전상담은 원칙적으로 국세국 심사담당부서 및 국세청 상담과의 담당자가 대응하고, 상호협의를 수반하는 사전승인의 경우는 국세청 상호협의를 담당자가 추가됩니다.
- (Q) 사전상담 및 사전승인심사시 수수료가 있습니까?
- (A) 일본에서는 사전상담 및 사전승인심사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호협의를 사전승인에 대해 상대 국가에서 수수료가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 (Q) 사전조회(Advance Ruling)절차와 이전가격세제상의 사전상담 및 사전승인 절차는 어떻게 다릅니까?
- (A) 사전조회절차는 납세자로부터 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거래 등에 관한 세무상 취급」에 관해 문서로 회신을 요구하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문서에 의해 회답함과 동시에 다른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의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그 조회 및 회답내용 등을 공표하는 납세자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전조회에 대한 문서 회답 등에 대해서」를 참조바랍니다.  
반면에,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사전승인 및 이에 관한 사전상담은 개별성·비밀성이 매우 높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조회절차와는 다른 절차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사전승인 관련 서식

様式 2

独立企業間価格の算定方法等の確認に関する申出書

受付印		※整理番号			
平成 年 月 日		※連結グループ整理番号			
国税局長 税務署長 殿	申出法人	(フリガナ)			
		法人名			
	<input type="checkbox"/>	納税地		〒 電話( ) -	
	□ □ 連結親法人	(フリガナ)			
		代表者氏名		印	
	(フリガナ)				
	責任者氏名				
	事業種目		資本金	百万円	
租税特別措置法第66条の4第2項又は第68条の38第2項に定める独立企業間価格の算定方法、その具体的内容等について、次のとおり確認を受けたいので申出をします。 申出の後、添付した資料のほかに審査のために必要な資料の提出を求められた場合には、速やかに提出します。					
(申出の対象が連結子法人である場合) 連 結 子 法 人	(フリガナ)		整理番号		
	法人名		※ 税 務 署 処 理 欄		部門
	本店又は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				決算期
	(フリガナ)				業種番号
	代表者氏名				整理簿
	責任者氏名				回付先
事業種目		<input type="checkbox"/> 親署⇒子署 <input type="checkbox"/> 子署⇒親署			
資本金		百万円			
国 外 関 連 者	名 称		税 理 士 署 名 押 印		
	本店又は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				
	代 表 者 氏 名				
	事 業 種 目				
確認対象(連結)事業年度		平成 年 月 日 平成 年 月 日 自 (連結) 事業年度 至 (連結) 事業年度 平成 年 月 日 平成 年 月 日			
確認対象国外関連取引					
独立企業間価格の算定方法					
相互協議の希望の有無		有・無	相手国名		
確認対象(連結)事業年度前の各(連結)事業年度への適用の希望の有無		有・無	確認対象(連結)事業年度	平成 年 月 日 平成 年 月 日 自 至 平成 年 月 日 平成 年 月 日	
(その他特記事項)					

(注) 各欄に記載できない場合には、適宜の用紙に記載して添付して下さい。

※ 税 務 署 処 理 欄	部門	決算期	業種番号	整理簿	備考
---------------	----	-----	------	-----	----

## 일본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独立企業間価格の算定方法等の確認に関する申出書の記載要領

- この申出書は、独立企業間価格の算定方法等の確認に関する申出をする場合に使用します。
- この申出書は、正本及び副本2部（相互協議を求める場合には、副本3部）を納税地の所轄税務署長に提出しますが、連結子法人の国外関連取引に係る申出については、当該連結子法人の連結親法人がその納税地の所轄税務署長に提出して下さい。確認の対象となる取引（以下「確認対象取引」といいます。）に係る連結子法人が複数ある場合や国外関連者が複数でその所在する国が異なる場合には、その連結子法人ごと、その国ごとに提出して下さい。  
なお、申出法人が調査課所管法人である場合には、正本及び副本1部（相互協議を求める場合には、副本2部）をその納税地の所轄国税局長に提出して下さい。
- 各欄の記載は、次によります。
  - 「申出法人」欄には、連結申告法人以外の法人（単体法人）がその国外関連取引に係る申出を行う場合には「 単体法人」にレ印を付した上、その法人（単体法人）に関する事項を記載して下さい。  
また、連結親法人が自己の国外関連取引に係る申出を行う場合又はその連結子法人の国外関連取引に係る申出を行う場合には「 連結親法人」にレ印を付した上、その連結親法人に関する事項を記載して下さい。
  - 「連結子法人」欄には、連結子法人の国外関連取引に係る申出である場合のみ記載し、それ以外の場合は記載不要です。記載を要する場合は、その連結子法人の名称、その本店又は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代表者氏名、国外関連者の名称等、当該連結子法人に関する事項を記載して下さい。
  - 申出法人、連結子法人又は国外関連者の各「事業種目」欄には、それぞれの者が営む事業の種目を記載し、一の者が複数の事業を営む場合には、主たる事業の種目を記載して下さい。
  - 「確認対象（連結）事業年度」欄には、確認の対象とすべき事業年度又は連結事業年度を記載して下さい。
  - 「確認対象国外関連取引」欄には、棚卸資産の売買、役務提供、有形固定資産の使用、無形固定資産の使用、貸付金その他確認を受けようとする取引の種類及び取引対象品目、役務の内容、貸付金の内容等を記載して下さい。
  - 「独立企業間価格の算定方法」欄には、租税特別措置法第66条の4第2項又は第68条の88第2項に規定する独立企業間価格の算定方法のうち、採用しようとするいずれかの算定方法の名称を記載して下さい。
  - 「税理士署名押印」欄には、この申出書を税理士が作成した場合は、その税理士が署名押印して下さい。
- この申出書には、次に掲げる資料のほか、確認にあたり必要と認められる資料を必ず添付して下さい。
  - 確認対象取引及び当該確認対象取引を行う組織等の概要
  - 確認を求めようとする独立企業間価格の算定方法及びそれが最も合理的であることの説明
  - 確認を行い、かつ、確認を継続する上で前提となる重要な事業上又は経済上の諸条件
  - 確認対象取引における取引及び資金の流れ、確認対象取引に使用される通貨の種類等確認対象取引の詳細
  - 審査対象法人（事前確認の対象となる取引を行う法人をいいます。以下同じ。）とその国外関連者との間の直接若しくは間接の資本関係又は実質的支配関係
  - 確認対象取引において審査対象法人及びその国外関連者が果たす機能
  - 審査対象法人及びその国外関連者の過去3事業年度分（又は連結事業年度分）の営業及び経理の状況その他事業の内容に関する資料（確認対象取引が新規事業又は新規製品に係るものであり、過去3事業年度分（又は連結事業年度分）の資料を提出できない場合には、将来の事業計画、事業予測の資料等これに代替するもの）
  - 国外関連者について、その所在地国で移転価格に係る調査、不服申立て、訴訟等が行われている場合には、その概要及び過去の課税状況
  - 申出に係る独立企業間価格の算定方法等を確認対象（連結）事業年度前3（連結）事業年度に適用した場合の結果等、申し出た独立企業間価格の算定方法等を具体的に説明するために必要な資料

# VI

## 기타 국제조세 분야

1. 외국세액공제제도 .....	84
2. 과소자본세제 .....	85
3. 외국자회사 합산세제 .....	86
4. 과대지불이자 세제 .....	88
5. 상호합의 .....	90
6. 2014년 국제조세분야 개정내용 .....	97
7. 2015년 국제조세분야 개정내용 .....	102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국제적 이중과세 배 제	외국세액공제제도	법인세법 제69조
국가간 과세권 배 분	비거주자·외국법인과세	법인세법 제9조, 제138조~제147조
	이전가격세제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4
	과소자본세제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5
	외국자회사 합산과세제도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6
	과대지불이자 세제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5의2
국제적 이중과세 회 피	상호합의	한일조세조약 제25조

## 1 외국세액공제제도

- (의의) 일본의 내국법인은 전(全)세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될 경우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중복·경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계산 시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함
- (종류)

구 분	분 류 기 준
직접세액공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스스로 직접 납부한 외국세액을 공제함
간접세액공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세액을 공제
간주세액공제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해 조약상대국에서 특별히 감면되어진 세액을 공제함



## 2 과소자본세제 (국외지배주주 등과 관련된 부채의 이자과세특례)

### □ 도입배경

- 해외모회사의 차입금을 늘려 일본 내 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

### □ 내용

- (의의) 국외지배주주 등에 대한 차입금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
- (적용대상) 다음 중 하나가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함

1	국외지배주주등 <sup>11)</sup> 과 관련된 부채·자본비율
	$\frac{\text{국외지배주주등에 대한 평균부채잔액} + \text{자금공여자등에 대한 평균부채잔액}}{\text{국외지배주주등의 그 내국법인에 대한 자본비율}}$
2	법인전체의 부채·자본비율
	$\frac{\text{법인의 총이자부 부채와 관련된 평균부채잔액}}{\text{자기자본금액}}$

- (산정방법)

1	기준평균부채잔액이 국외지배주주등의 지분의 3배이하인 경우
	$\frac{\text{과세소득에 대한 보증료등}}{\text{보증료등}} \times \frac{\text{평균부채잔액 초과액}}{\text{국내자금공여자등에 대한 평균부채잔액}}$
2	기준평균부채잔액이 국외지배주주등의 지분의 3배초과인 경우(a + b)
	<p>a = 과세대상소득에 관한 보증료등</p> <p>국외지배주주등 및 자금공여자등에 대한 부채과 관련된 이자등의 금액 - (a)</p> <p>b = <math display="block">\frac{\text{평균부채잔액 초과액} - \text{국내의 자금공여자등에 대한 평균부채잔액}}{\text{국외지배주주등 및 자금공여자 등에 대한 평균부채잔액} - \text{국내의 자금공여자등에 대한 평균부채잔액}}</math></p>

11) 국외지배주주 등이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를 말함

### 3 외국자회사 합산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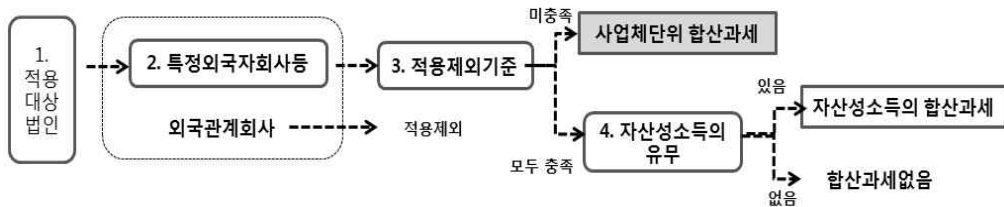
(내국법인의 특정외국자회사 등과 관련된 소득의 과세특례)

#### □ 도입배경

- 저세율 과세국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

#### □ 내용

- 일본내 세부담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과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 중 주식의 직접·간접 소유비율에 따라 일본 법인의 소득에 합산하는 제도
- 적용판정흐름도



- 단계별 판단기준

**(1단계) 적용대상법인 여부**  
 외국관계회사의 발행완료주식 등의 10% 이상을 직접 및 간접으로 보유하는 내국법인 또는 하나의 동족주주그룹에 속하는 내국법인인지 여부 판단

**(2단계) 특정외국자회사 등 여부**  
 내국법인 및 거주자가 그 발행완료주식 등의 50%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외국관계회사)으로서 경과세국<sup>12)</sup>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인지 여부 판단

12)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 또는 각 사업년도의 조세부담비율이 20%이하인 국가



(3단계) 아래의 적용제외기준 충족 여부(①,②,③,④ 또는 ①,②,③,⑤ 충족)

구 분	내 용
① 사업기준	주식·채권의 보유, 공업소유권·저작권 등의 제공, 선박·항공기의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실체기준	본점 또는 주된 사업소가 소재하는 국가나 지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소, 점포, 공장 또는 고정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관리지배기준	본점 또는 주된 사업소가 소재하는 국가나 지역에서 사업의 관리, 지배 및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을 것
④ 비관련자기준	도매업, 은행업, 신탁업, 증권업, 보험업, 수운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주로 하며 특정외국자회사의 관련자 외의 자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
⑤ 소재지국기준	위 비관련자 기준이 적용되는 7개 업종 이외의 사업을 주로 하여 본점 소재지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3-1단계) 적용제외기준 미충족시 → 사업체단위합산과세

(4단계) 자산성소득의 유무

적용제외기준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자산성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관련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주주인 내국법인 등의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 '자산성 소득' 의 범위

- 보유비율 10% 미만의 주식 등의 배당
- 채권의 이자
- 채권의 상환차익
- 보유비율 10% 미만의 주식 등의 양도차익(일정시장에서의 양도에 한함)
- 채권의 양도차익(일정시장에서의 양도에 한함)
- 특허권 등의 사용료(그 특정외국자회사 등이 스스로 행한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특허권 등을 제외)
- 선박 또는 항공기의 대부 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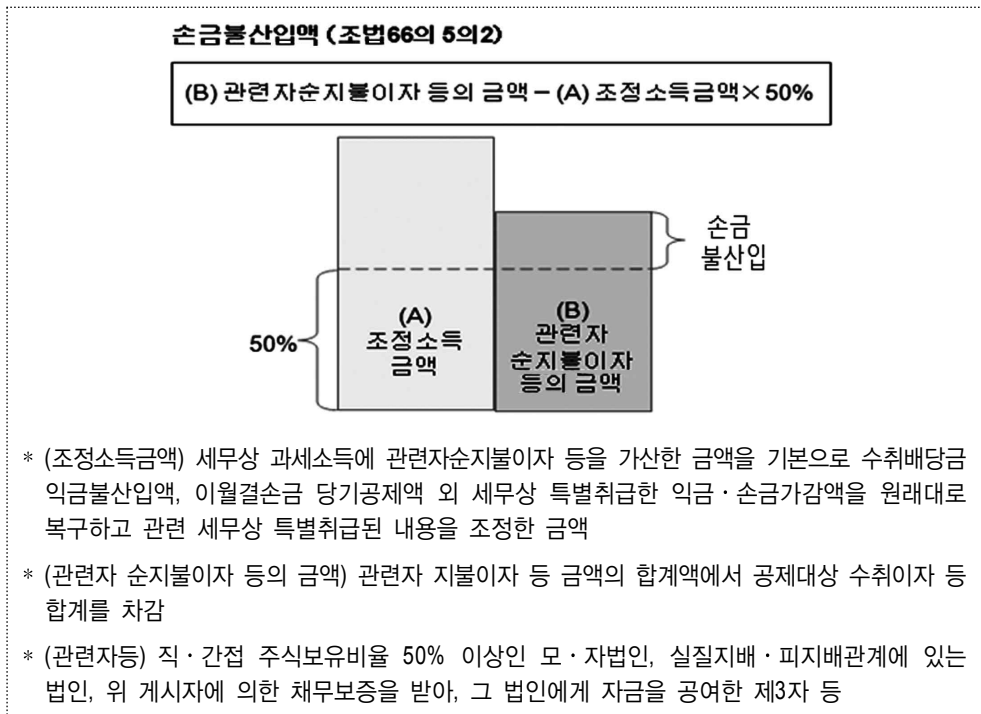
## 4 과대지불이자 세제

### □ 도입 배경

- 지불이자 손금에 산입되는 점을 이용하여 지불이자를 과다하게 손금 계상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
- 이전가격세제(과다이윤 제한) 및 과소자본세제(자본대비 과다 부채제한) 보완책으로 소득대비 과다지불이자 제한 필요성 증대

### □ 내용

-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관련자 지불이자 금액이 조정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의 손금 불산입
  - 초과이자는 차기연도 이후 손금산입 가능(7년 한도)



## ○ (적용제외 기준)

- 사업연도별 관련자 순지불이자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관련자 지불이자 금액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지불이자 금액 합계액의 50% 이하인 경우

## ○ (적용시기) '13.4.1 이후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연도부터 적용

## □ 기타 제도와의 조정

## ○ 과소자본세제

- 과다지불이자세제 계산금액 < 과소자본세제 계산금액  
⇒ 과소자본세제만 적용
- 과다지불이자세제 계산금액 > 과소자본세제 계산금액  
⇒ 과다지불이자세제만 적용

## ○ 외국자회사합산세제(조세피난처세제)

- 과다지불이자세제에 의한 손금불산입액에서 외국자회사합산세제에 의한 합산소득 상당 금액을 공제하는 일정한 조정조항 규정
  - \* 외국자회사에게 지불한 이자는 외국자회사합산세제의 적용으로 내국법인 합산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고 과다지불이자세제가 적용됨에 따라 지불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이 제한되므로 외국자회사에 지불한 이자금액이 결과적으로 이중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5 상호합의

### □ 개요

- (의의) 국제적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해 조세 조약 체결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에 협의하는 것
- (대상) 이전가격과세, 사전승인(APA), 원천소득에 의한 이중과세, 거주자 판정 등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
- (유형)
  - 거주자 및 내국법인 등의 신청에 의한 상호합의
  - 조약체결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신청에 의한 상호합의
  - 이미 합의된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취소, 재협의 등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의한 상호합의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일본 또는 상대국 과세 당국의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합의신청서</li> <li>- 경정통지서 등 당해 과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li> <li>- 당해 과세에 관한 사실관계 및 해당 세금에 대한 신청인 또는 국외관련인의 주장 개요를 기재한 서면</li> </ul>
일본 또는 상대국 과세 당국의 과세에 대한 불복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합의신청서</li> <li>- 경정통지서 등 당해 과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li> <li>- 당해 과세에 관한 사실관계 및 해당 세금에 대한 신청인 또는 국외관련인의 주장 개요를 기재한 서면</li> <li>- 불복 또는 소송의 취지와 신청인 또는 국외관련인의 주장 요약서와 항소신청서 또는 소장 사본</li> </ul>
일본 또는 상대국 과세 당국의 이전 가격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합의신청서</li> <li>- 경정통지서 등 당해 과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li> <li>- 당해 과세에 관한 사실관계 및 해당 세금에 대한 신청인 또는 국외관련인의 주장 개요를 기재한 서면</li> <li>-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또는 간접 자본 관계 또는 사실상 지배 관계 문서</li> </ul>



○ (담당부서)

담당부서	구 분	내 용
국 세 청 상호협의를실	개별사안	조세조약에 따라 일본과 체약상대국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재 무 성 주세(主稅)국	일 반 적 해석사항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참고 : 일본 상호합의운영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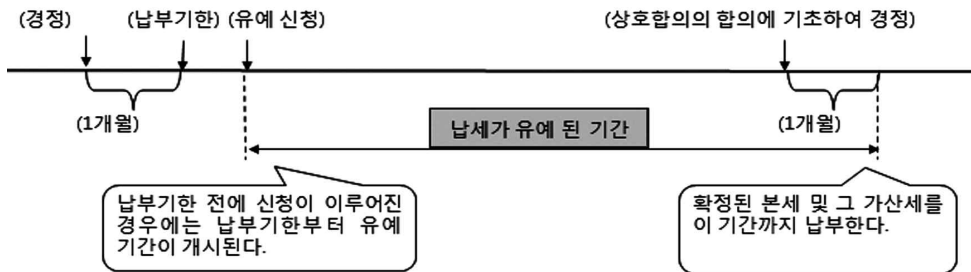
□ 상호합의 개시 및 결과 통지

- (개시)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상대국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개시되나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직권으로 요청하여 개시되는 경우도 있음
- (결과통지) 일본 국세청 상호협의를실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도달하면 신청인들에게 「상호협의를함에 대해」(별지양식 2)에 따라 합의 내용을 통지

□ 납세유예 등의 적용특례

- (적용대상자)
  - 이전가격의 경정 또는 결정을 받은 내국법인 중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상호합의를 신청한 자
  - 일본에서 이전가격의 경정 또는 결정을 받은 외국법인으로 외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국과 일본과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그 본점 소재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를 신청한 자

- (적용대상)
  - 이전가격의 경정 또는 결정 대상이 된 법인세(상호합의대상에 한함)와 그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 \* 해당 법인세 및 지방법인세 이외의 체납이 있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납세유예기간) 납부기한부터 상호합의 결과에 따른 경정일의 익일부터 1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 (담보제공)
  - 납세유예신청시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함
    - \* 납세유예금액이 5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담보 제공 면제

□ 상호합의의 중재 요청 (조세조약실시특례법성령 제12조)

- 조세조약에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어도 상호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재를 요청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중재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 중재요청서 기재사항
  - 요청서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소 혹은 거소 또는 명칭, 또는 본점 혹은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그 사업의 실질관리지배장소의 소재지)
  - 상호합의신청서의 제출년월일
  - 중재요청 대상사항 및 대상연도
  - 중재요청 대상사항에 대해 일본의 심사청구 또는 소송에 대한 재결 또는 판결(이하 「재결등」이라 함)이 없다는 뜻 및 당해 조세조약의 상대국 등의 재결 등에 상당하는 것이 없다는 뜻
  - 기타 참고가 될 만한 사항

## □ 참고사항

### 한일조세조약

#### 제25조 【상호합의】 [1999.11.22]

1. 어느 인이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는 체약국의 국내법이 규정한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동 사안이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동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도달된 합의는 체약국 국내법상의 시한에 불구하고 시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의 전항들이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상호합의신청서

別紙様式 1

相互協議申立書

※ 整理番号	
※ 連結グループ整理番号	

平成 年 月 日  国税庁長官 殿	申立法人	(フリガナ)		
	□ □ 連 単	法人名又は氏名		印
		納 税 地	〒 - ( 局 署)	
	結 体	(フリガナ)		
		法人の代表者氏名		印
法 人 人	(フリガナ)			
	責任者氏名	(役職名)		
	電話 ( ) - (内線 )			
	事 業 種 目		資 本 金	百万円

租税条約の規定に基づき、権限ある当局間の相互協議を申し立てます。

連 結 子 法 人	(フリガナ) 法 人 名		
	本店又は主たる 事務所の所在地	〒 - ( 局 署)	
	(フリガナ) 代 表 者 氏 名		
	責 任 者 氏 名	(役職名)	
	事 業 種 目	電話 ( ) -	

相互協議申立ての理由 事前確認 我が国課税 相手国等課税 (課税年月日: 西暦 年 月 日) その他

相互協議の相手国等

国 外 関 連 者	名 称	
	本 店 所 在 地	
	申立ての対象となる 取引等を有する 国内の者との関係	
	相手国等での相互協議申立ての有無	<input type="checkbox"/> 有 (西暦 年 月 日) <input type="checkbox"/> 無

申立ての対象となる所得金額等

(連結) 事業年度 (年分)	円による表示 (我が国課税及び相手国等課税の場合)		相手国通貨による表示 (相手国課税の場合)	
	所得金額	税額	所得金額	税額
西暦 年 月 日 ~ 年 月 日	百万円	百万円	通貨単位	通貨単位
・				
・				
合 計				

租税特別措置法第 66 条の4の2《国外関連者との取引に係る課税の特例に係る納税の猶予》第1項又は第 68 条の 88 の2《連結法人の国外関連者との取引に係る課税の特例に係る納税の猶予》第1項に規定する納税の猶予の希望の有無	<input type="checkbox"/> 有 <input type="checkbox"/> 無
---	---

地方税法第 55 条の 2《租税条約に基づく申立てが行われた場合における法人の道府県民税の徴収猶予》第 1 項等に規定する徴収猶予の希望の有無	<input type="checkbox"/> 有 <input type="checkbox"/> 無
---	---



(次葉)

(申立ての対象となる事実の概要及び申立ての理由等)

(添付書類)

(連結子法人又は国外関連者が複数ある場合の追加記入欄)

連 結 子 法 人	(フリガナ) 法人名		
	本店又は主たる 事務所の所在地	〒 -	( 局 署)
	(フリガナ) 代表者氏名		
	責任者氏名	(役職名) 電話 ( ) -	
国 外 関 連 者	事業種目		
	名称		
	本店所在地		
	申立ての対象となる取 引等を有する国内の者 との関係		
相手国等での相互協議申立ての有無		<input type="checkbox"/> 有 (西暦 年 月 日)	<input type="checkbox"/> 無

(注) 各欄に記載できない場合には、適宜の用紙に記載して添付してください。

税理士署名押印		印
---------	--	---

※相互協議室処理欄	整理番号		備考	
-----------	------	--	----	--



## 일본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相互協議申立書の記載要領等

1 この申立書は、租税条約の規定に基づき、租税条約等の実施に伴う所得税法、法人税法及び地方税法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関する省令(昭和44年大蔵省令第1号)以下、「租税条約等実施特例省令」といいます。第12条《租税条約の規定に適合しない課税に対する申立て等の手続》第1項若しくは第4項若しくは第13条《双方居住者の取扱いに係る協議に関する申立ての手続》又は遺産、相続及び贈与に対する租税に関する二重課税の回避及び脱税の防止のための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条約の実施に伴う相続税法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関する省令(昭和44年大蔵省令第36号)以下、「相続税法等実施特例省令」といいます。第3条《二重課税に関する申立ての手続》第1項の規定に従って、我が国の居住者、内国法人、日本国籍を有する非居住者又は相続税法に規定する相続税又は贈与税の納税義務者が、我が国の権限ある当局と外国の権限ある当局との相互協議の申立てを行うときに使用します。

2 相互協議の申立てに当たっては、この申立書及び添付資料各1部を、国税庁相互協議室に提出してください。

3 各欄の記載は次によります。

- (1) 「申立法人」欄は、申立者が法人である場合のみ、「連結親法人」又は「単体法人」のいずれか一つを選択し、「レ」印等を記載してください。連結法人に係る申立人は「連結親法人」となります。
- (2) 「責任者氏名」欄は、この申立てに係る責任者の氏名、役職名及び電話番号を記載してください。
- (3) 申立ての対象となる取引の当事者が「連結子法人」であるときには、「連結子法人」欄に、当該連結子法人の本店又は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法人名等を記載してください。

「連結法人」と「申立法人」との関係は、以下の通りとなります。「連結子法人」が複数ある場合には、次葉に記載してください。

相互協議の理由	対象取引の当事者	「申立法人」欄	「連結子法人」欄
課税・事前確認	連結親法人	連結親法人	記載不要
	連結子法人		要記載

(4) 「国外関連者」欄には、この申立てが移転価格課税又は事前確認に係るものである場合に当該移転価格課税又は事前確認に係る国外関連者について記載してください。「国外関連者」が複数ある場合には、次葉に記載してください。

(5) 「申立ての対象となる所得金額等」欄は、我が国又は相手国等における課税により増加した所得金額及び税額(その事業が源泉徴収に関するものである場合には、源泉徴収対象金額及び税額、以下同じ。)を(連結)事業年度(年分)ごとに区分して記載してください。

なお、源泉所得税額については金額の頭部に「(源)」と表示してください。

(注) この申立てが相手国等における課税に係るものである場合には、その課税により増加する所得金額及び税額を(連結)事業年度終了の日(個人にあっては、その年の12月31日)における外国為替銀行の対顧客直物電信売相場と対顧客直物電信買相場の仲値(以下「電信売買相場の仲値」といいます。)により円換算し、その円換算額を相手国等通貨による金額と併せて記載してください。

(6) 相互協議の申立てが、我が国における移転価格課税に起因している場合、当該移転価格課税により納付すべき法人税の額(当該相互協議の申立てに係る相手国等の権限ある当局との相互協議の対象となるものに限り、)及び当該法人税の額に係る加算税の額に係る納税の猶予申請についての希望の有無を記載してください。(なお、納税の猶予申請を行うに当たっては、別途、「納税の猶予申請書」等を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

また、地方税法第55条の2第1項等に規定する徴収猶予の申請についての希望の有無も記載してください(一つの税目でも徴収猶予の申請を希望する場合には「有」に「レ」印等を記載してください。なお、当該徴収猶予の申請を行うに当たっては、別途、申請書等を都道府県・市区町村に提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

(7) (次葉)の「申立ての対象となる事実の概要及び申立ての理由等」欄には、この申立ての対象となる事実、申立ての理由を、また「連結子法人」又は「国外関連者」が複数ある場合の追加記入欄には連結子法人又は「国外関連者」が複数ある場合に記載してください。

4 この申立書には次の資料を添付してください。なお、国税庁相互協議室は、次に掲げる資料以外にも相互協議の実施のために必要と認められる資料の提出を求むることがあります。

- (1) 申立てが我が国又は相手国等における課税に係るものである場合には、更正通知書等当該課税の事実を証する書類の写し、当該課税に係る事実関係の詳細及び当該課税に対する申立書又はその国外関連者の主張の概要を記載した書面(課税に至っていない場合には、課税を受けるに至ると認められる事情の詳細及び当該事情に対する申立者又はその国外関連者の主張の概要を記載した書面)
- (2) 申立者又はその国外関連者が当該課税について不服申立て又は訴訟を行っている場合には、(1)に掲げる資料に加え、不服申立て又は訴訟を行っている旨及び申立者又はその国外関連者の主張の概要を記載した書面並びに不服申立書又は訴状の写し
- (3) 当該課税が移転価格課税に係るものである場合には、(1)に掲げる資料に加え、当該申立ての対象となる取引の当事者間の直接若しくは間接の資本関係又は実質的支配関係を示す資料
- (4) 申立てが租税条約等実施特例省令第13条《双方居住者の取扱いに係る協議に関する申立ての手続》に係るものであり、かつ、租税条約又はこれに付属する政府間の取決めに於いて相互協議を行うに当たり考慮すべき事項が定められている場合には、(1)に掲げる資料に加え、その定められている事項に関する資料
- (5) 申立者又はその国外関連者が相手国等の権限ある当局に相互協議の申立てを行っている場合には、その旨を証する書類の写し
- (6) その他協議の参考となる資料

5 この申立書に添付する書類のうち外国語のものについては、日本語訳を添付してください。

6 国税庁相互協議室への連絡

- (1) この申立書又は添付書類その他の提出資料に誤り又は重要な変更があった場合には、遅滞なく国税庁相互協議室に連絡してください。
- (2) 相手国等における課税処分、不服審査又は事前確認審査の進捗状況等については、遅滞なく国税庁相互協議室に連絡してください。

7 その他

- (1) 国税庁相互協議室では、相互協議の申立てについての事前相談に応じています(連絡先: 相互協議第一係: 03-3581-5451(代表))。
- (2) 相互協議は、平成13年6月25日付官協1-39他7課共同「相互協議の手続について」(事務運営指針)により行われています。この事務運営指針は、国税庁相互協議室で入手でき、また、国税庁のホームページ(<http://www.mta.go.jp/>)でも閲覧できます。

6

## 2014년 국제조세분야 개정내용



## □ 국제과세원칙의 귀속주의 개정 포인트

\* 동 개정은, 2016년4월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및 2017년 이후 소득세에 대해 적용함

## ○ 외국법인등에 대한 과세

## - 총괄주의에서 귀속주의로 이행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에 대한 과세원칙에 대해, 종래의 이른바 「총괄주의」를 개정하여, OECD모델조세조약 신7조의 입장, (Authorised OECD Approach ; AOA)에 근거하여 「귀속주의」에 맞는 국내법 규정을 개정

## - 항구적시설(PE) 귀속소득의 정의

외국법인 등에 대해서는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하는 현행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외국법인 등이 일본에 가진 PE에 귀속하는 소득(PE귀속소득)을,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정의

## - PE귀속소득의 산정

① PE귀속소득 : AOA에 근거하여, 그 PE가 본점 등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으로 의제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소득

## ② 내부거래

PE귀속소득 산정은, AOA에 근거하여, PE와 본점 등과의 내부거래에 대해,(이전가격세제와 같이) 독립기업간가격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의제하여 내부거래손익을 인식

## ③ PE에의 자본 배부·PE의 지급이자 공제 제한

PE가 본점등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이라고 의제한 경우에 필요할 정도의 자본을 PE에 배부. 또, PE가 지불한 부채이자 총액(내부이자를 포함)중, 그 PE에 배부된 자본에 대응한 부분에 대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제한함

## - 외국법인 등의 PE를 위한 외국세액공제제도를 창설

○ 내국법인등에 대한 과세

- 내국법인 및 거주자(내국법인 등)의 국외PE에 관한 외국세액공제  
 국외PE에 귀속하는 소득(국외PE귀속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정의함과  
 동시에, 국외PE귀속소득의 산정에 있어서는, 외국법인 등의 PE귀속  
 소득과 같이 내부거래 등을 인식하여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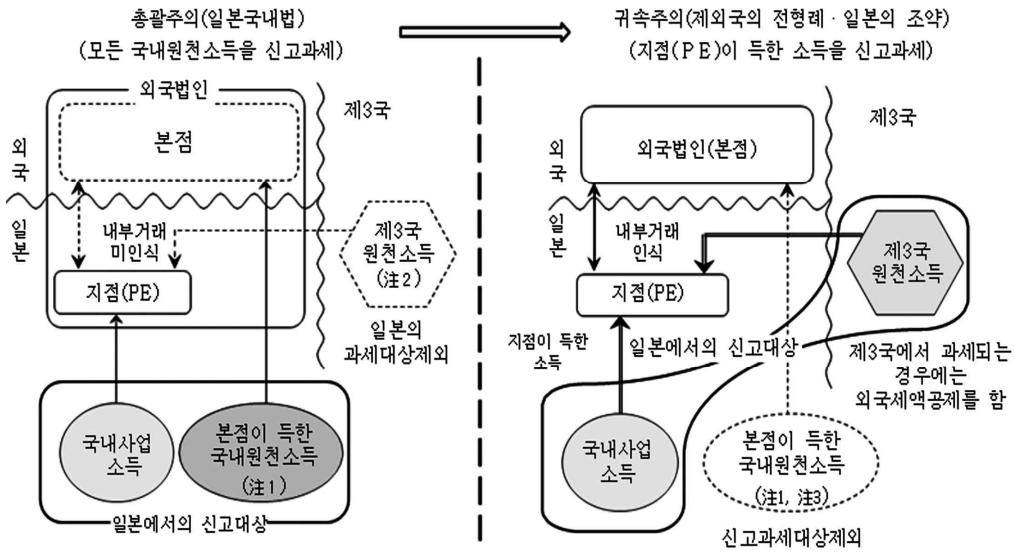
○ 기타

- 문서화  
 동일 법인격의 본점과 PE와의 내부거래는, 계약서 등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거래의 존부 및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 제시할 것을 필요로 함
- 기타 소요의 정비
  - ① 개인과세 : 비거주자(개인)과세는 원칙적으로 귀속주의로 변경하는  
 외국법인에 준하여 취급하고, 거주자(개인)의 외국세액공제에 대해  
 서도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에 준하여 취급함
  - ② 기타 소요의 정비를 함

□ 지점을 위한 외국세액공제제도 창설

- 외국법인 등의 지점(PE)이 얻은 소득은, 지점(PE)가 본점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기업이었다고 한 경우에 얻어지는 소득으로 함과 동시에, 본점과  
 지점(PE)과의 내부거래를 인식
- 지점(PE)이 제3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일본과 제3국의 양국에서 과세  
 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한 경우, 그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 새롭게 지점  
 (PE)을 위한 외국세액공제제도를 창설

○ 이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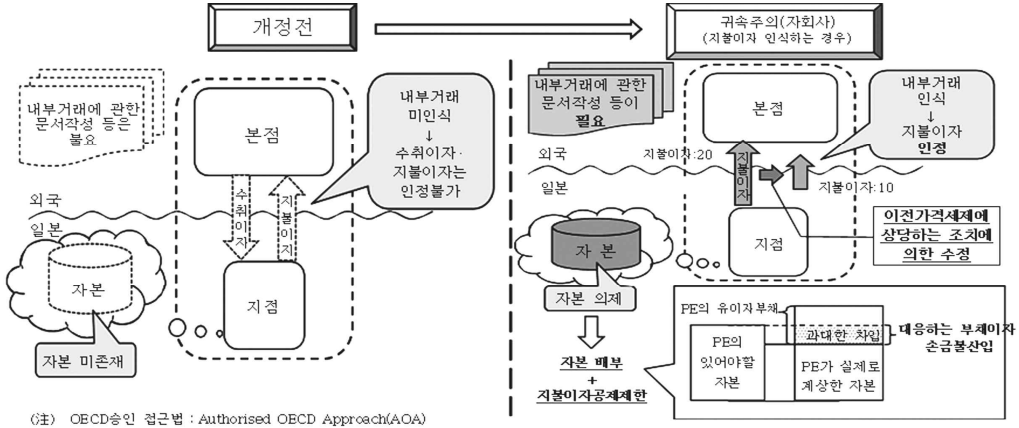
- (注1) 본점이 지점(PE)을 개입하지 않고 행한 직접투자등
- (注2) 지점(PE)이 행한 국외투융자로 제3국에서 과세되고 있는 것
- (注3)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과세관계 종료됨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과세의 새로운 방안 (OECD승인 접근법)

- 법인격이 동일한 본점과 지점(PE)를, 각각의 법인인 모회사와 자회사로 간주하고, 양국간 과세권을 배분
- 또한, 지점(PE)의 과세가액 산정은, 자회사였다고 하더라도 분리·독립한 기업이라고 한 경우에 거래되는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하고, 본점과 지점(PE) 간의 내부거래에 관한 손익을 인식
- 분리·독립한 기업으로서 지점(PE)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기능을 기록한 서류 및 자회사라면 필요로 했을 계약서·영수증 등에 대해, 문서를 작성·제시할 것을 필요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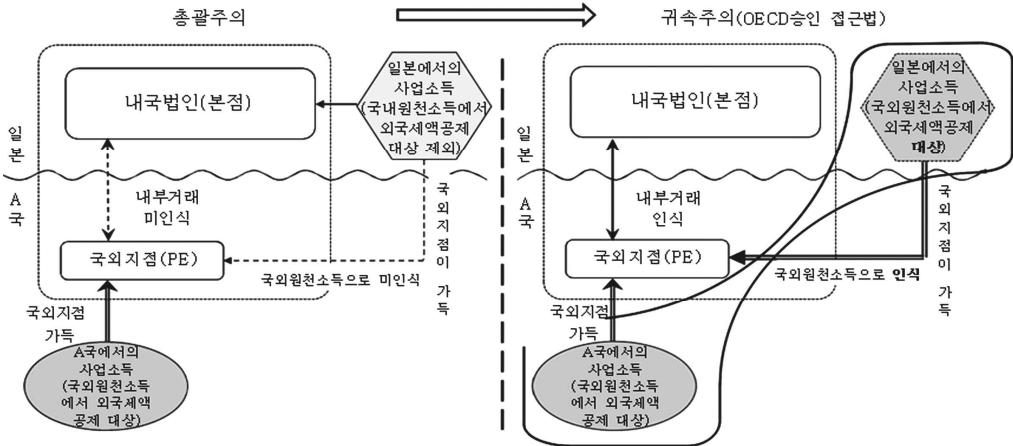
일본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이해흐름도



□ 내국법인에 대한 외국세액공제

- 본점과 지점(PE)이 합하여 외국에서 득한 소득(국외원천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를 일본의 법인세에서 공제
- 귀속주의(OECD승인접근법, Authorised OECD Approach ; AOA)로의 이행에 따라, 외국법인에 대해 지점(PE)이 득한 소득을 산정하는 것과 함께, 내국법인의 국외지점(PE)이 득한 소득(국외PE귀속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인식
- 이해흐름도





□ 이전가격세제의 제3자 개입거래 대상범위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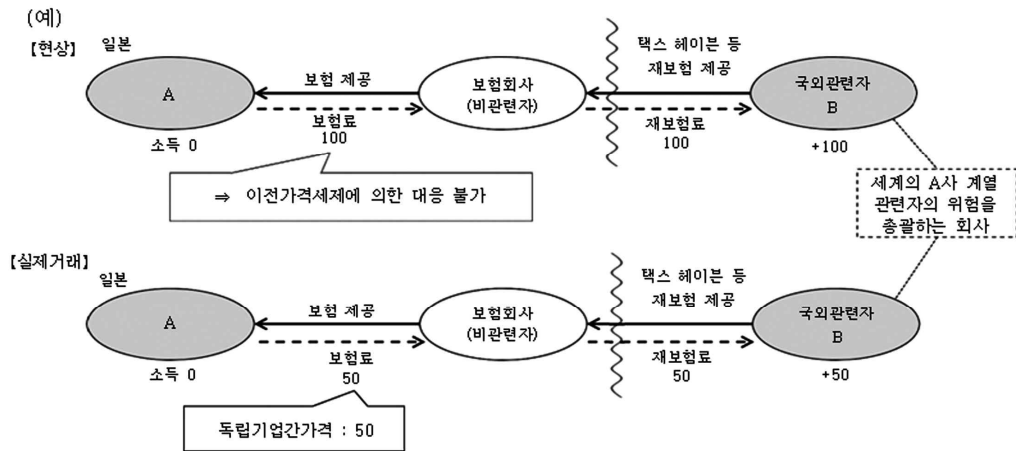
○ 개정전 문제점

국외관련자와의 역무거래(서비스)에서,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것에 의해,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  
(현행법상, 자산의 판매, 양도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

○ 개정내용

제3자를 개입시킨 금전의 대여·보험·신용보증이라는 역무거래(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이전가격세제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이전가격 세제의 적용이 가능하게 됨

○ 이해흐름도



## 7 2015년 국제조세분야 개정내용

### □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제도의 개정

- BEPS 프로젝트 권고에 입각하여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배당(예 : 호주의 우선주식등)에 대해서는 지분을 받은 일본 모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중비과세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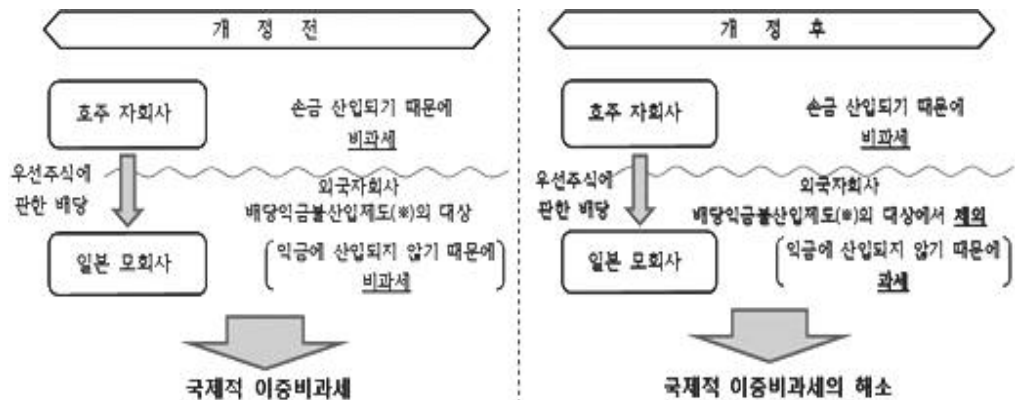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세원잠식과 이익이전

#### ○ 적용관계

- 2016년 4월 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받은 배당(2016년 4월 1일에 보유하는 외국자회사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등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음

#### ○ 이해흐름도

#### 【호주 우선주식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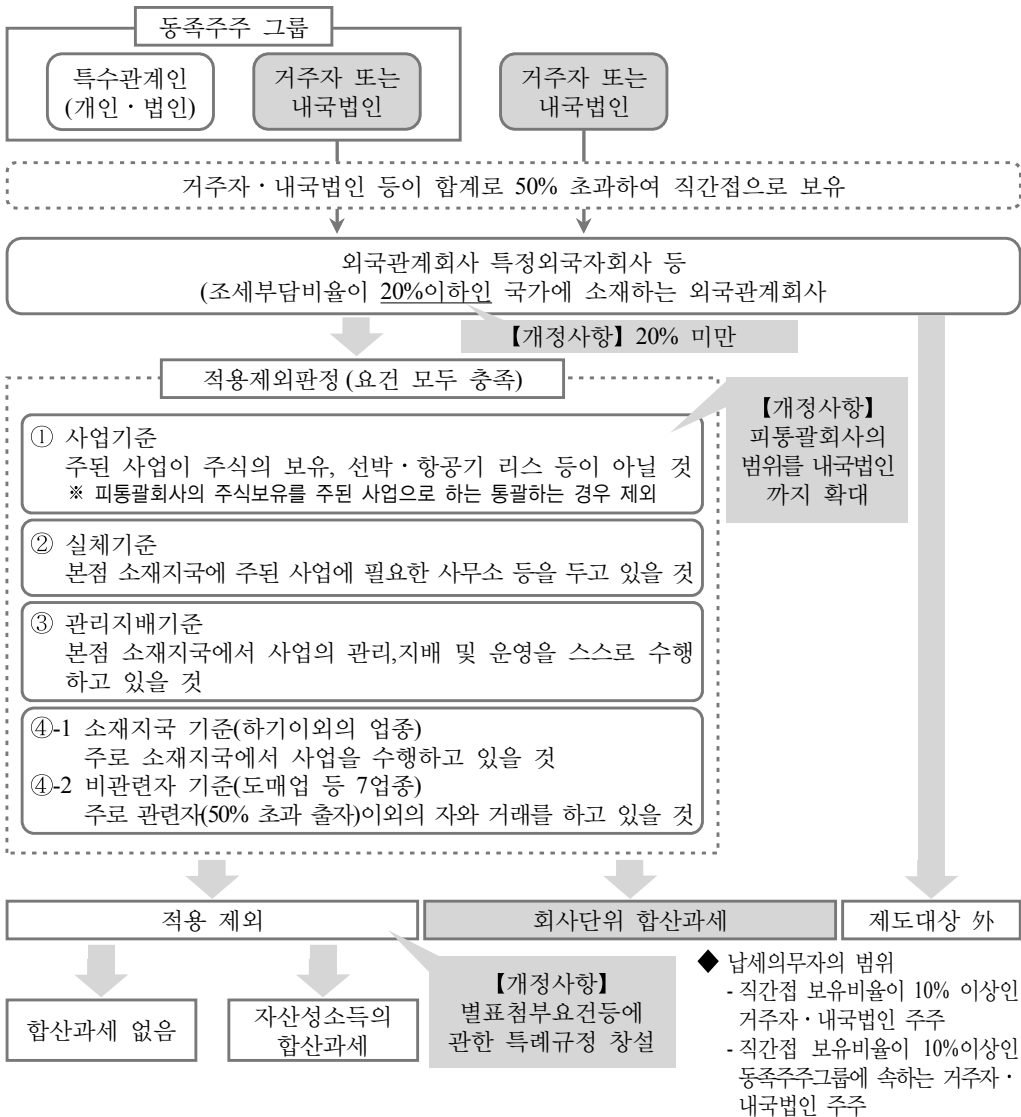
(※) 국제적인 이중비과세를 배제하기 위해, 외국자회사로부터 일본 모회사에게 지불 되는 배당(외국에서 법인세가 부과된 후의 이익에서 지불된다)에 대해서는 모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하지 않는 제도

(주 : 배당을 얻기위해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여 배당액의 95%를 익금불산입으로 한다)



### □ 외국자회사 합산세제의 개정

- 세부담 수준이 낮은(개정전 「20% 이하」) 외국자회사 등의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본 기업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 단, 일본자회사 등에 경제활동의 실체가 있고 적용제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본 세제는 적용되지 않음
- 이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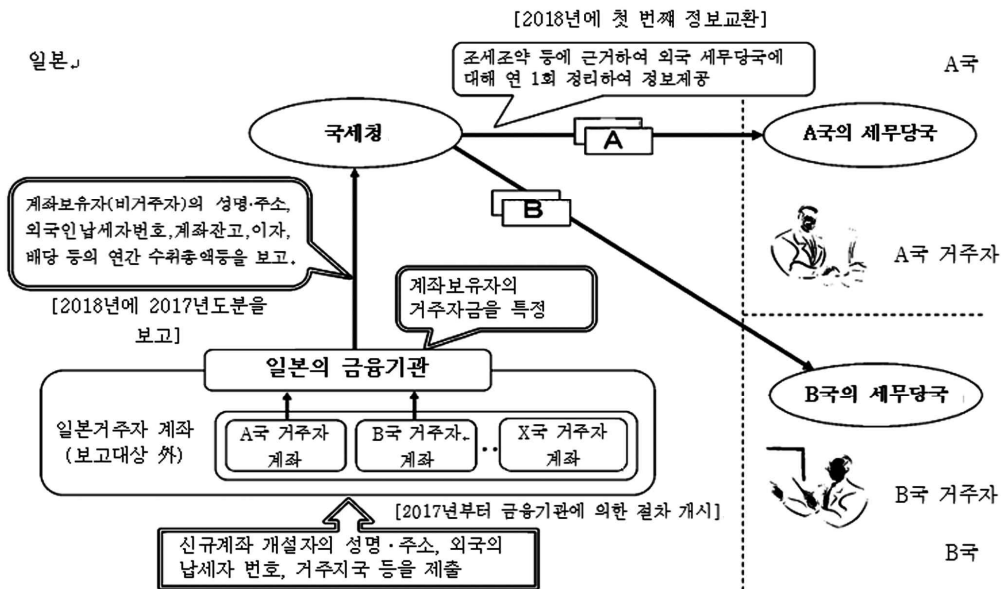


□ 비거주자에 관한 금융계좌정보의 자동적 교환을 위한 보고 제도의 정비

○ 내용

각국 세무당국 간에 비거주자의 계좌정보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것에 대해 G20 등에서 합의한 것에 따라 일본의 금융기관에 대해 비거주자의 계좌정보 보고를 요구하는 제도를 정비

○ 이해흐름도(일본에서 외국으로의 정보제공 이미지)



# VII

## 조세제도의 대강 및 권리구제 절차

1. 일반현황 .....	106
2.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	111
3.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	117
4. 소비세(부가가치세) .....	120
5. 상속세 .....	121
6. 증여세 .....	122
7. 기타 주요 세금(지방세) .....	123
8. 세무조사 .....	124
9. 권리구제 절차 .....	127
10. 2015년 세법개정 주요 내용 .....	129



# 1 일반현황



## □ 조세구조

구 분	국 세	지 방 세
소득에 관한 세금	소득세 (원천징수세, 개인신고소득세) 법인세	도부현민세 사업세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	상속세 증여세	
재산에 대한 세금	지가세(당분간 정지) 자동차중량세	자동차세 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경자동차세, 택지개발세
소비와 관련된 세금	소비세, 주세, 휘발유세, 석유석탄세, 석유가스세 담배세, 지방도로세, 항공기연료세,	지방소비세, 도부현담배세 시정촌담배세, 입욕세 골프장이용세, 경유인수세
거래에 관한 세금	인지세, 등록면허세, 관세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취득세
기타 세금		광구세, 광산세

\* 지방세 중 음영부분은 도도부현민세(道都府縣民稅)이며 비음영부분은 시정촌민세(市町村民稅)임

## □ 일본의 세무행정 조직

- (국세) 국세의 부과 및 징수는 재무성의 외청(外廳)인 국세청에서 담당하며 국세청은 국세청 본청과 전국에 11개의 국세국, 오키나와국세사무소, 524개의 세무서로 구성
  - 조세불복은 국세불복심판소에서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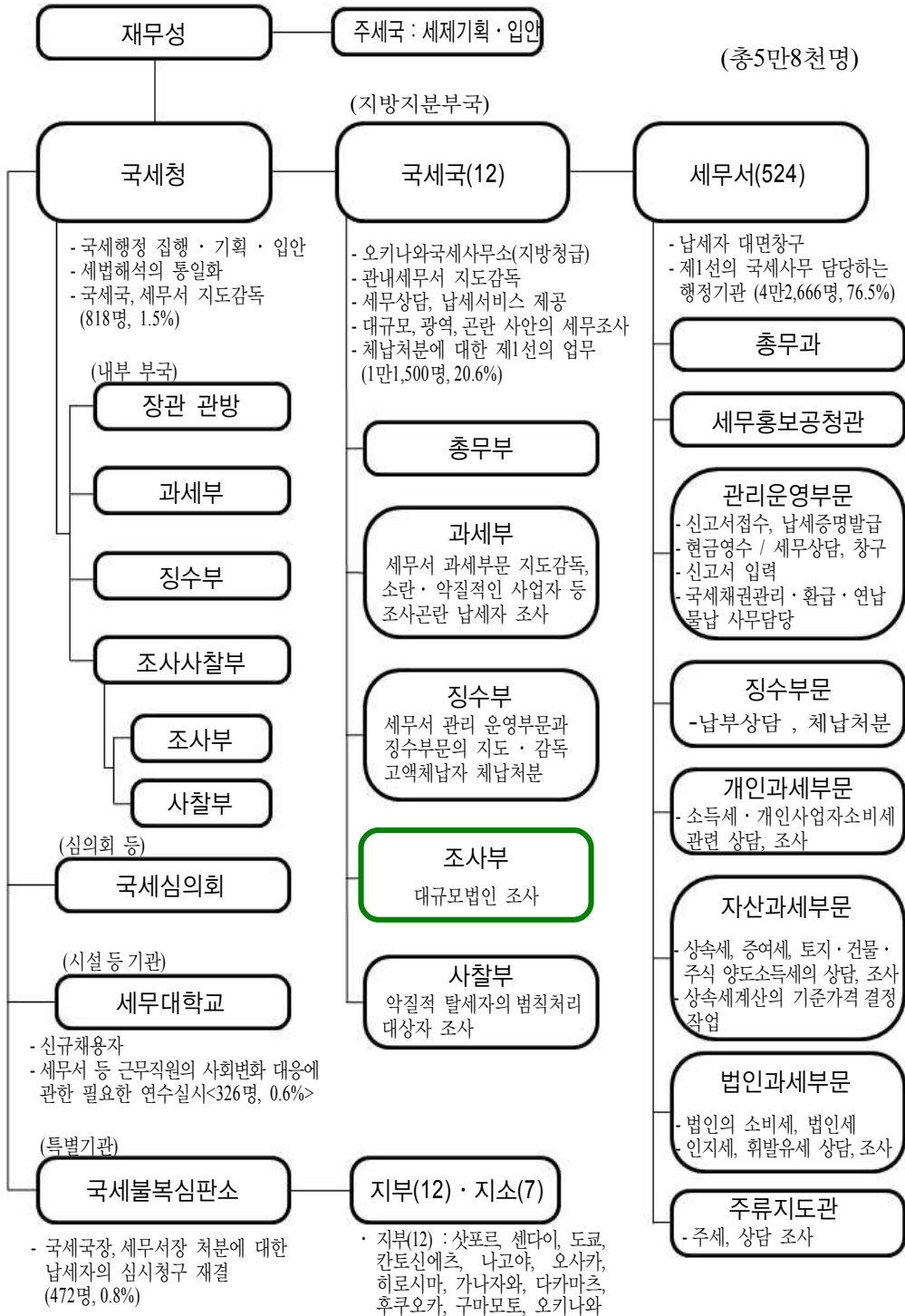


○ (지방세)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독자적인 조직으로 구성

○ 일본 국세청의 조직

국세청	국세국 오키나와 국세사무소 (11국 1소)	세무서 (524개서)	총무과	세무서 사무의 총괄
			세무홍보공청관	조세교육, 홍보, 공청총괄
			관리운영부문	조세채권의 관리, 납세증명서 발행 등
			징수부문	체납정리 등
			개인과세부문	신고소득세, 소비세(개인사업자) 등의 상담과 조사
			자산과세부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신고) 등의 상담과 조사
			법인과세부문	법인세, 소비세(법인), 원천소득세, 인지세 등의 상담과 조사
			주류지도관	주세의 상담과 조사
세무대학교	세무직원의 교육 및 훈련 (본교와 전국 12개 지방연구소 등)			
국세불복 심판소	불복심사 (본부와 전국 12개 지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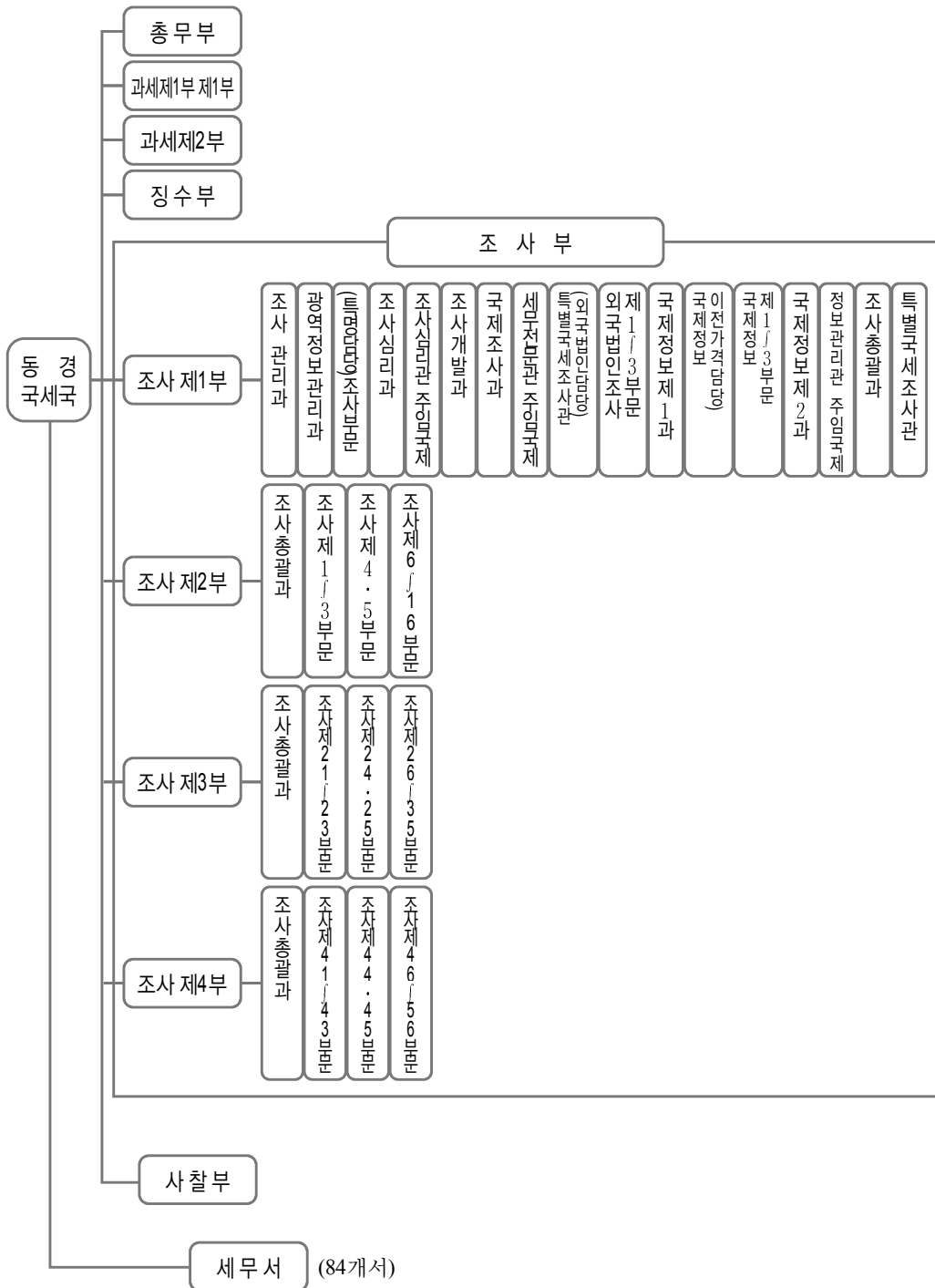
- 국세조직의 기구 (2015년 7월10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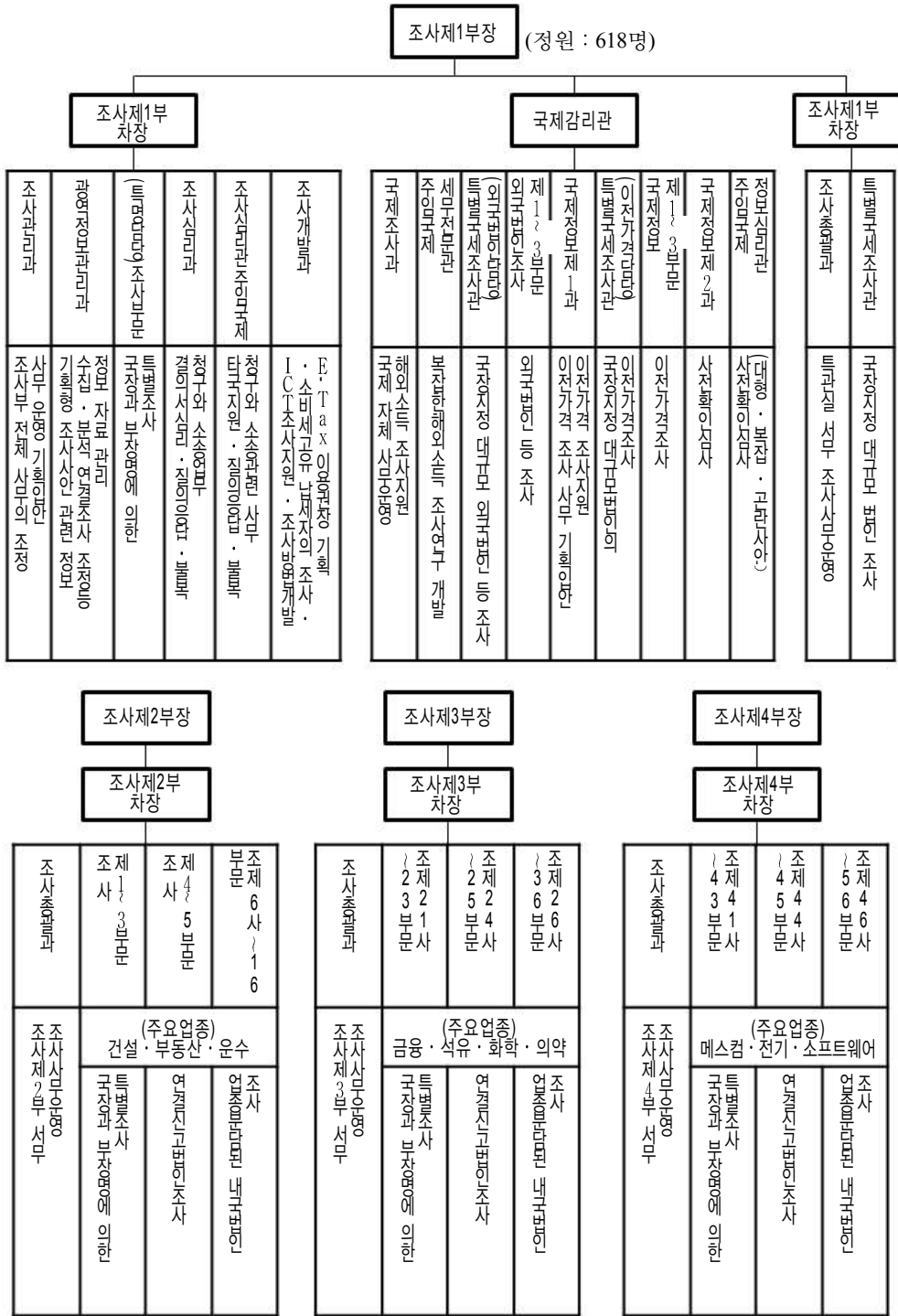


- 동경국세국의 조직

(2015년 7월10일 현재)



- 조사부의 조직 (동경국세국)





## 2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 □ 법인세

#### ○ 납세의무자

구 분		과 세 대 상
영리법인	일본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갖는 법인(내국법인)	전세계 모든 소득
	내국법인 이외의 법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경우	수익사업소득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경우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

○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확정 신고·납부

#### ○ 법인소득금액의 계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금액
- 일반적으로 발생주의와 같은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나 세무상 손금산입을 위하여 기업 경리시 손금처리를 필요로 하는 항목과 세무상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항목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금처리 필요항목 : 감가상각비, 각종 충당금과 준비금</li> <li>· 손금산입 제한항목 : 접대비, 기부금, 손금불산입 세금 등</li> </ul>
--



- 법인세법상 소득과 기업회계상 이익과의 관계

항 목	기업회계	법인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취배당</li> <li>· 자산평가익</li> <li>· 환부금</li> </ul>	수 익	익금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액으로부터 공제하는 외국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li> <li>· 내국법인에 관계되는 특정외국자회사 등의 유보금액</li> </ul>	비수익	익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가상각초과액</li> <li>· 자산평가손</li> <li>· 과대한 임원 보수나 임원상여금, 과대한 임원퇴직금 및 직원급여</li> <li>· 기부금 및 교제비</li> <li>· 법인세액</li> <li>· 해외모회사 등에 지불하는 일정이자</li> </ul>	비 용	손금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특별상각(상각한도의 증액)</li> <li>· 압축기장에 의한 압축액</li> <li>· 이월결손금</li> <li>· 특정기금에 의한 부담금</li> <li>· 각종 준비금</li> <li>· 협동조합 등의 사업분량배당</li> <li>· 해외와의 기술거래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소득공제 등의 특별공제</li> </ul>	비 용 불인정	손금산입

(출처 : 川上尙貴 編著(2008), 「圖說日本の税制」 p.123)

- 결손금의 이월 및 소급공제

- **(결손금의 이월)** 각 사업연도 결손금액은 9년간 이월 가능. 다만, 결손발생 사업연도에 청색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연속해서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
  - \* 자본금 1억엔 초과 또는 5억엔 이상 대기업의 100% 자회사는 소득금액의 80% 한도 내에서 이월결손 적용
-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 등 일정법인에 대해서는 결손금 발생 사업년도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로 그 결손금을 소급하고 소급한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을 인정



○ 법인세율

- 과세소득 금액 구간별로 누진세율 적용
- 세율 : '15.4.1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구 분	800만엔 이하	800만엔 초과
법인세율	15.0%	23.9%

□ 법인주민세 (지방세)

○ 납세의무자

구 분		납 세 의 무 자
법 인 주민세	법인세할	도도부현·시정촌 내에 사무소·사업소가 있고 법인과 세신탁의 인수업무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개인
	균등할	도도부현·시정촌 내에 기숙사는 있지만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없는 법인
	법인세할 균등할	도도부현·시정촌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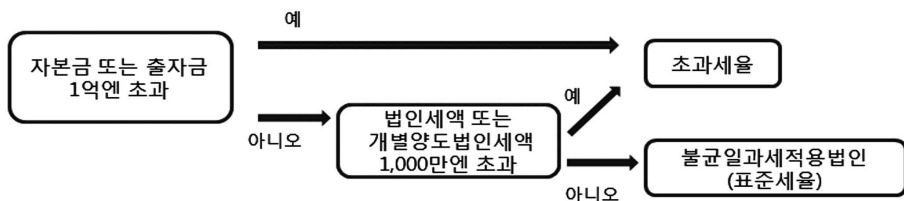
① 법인주민세 법인세할

- 계산방법 : 법인세액 × 세율
- 세율 : '14.10.1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구 분	불균일과세 적용법인 (표준세율)	초과세율
도도부현 주민세	12.9%	16.3%
구시정촌 주민세	3.2%	4.2%

※ 도쿄도의 경우를 예시함

- 초과세율 적용 판정기준



② 법인주민세 균등할

자 본 금		종업원수	법인주민세 (균등할 과세분)
50억엔 초과		50인 초과	¥3,800,000
		50인 이하	¥1,210,000
10억엔 초과	50억엔 이하	50인 초과	¥2,290,000
		50인 이하	¥950,000
1억엔 초과	10억엔 이하	50인 초과	¥530,000
		50인 이하	¥290,000
1천만엔 초과	1억엔 이하	50인 초과	¥200,000
		50인 이하	¥180,000
	1천만엔 이하	50인 초과	¥140,000
		50인 이하	¥70,000

□ 지방법인세

○ 계산방법 : 법인세액 × 세율(4.4%)

※ 2014.10.1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신설)

□ 법인에 대한 사업세 (지방세)

○ 납세의무자

- 영리·비영리법인을 불문하고 일본 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법인
- 단, 임업, 광물의 채굴사업, 특정 농사조합법인이 행하는 농업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세가 과세되지 않음



○ 과세대상 및 세율

법인의종류		소득의구분		세 율		
				불균일과세 (표준세율)	초과 세율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	일반 법인, 공익법인 등 법인격없는 사단 등	경감세율 적 용	년 400만엔 이하	3.4	3.65	
			년 400만엔 초과 년 800만엔 이하	5.1	5.465	
			년 800만엔 초과	6.7	7.18	
		경감세율 부적용		6.7	7.18	
	특별법인	경감세율 적 용	년 400만엔 이하	3.4	3.65	
			년 400만엔 초과	4.6	4.93	
경감세율 부적용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	전기·가스공급업 또는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수입금액		0.9	0.965	
외형표준 과세법인	자본금의 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1억엔 이상인 일반법인	소 득 할	경감 세율 적용	년 400만엔 이하	2.2	2.39
				년 400만엔 초과 년 800만엔 이하	3.2	3.475
				년 800만엔 초과	4.3	4.66
		경감세율 부적용		4.3	4.66	
		부가가치할		-	0.504	
		자 본 할		-	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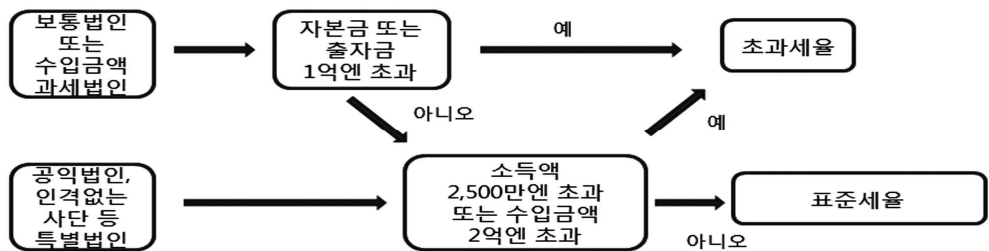
※ 2014.10.1~2015.3.31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적용

※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준세율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 경감세율 판정기준



○ 초과세율 판정기준



□ 지방법인특별세

○ 납세의무자

- 영리·비영리법인을 불문하고 일본 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법인

○ 계산방법 : 법인사업세액 × 세율

○ 세율

과세표준	법인종류	15.4.1~ 16.3.31	14.10.1~ 15.3.31	08.10.1~ 14.9.30
기준법인 소득할	외형표준과세법인 외 법인	43.2%	43.2%	81.0%
	외형표준과세법인	93.5%	67.4%	148.0%
기준법인수입할		43.2%	43.2%	81.0



### 3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 소득세

○ 납세의무자

구 분	과세대상
거 주 자	국내원천소득 및 국외원천소득
비영주자	국내원천소득 및 국외원천소득 중 일본국내에서 지불되었거나 일본으로 송금된 것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종류	내 용	소득금액 계산방법
사업소득	상공업, 농업 등 사업으로 얻은 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
부 동 산 소 득	토지, 건물 등을 대여하여 얻은 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소득	예금·저금, 국채 등의 이자로 받은 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
배당소득	주식, 출자의 배당 등의 소득	수입금액 -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급여소득	급여, 임금, 보너스 등의 소득	수입금액 - 급여소득공제액
양도소득	토지, 건물, 골프회원권 등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	수입금액 - 매각자산의 취득비·양도비용 - 특별공제액(상한 50만엔)
일시소득	퀴즈상금, 생명보험계약 만기반환금 등 일시적 소득	수입금액 -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 특별공제액(상한 50만엔)
잡 소 득	지원금, 연금 등의 소득	수입금액 - 공적연금 등 공제액
	비영업대금의 이자 등 소득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산림소득	산림의 임목 등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특별공제액(상한 50만엔)
퇴직소득	퇴직수당, 일시지원금 등의 소득	(수입금액 - 퇴직소득공제액) × 1/2

<출처 : 川上尙貴 編著(2008), 「圖說日本の税制」 p.73, 75>

○ 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 항목

공제항목	공제받는 경우
사회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지출이 있는 경우
소규모기업공제 등 부금공제	소규모기업공제법의 공제계약 관련 부금 등의 지출이 있는 경우
생명보험료공제	생명보험료, 개인연금보험료, 간호의료보험료의 지출이 있는 경우
지진보험료	지진보험료의 지출이 있는 경우
과부, 홀아비공제	귀하가 과부 또는 홀아비인 경우
근로학생공제	귀하가 근로학생인 경우
장애인공제	귀하나 공제대상배우자, 부양친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공제	공제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소득금액 38만엔 이하)
배우자특별공제	공제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소득금액 38만엔 초과 76만엔 미만)
부양공제	만 16세 이상의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로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
기초공제	38만엔 공제(한국의 본인공제)
잡손공제	재해나 도난, 횡령에 의해 주택이나 가재 등에 손해를 입은 경우
의료비공제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기부금공제	국가, 지방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특정정치헌금 등이 있는 경우
급여소득공제	65만엔 공제

※ 주소 등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는 잡손공제, 기부금공제, 기초공제만 가능

○ 소득세율(산립소득 제외)

과세 총 소득금액	세 율	공 제 액
- 195만엔 이하	5%	-
195만엔 초과 330만엔 이하	10%	¥97,500
330만엔 초과 695만엔 이하	20%	¥427,500
695만엔 초과 900만엔 이하	23%	¥636,000
900만엔 초과 1,800만엔 이하	33%	¥1,536,000
1,800만엔 초과 4,000만엔 이하	40%	¥2,796,000
4,000만엔 초과 -	45%	¥4,796,000



○ 세액공제

공제항목	공제받는 경우
배당공제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신고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을 제외)
외국납부세액 공제	거주자의 국외발생소득에 대해 외국법령에 의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이중과세조정)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거주자가 일정한 신축주택이나 기존주택을 취득하거나 증·개축 등을 한 경우 또는 장애자·고령자를 위한 거주 개수공사, 단열개수공사 등 에너지절약 개수공사를 한 경우
정당 등 기부금 특별공제	특정의 정치헌금 중 정당이나 정치자금단체에 대한 것이 있는 경우
인정장기우량 주택신축 등 특별세액공제	인정장기우량주택의 신축 또는 신축으로 구입을 한 경우 (2009.6.4.~2013.12.31.일까지)
전자증명서 등 특별공제	본인의 전자증명 및 그 전자서명에 관련된 전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서 제출한 경우

○ 확정신고기간 : 다음해 2.16일부터 3.15일까지

□ 개인주민세 (개인소득에 대한 도도현민세와 시정촌민세)

○ 납세의무자 : 매년 1월 1일 현재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둔 자

구 분		납 세 의 무 자
개 인 주민세	균 등 할 소득 할	도도부현·시정촌 내에 주소를 둔 개인
	균 등 할	도도부현·시정촌 내에 주소는 없지만 사무소·사업소·가옥부지가 있는 개인

○ 세율

- 개인주민세 소득할

구 분	표준세율
도도부현 주민세(일률)	4%
구시정촌 주민세(일률)	6%

※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준세율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 개인주민세 균등할

구 분	종 전	2014년 ~ 2023년
도도부현 주민세	1인당 1,000엔	1인당 1,500엔
구시정촌 주민세	1인당 3,000엔	1인당 3,500엔

## 4 소비세(부가가치세)

○ 납세의무자

구 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거래	과세표준
국내거래	과세자산의 양도, 대부 및 용역을 제공한 개인 사업자 및 법인	과세자산의 양도, 대부 및 용역의 제공	거래가액
수입거래	과세화물을 보세구역에서 인수한 자	보세지역에서 인수되는 외국화물	외국화물 인수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

- (비과세) 토지의 양도 및 대여, 유가증권의 양도, 외국환 및 지불수단의 양도, 대부, 환전, 의료 및 사회복지사업자산의 양도, 주택의 양도 등
- (면 세) 수출거래, 국제통신, 국제운수 등 수출과 유사한 거래

○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특 레
1.1~12.31	해당 사업연도	* 1개월 및 3개월 단위 신고가능

○ 세율 : 8% (지방소비세 포함)

○ 납부세액의 계산

- 과세매출액에 대한 소비세액 - 과세매입액에 대한 소비세액



- 신고기한 : 과세기간의 말일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 참고사항

구 분	납부의무 면제와 과세기준	비 고
개인사업자	전전년의 과세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	당해년은 면제
	전전년의 과세매출액이 1,000만엔 초과	당해년은 과세
법인사업자	전전사업년도 과세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	당기는 면제
	전전사업년도 과세매출액이 1,000만엔 초과	당기는 과세

- ※ 사업연도는 1년을 말함
- ※ 과세매출액이 5,000만엔 이하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제도 선택 가능

## 5 상속세

- 납세의무자

구 분	과세대상
일본에 주소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상속재산 소재지를 불문
일본에 주소가 없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일본에 있는 재산으로 제한

- (예외) 일본에 주소를 두지 않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일본 국적을 가진 경우로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의 어느 시기에든 상속인 혹은 수유자 또는 해당 피상속인이 일본에 주소를 둔 적이 있을 때는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전부가 일본 상속세 대상이 됨

- 상속세 과세가액

$$\text{과세가액} = (\text{상속재산가액} + \text{간주상속재산가액}) - \text{비과세재산가액} - \text{피상속인의 장식비용} - \text{피상속인의 승계채무}$$

- 기초공제액 : 3,000만엔 + 600만엔 × 법정상속인 수
- 세율 : 각 상속인의 취득금액에 10%~50%의 초과누진세율
-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10개월 이내

## 6 증여세

### ○ 납세의무자

구 분	과세대상
일본에 주소가 있는 수증자(개인)	증여로 취득한 재산 전부
일본에 주소가 없는 수증자(개인)	일본에 있는 재산으로 제한

- (예외) 증여를 받은 시점에 일본에 주소를 두지 않은 수증자가 일본 국적을 보유하였으며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의 어느 기간에 수증자 또는 증여자가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던 적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 전부가 증여세 대상이 됨

### ○ 기초공제액 : 110만엔

- (예외) 20년 이상 혼인한 배우자가 거주용 부동산 또는 이를 구입하기 위한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2,000만엔 한도로 공제 가능

### ○ 세율 : 과세가격에 10% ~ 50%의 초과누진세율

### ○ 신고기간 : 증여를 받은 해의 다음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7 기타 주요 세금(지방세)

### □ 고정자산세

- 토지, 건물 및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에 있어 매년 1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고정자산이 소재하는 시정촌에서 부과
- 연간 세율은 평가액의 1.4%

### □ 도시계획세

- 고정자산세의 부가세로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건물에 대해 부과
- 연간 세율은 고정자산세 평가액의 0.3%

### □ 사업소세

- 도쿄, 오사카 등의 대도시 사업자에 대해서 바닥면적이 1,000㎡를 초과하거나,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부과
  - 자산 할 : 연면적 1㎡당 600엔(면세점 1,000㎡)
  - 종업원 할 : 종업원 급여총액 × 0.25%(면세점 100명)

### □ 등록면허세

- 부동산이나 회사의 등기, 특정한 영업면허 등을 받을 때에 부과

## 8 세무조사

### □ 조사업무 체계

#### ○ 법인세 조사

조사난이도	절차(목적)	납세자규모	담당부서
대규모악질탈세	강제조사(형사소추)	전 부	국세국 사찰부
대규모 사안		대법인 (자본금 1억엔 이상)	국세국 조사부
중소규모	복잡 곤란 사안	중소법인 (자본금 1억엔 미만)	국세국 과세부 자료조사과
	통상적인 사안		세무서 (법인과세부문)

<출처 : 외국의 세무조사 전략사례 연구 / 박명호 · 손원익 / 2010.12>

#### ○ 소득세 조사

조사난이도	절차(목적)	납세자규모	담당부서
대규모악질탈세	강제조사 (형사소추)	전 부	국세국 사찰부
복잡 곤란 사안	임의조사		국세국 과세부 자료조사과
일반적인 사안			세무서 (개인과세부문)

<출처 : 외국의 세무조사 전략사례 연구 / 박명호 · 손원익 / 2010.12>

### □ 세무조사시 중점 사항

#### ○ 자산 운영의 다양화 · 국제화에 대한 대처를 강화

- 고소득자로서 신고를 누락하거나 무신고한 혐의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산운용실태와 국제거래에 대해 중점 점검



- 허위신고 등 소비세 부정환급에 대한 대처를 강화
  - 환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고 환급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 등으로 부정환급 적출
- 개인 심리의 충실도 제고
  - 납세자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충분한 법령 검토 후 처리
- 소비세에 대한 조사 추진
  - 위장계약을 통해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처럼 위장한 부당환급 적출
  - 관계회사로부터의 파견으로 위장한 외주비용을 공제받은 부당환급 적출

**□ 다양한 자료 수집 강화**

- 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급여소득의 원천징수 및 이자 소득 등의 지급조서 외에 조사 시 파악한 뒷거래와 위장거래에 관한 정보 등 다양한 조사관련 정보를 수집
- 최근 경제사회의 광역화·국제화·고도정보화 등에 따른 새로운 거래 형태에 관한 자료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해외기업과의 거래, 외국인 투자정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정보 등의 수집에 집중

**□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익보호제도**

- (배경)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 권익보호의 필요성 대두
- (연혁)

연 월 일	주 요 내 용
2011.12.02	경제 사회구조와 변화에 대응한 세제 구축의 도모를 위한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국세의 조사」 신설
2013.01.01	국세통칙법 개정안 시행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질문검사권 규정을 국세통칙법으로 통합 - 사전통지, 조사종료절차, 동일연도 재조사 규정 신설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조사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조사개시일 전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아래사항에 대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전통지(전화 구두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지조사 개시일 및 조사실시장소</li> <li>· 조사목적, 조사세목 및 조사기간</li> <li>· 조사대상의 장부서류와 기타서류</li> <li>· 기타 조사시 필요한 사항</li> </ul> </li> <li>- (예외) 업종의 현황, 비위혐의, 조사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li> </ul>
조사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증명서 휴대</li> <li>- 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추가 세목, 기간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얻은 후, 조사추가사항에 대해 질문검사 실시</li> <li>- 조사대상자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대한 질문검사이해와 협력 요청</li> <li>-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제출의 요구 가능</li> <li>- 제출받은 장부·서류 영치 가능</li> <li>- 거래처조사 실시</li> </ul>
조사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경정·결정 등을 해야한다는 통지</li> <li>- 조사결과의 내용 등 구두 설명</li> <li>- 경정결정 등에 대한 설명시 수정신고 등의 권장</li> <li>- 경정 후라도 새로운 혐의사항 발견시 재조사가 가능함을 설명</li> </ul>

□ 사찰제도 실시

- (취지) 악의적인 탈세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 적정·공평한 과세의 실현과 신고납세 제도 유지
- (대상)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경우
- (내용)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강제 권한을 행사하는 등 범죄수사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함



### □ 기타사항

- 세무조사시 한국과 같은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없지만,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음
- 법인의 자발적 납세가 적정하고 성실한 신고가 지속되면서 다른 납세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우량법인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음
- 세무조사 결과의 활용
  - 실제 조사에서 부정거래를 파악하는 경우는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 정보 출처를 개발하고 있음
  - 세무조사를 통해 2천만원 이상을 적출하는 경우에는 우수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배포하고 그 정보를 공유함

## 9 권리구제 절차

### □ 이의신청

- 경정·결정이나 압류 등의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납세자가 행정청인 세무서장 등에 대해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
  - ※ 각 국세국(지방청)에 심리과·심리관을 설치하고 각종 연수를 통해 조사·징수능력과 심리에도 정통한 직원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 심사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세무서장 등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납세자가 국세불복심판소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
  - 국세불복심판소는 국세국(지방청)이나 세무서로부터 독립하여 국세심판관, 국세부심판관, 국세심사관이 조사·심리하여 결정
  - 쌍방 주장에 대한 쟁점정리표를 작성하며 필요시 직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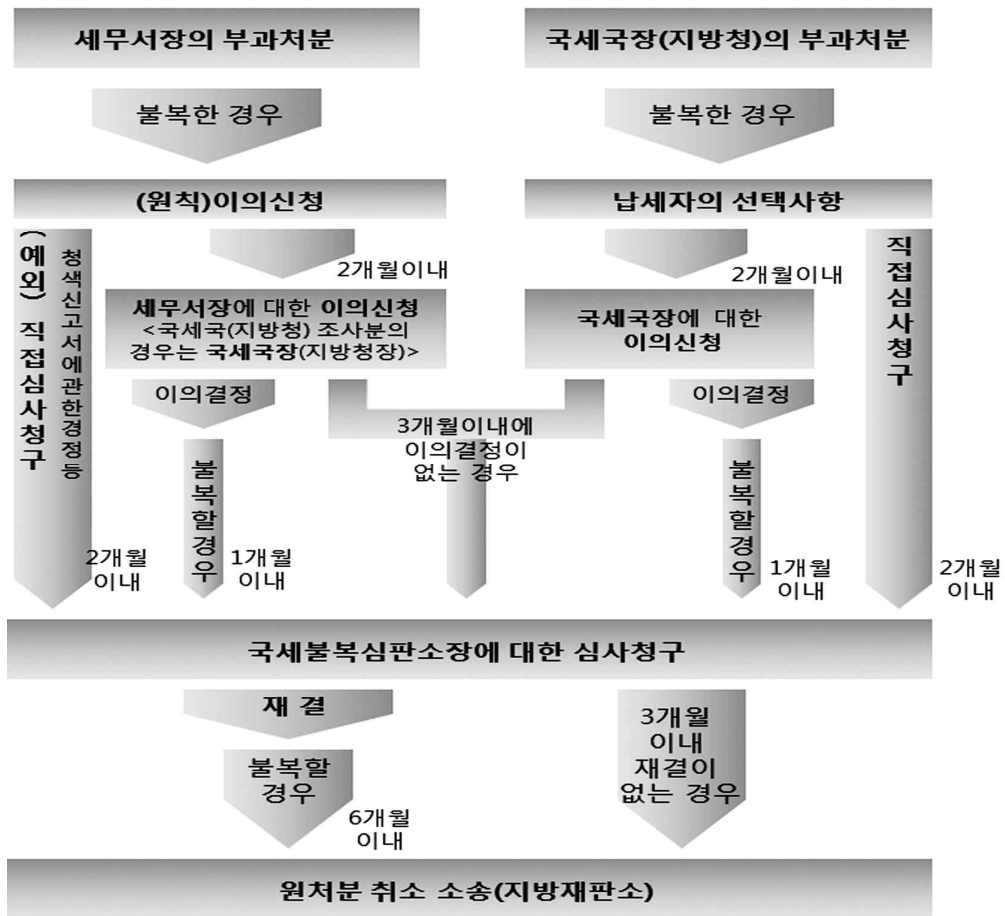


- 세무서장 등의 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은 할 수 없음
- 국세불복심판소의 재결은 행정부 내의 최종 판단이므로 국세국장이나 세무서장 등은 불복할 수 없음

□ 소송

- 국세불복심판소장의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납세자는 사법부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세에 관한 불복신청제도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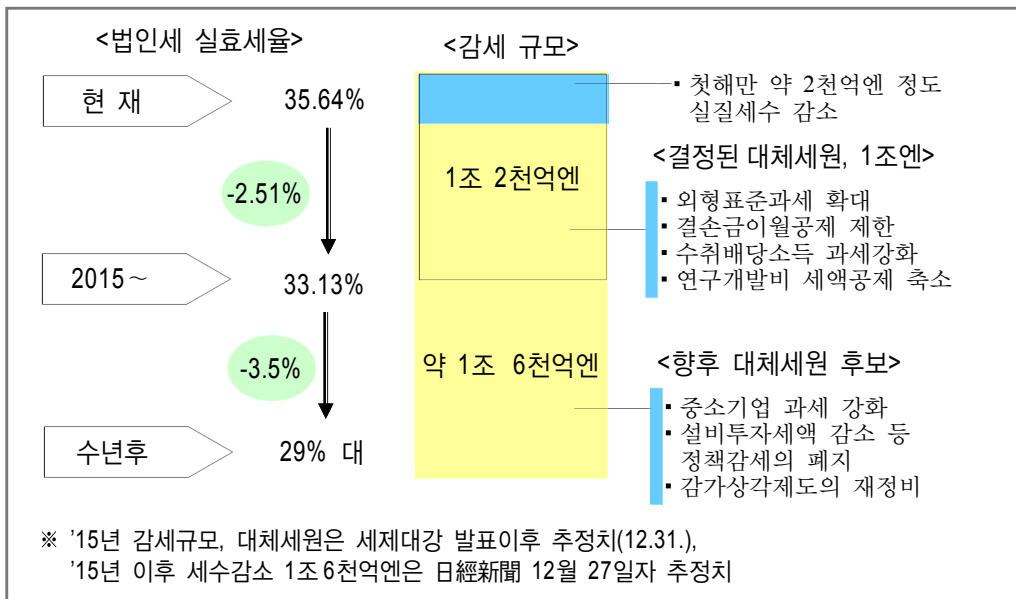
<일본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연구보고서(연결납세제도 소개) / 국세청 일본지역전문가단 / 2009.08>



## 10 2015년 세법개정 주요 내용

### □ 법인세율 인하

- (취지) 장기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디플레이션 및 엔고 현상을 타개하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



- (내용) 일본 정부 및 여당은 아베노믹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 실효세율(34.62%, 동경 35.64%)을 2015년에는 2.51%, 2016년에는 0.78%를 인하하여 2년간 총 3.29%를 인하

### ○ 대체세원 확보 방안

대체세원 유형	재원확보 방안	재원규모
외형표준과세 강화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 '15~'16년에 2배 확충	약 7,000억엔
투자목적 보유주식에 대한 과세 강화	주식보유비율 5% 미만 주주의 수취 배당 소득 과세비율을 50%에서 80%로 확대	약 1,000억엔

대체세원 유형	재원확보 방안	재원규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축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비율을 30%에서 25%로 축소	약 400억엔
적자기업에 대한 세금우대조치 축소	과거의 적자를 익년도 이후의 흑자에서 공제하는 대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80%에서 50%로 축소	약 4,000억엔

<출처 : '14.12.24일 産經新聞 추정자료>

### □ 소득·증여세 비과세 확대

- (취지) 젊은 세대로의 과세 없는 자산이전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유도
- (내용)

현금증여·세액공제	현행 제도	개정 제도
교육신탁자금 (입학금, 수업료, 학원비 등)	최대 1,500만엔까지 비과세 ('15년까지 기한 한정)	최대 1,500만엔까지 비과세 ('16년 이후에도 시행, 용도 확대)
결혼·임신·출산·육아관련 비용 증여	현금증여시 증여세 과세	(신설)1인당 최대 1천만엔 까지 증여세 비과세
주택 매입자금 증여	최대 1천만엔까지 증여세 비과세	'15년 → 최대 1,500만엔 '16. 1~'16. 9 → 최대 1,200만엔 '16. 10~'17. 9 → 최대 3,000만엔
일정요건 충족 주택 구입자금관련 금융비용	소득세에서 연 최대 50만엔 세액공제 ('17.12.31. 기한)	기한을 '19. 6월까지 연장

### □ 기타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 후루사또(고향) 납세공제액 상향 조정
  - 경제적 지원지역(고향 등)에 금전 기부한 금액 중 2천엔을 자기부담으로 하고 자신의 소득세 또는 지방주민세에서 공제하는 나머지 금액의 한도를 현행 10%내에서 20%로 상향 조정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동경 등 3대 도시권(동경, 긴기, 중부)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건물 취득 시 건물취득비용의 4~7%를 세액공제, 신규인력 고용시 1인당 50~70만엔씩 세액공제 허용

# VIII

## 투자시 참고할 기타 정보

- 1. 참고문헌 ..... 138
- 2. 기관 웹사이트 ..... 138



# 1 일본의 노무관리제도

일본 국내에 있는 모든 기업은 최저 노동조건을 규정한 ‘노동기준법’, 노동자의 안전위생에 대해 규정한 ‘노동안전위생법’, 최저임금을 규정한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해야 함

## □ 최저임금법

- (제정시기) 1959.4.15.
- (내용) 사용자는 최저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함
- (최저임금) 지역별, 산업별로 설정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

구 분	지 역 명	최저임금(시급)
전국최고	도쿄	869엔
전국최저	돗토리, 시마네, 코치,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오키나와	664엔
전국평균	-	764엔

<출처 : 일본 정부 후생노동성 2013년 10월 발표자료(2013년 12월 기준 최신)>

## □ 근로기준시간, 휴가 및 휴일

- (법정 노동시간)
  - 휴식시간을 제외한 주간 40시간 초과 노동 금지
    - ※ 단, 10명 미만의 소매 및 미용 등 일부 업종은 1주 44시간 인정
  - 휴식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초과 노동 금지
- (휴식·휴일)
  - 근로기준시간 6시간 초과시 45분 이상 휴식시간 제공
  - 근로기준시간 8시간 초과시 1시간 이상 휴식시간 제공
  - 휴일은 1주에 1일 이상, 4주간 4일 이상 제공(법정휴일)



○ (유급휴가)

근속연수	6개월	1년 6개월	2년 6개월	3년 6개월	4년 6개월	5년 6개월	6년 6개월이상
휴가일수	10일	11일	12일	14일	16일	18일	20일

□ 고용계약

○ (근로조건 명시)

-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출퇴근시간, 초과근로유무, 휴식시간, 휴일, 휴가, 임금, 임금의 계산 및 지불방법, 임금지불시기, 퇴직에 관한 사항 명시

○ (고용계약기간)

- 고용계약기간은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 상한임

○ (취업규칙)

- 노동시간, 임금 등의 노동조건이나 경영상의 필요로 근로자가 지켜야할 규율을 정한 직장의 규칙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채용한 고용주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기준 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출산·육아·개호 (간호)

○ (산전·산후 휴가)

- 출산예정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예정일의 6주간(2인 이상 태아 임신시 14주간)의 휴가 보장
- 출산일의 다음날부터 8주간은 원칙적으로 취업 금지

○ (육아휴가)

- 1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휴가(원칙적으로 아이가 1세에 이르는 날까지의 기간) 청구 인정
- 노사협정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고용 후 1년 미만자,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 등은 적용 제외 가능

○ (개호휴가)

- 요양 간호 상태의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개호를 위해 휴가 (1명의 가족에 한해 통산 93일간 한정)를 청구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의무 보장
- 노사협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고용 후 1년 미만자 또는 3개월 이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사람 등은 제외 가능

## 2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가입하는 의무 보험(4종류)

- ① 노동자 재해보험 : 근로자의 업무와 통근 중 상해·질병에 대한 보험
- ② 고용보험 : 근로자의 실업보상지급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는 보험
- ③ 건강보험·개호(간호, 특히 육아)보험 : 의료·개호의 지출에 대한 보험
- ④ 후생연금보험 : 노후, 사망, 장애에 대한 지급을 위한 보험

□ 노동·사회보험제도 요약

보험	급부	적용	보험료율 (연간 임금총액의 %)		비고
			사업주 부담	노동자 부담	
노동자 재해보 험	업무상·통근 중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의 경우 요양비, 휴업, 장애, 사망 등에 대한 보상 등이 지급됨	노동자 고용하는 모든 사업소	최저0.25% 최고8.9% (업종별 상이)	-	· 사업주에 대한 특별가입제도 있음 ·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다름
고용 보험	실업자에게 급부, 육아 휴업자·고령자에게 급부 등	주당 소정 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인 모든 노동자	0.85%	0.5%	해외의 실업보상제도 가입자는 면제
건강 · 개호 보험	업무상, 통근 중 이외의 부상, 질병, 출산 등에 대해 급부	법인에 근무하는 모든 일반 노동자 및 소정 노동시간이 일반노동자의 3/4 이상인 단시간 노동자	4.985% (40세 이상 5.76%)	4.985% (40세 이상 5.76%)	보험료율은 건강보험협회 권장
후생 연금 보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한 급부	일반노동자의 3/4 이상인 단시간 노동자	8.56%	8.56%	외국인에 대한 탈퇴일시금제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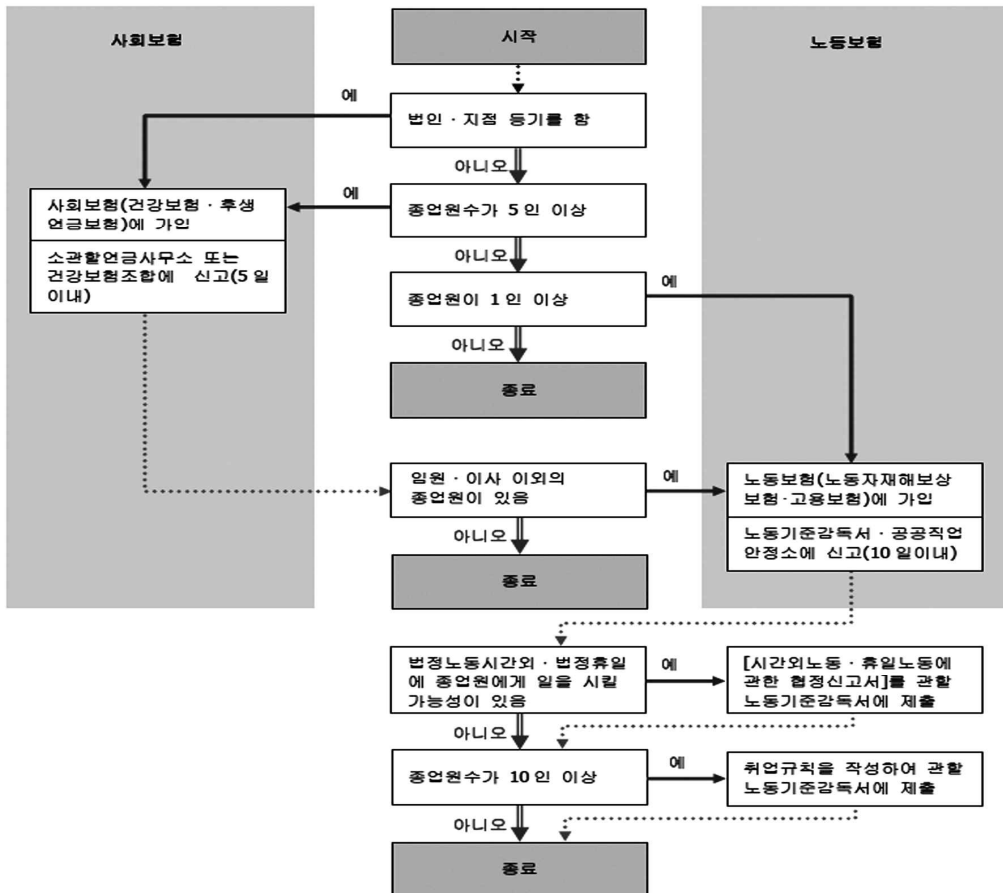


보 험	급 부	적 용	보 험 료 율 (연간 임금총액의 %)		비 고
			사업주 부 담	노동자 부 담	
아 동 수 당 거 출금	사회복지제도(아동수당)에 대한 거출금이며, 노동자에 대한 복지후생과는 취지가 다름		0.15%	-	
합 계			14.895% (40세 이상 15.67%)	13.045% (40세 이상 14.82%)	

※ 보험료율은 2013.9월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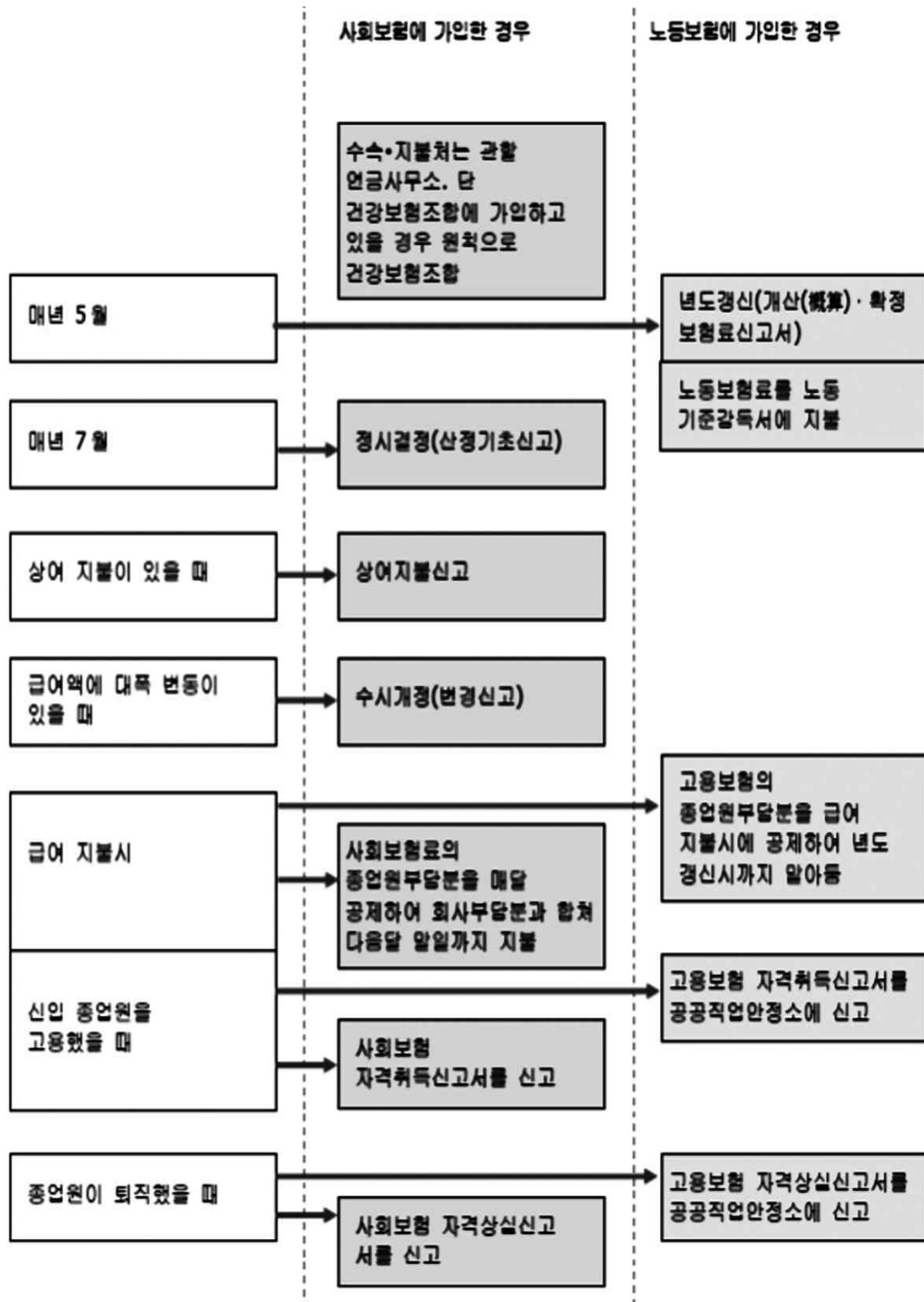
※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료율에, 당분간 석면재해거출금으로서 0.005%가 추가

### □ 종업원 채용시 보험가입절차





□ 매년 발생하는 보험처리 절차



# IX

## 참고자료

1. 참고문헌 .....	152
2. 기관 웹사이트 .....	152



## 1 참고문헌

-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 한국조세연구원 / 2009.10
- 일본 정치·경제 동향 보고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 2014.08
- 아베노믹스 2년 성과진단 및 향후 전망 / KOTRA / 2015.01
- 일본 내 거점설립을 위한 안내서 / JETRO / 2015.03
- 일본의 이전가격사례집 / 일본국세청
- 외국의 세무조사 전략사례 연구 / 박명호·손원익 / 2010.12
- 일본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연구보고서(연결납세제도 소개) / 국세청 일본 지역전문가단 / 2009.08
- 圖說日本の税制 / 川上尙貴 / 2008

## 2 기관 웹사이트

- 일본국세청 [www.nta.go.jp](http://www.nta.go.jp)
- 일본재무성 [www.mof.go.jp](http://www.mof.go.jp)
- 코트라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 한국무역협회 [www.kita.or.kr](http://www.kita.or.kr)
- 일본무역진흥기구 [www.jetro.go.jp](http://www.jetro.go.jp)
-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털 [www.ois.go.kr](http://www.ois.go.kr)

## 일본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 : 044 - 204 - 2828

팩스 : 044 - 216 - 6066

원고 작성 및 편집

국제조사관 이 태 철

국제조사관 김 효 경

국제조사관 최 희 경

---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4-2828)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